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57호

2025. 4. 3.(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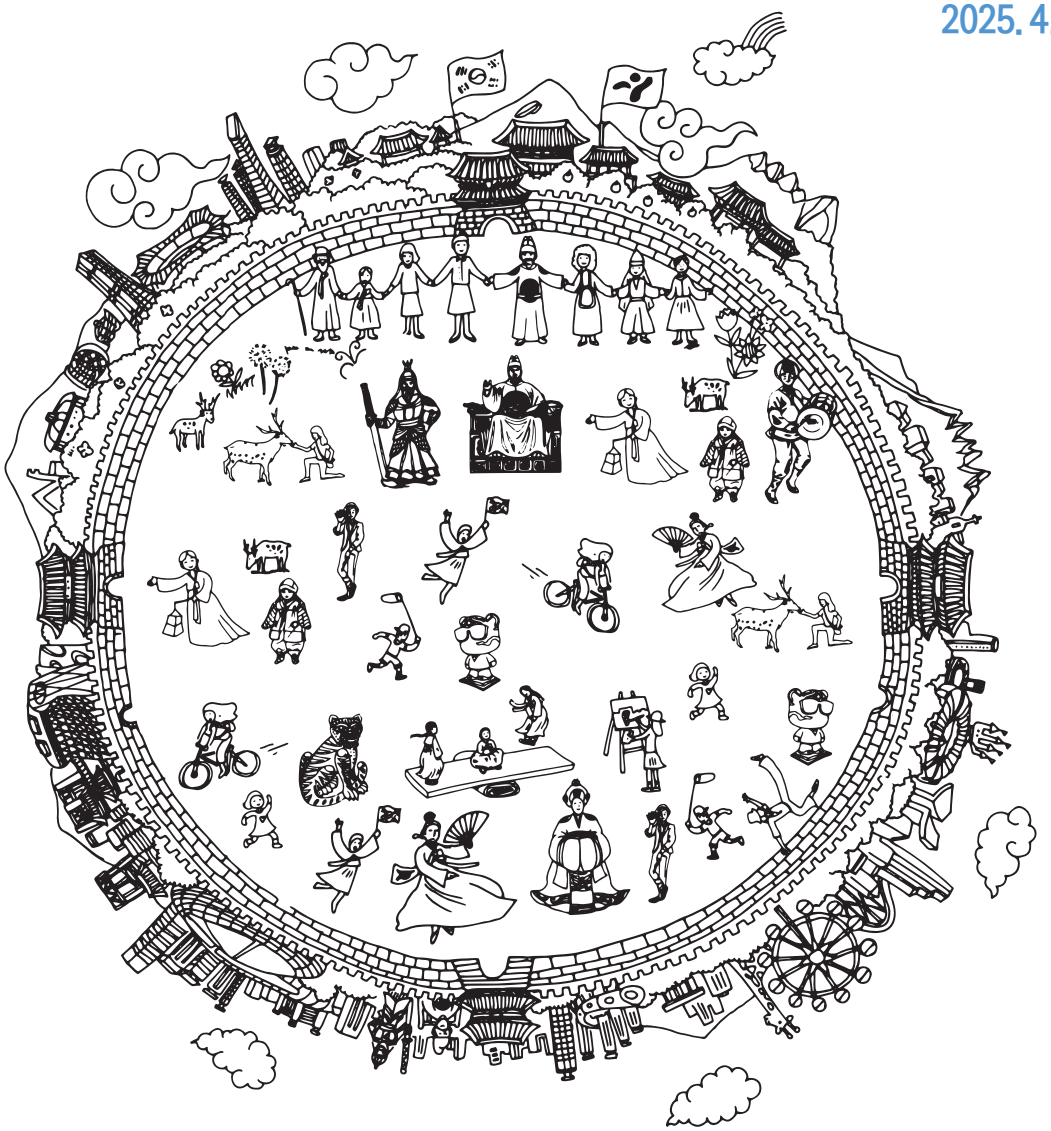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1033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제2025-103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제2025-1044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제2025-105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제2025-105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25-105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7
제2025-1066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
제2025-1067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0
제2025-1095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62
제2025-1097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5

[행정예고]

제2025-1051호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79

◈ 고 시

제2025-168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고시 ····· 81
제2025-1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관리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82
제2025-172호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4
제2025-17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97
제2025-175호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100
제2025-17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13
제2025-177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6

제2025-178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3
제2025-179호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63
제2025-18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188
제2025-1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193
제2025-184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5

◈ 공 고

제2025-1015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226
제2025-102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 248
제2025-102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 249
제2025-103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50
제2025-103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252
제2025-104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53
제2025-106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55
제2025-106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257
제2025-1069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8
제2025-1081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61
제2025-108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1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82

◈ 구 고 시

제2025-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 286
제2025-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성동구) ····· 289
제2025-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 292
제2025-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296
제2025-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299

제2025-37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우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 301
제2025-38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약수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 308
제2025-3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6개 구역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314
제2025-4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 320
제2025-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323
제2025-4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327

◈ 구 공 고

제2025-410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광진구) ····· 330
제2025-489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강북구) ····· 331
제2025-5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노원구) ····· 343
제2025-479호 도시계획시설(독립근린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 345
제2025-5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347
제2025-24호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2019년)(강서구) ····· 348
제2025-7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 354
제2025-670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경부고속도로변 녹지)(서초구) ····· 357
제2025-7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동구) ····· 392
제2025-8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동구) ····· 393
제2025-8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동구) ····· 394

◈ 사업소고시

제2025-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5
제2025-1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6
제2025-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7
제2025-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8

◈ 정 정

제2025-1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399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33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 25. 1. 1.자로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시세 기본 조례 내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02-2133-3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팩 스: 02-2133-1033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및” 을 “「지방세기본법」 및” 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및 ---------- ---------- ----------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	<삭 제>

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삭 제>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3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나. 선정 대리인 업무 관련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02-2133-3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팩 스: 02-2133-1033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의4(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의5(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별지 제14호서식]

<삭 제>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0. 10. 1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V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삭 제>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10. 15.>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삭 제>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6. 3.>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증명)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삭 제>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6. 3.>

행 정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① 선정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생략

[별지 제18호서식]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10. 1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삭 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44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이 현저한 저연차 직원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시장표창 추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호).
나. 표창장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다.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2133-0774
2) 이메일: koeunlim@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를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및 시”를 “공무원 및 시·자치구”로,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을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감사장 :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제4조(표창권자) ----------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1. ---------- 공무원 및 시·자치구----------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단서 삭제>

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2. ---------- --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세칙) ---------- 필요한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5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8824호, 2023.7.18. 및 제9271호, 2024. 5.20.)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을 지정할 경우 감면율과 함께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02-2133-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FAX : 02-2133-1064

(2) E-mail : heness@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3)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시설사용허”를 “체육시설사용허”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수입금 납입 명세서”로, “허가한 내용 대로”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체육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별표1부터 별표5”를 “별표 1부터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5조의3제2항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중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 사용료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물품 등”을 “물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허가신청시”를 “사용허가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체육이외”를 “체육 이외”로 한다.

제7조의2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2. 소장

제11조 중 “관리·운영(이하 “운영”)”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확인·정리하여”를 “확인·정리하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을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포기 한”을 “포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체결한자(이하”를 “체결한 자(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체육시설안”을 “체육시설 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연장신청”을 “기간연장 신청”으로, “상정·심의”를 “상정 후 심의”로 한다.

제17조 중 “통지 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 ---------- ---------- ---------- ----------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 ---.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	② ---------- 체육시설 사용허---------- ---------- ---------- 범위---- ---------- ----------

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
③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 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수입금 납입 명세서---------- 허가 받은 내용대로 체육시설을 ---------.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3.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① ---------- 별표 1부터 별표 5------- 따른----------.
② 조례 제10조제2호다목에 따라 별표1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주3회 이상의 프로	② ---------- 별표 1 ----------

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할 경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 ---------- ---.
<신 설>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5조의3제2항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2(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 -- 제5조제2항-------- ---------- 경우, 사용료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 ---------- --.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조례 별표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선전책자판매, 기타	③ -- 별표 5----------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으로부터 임시판매사용허가(별지 제8호서식)를 받아 물품 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 물품등----------.
④ 삭 제	
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 중 별표1의 개인연습사용료 납부 시 발급되는 연습사용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 별표 1---------- ----------.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생 략)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신청 시 ---------- --------.
③ 소장은 관람권발행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본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2할(체육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 ----- 별표 3---------- ---------- ---체육 이외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입장권 등)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조	제7조의2(입장권 등) --------- ---------- 별지 제11호서식----------

례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 ----------.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 소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범위----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 -------- 관리·운영(이하 "운영"---------- ---------- ----------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생략)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확인·정리하고 ---------- ---------- ---------- ---------- ---------- --.
제14조(관리·운영계약 등)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운영계약 등) ① -- ---------- ---------- ---------- ---------- ---------- ------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기한 내------ ---------- ------ 포기한 ----------. - --------- 기한 내--------- ---------- ---------- ---------- ----.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체육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체결한 자(이하 ---------- --. ---------- 체육시설 안---------- --.
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는 위탁기간	② ---------- 기간연장 신청---------- ---------- 상정 후 심의---- ----------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 ---------- ---------- ---------- ---------- ---------- 통지하여야 ----.
제18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23조 제10호에 따른 운영위탁에 관한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는 제3장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무의 위임) ---------- ---------- ---------- ----------. ----- ----------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5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나.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여의도선착장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 주차이용 증가 예상되어 주차요금 조정하여 개선.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 삭제(안 별표 2 제1호)
   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 1일 주차 요금제 적용 제외(안 별표 2 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3780-0740
      (2) 이메일: bomikim@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선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비 고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1회 대여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이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그 밖의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이상)	1,000~1,500원 2,000~3,000원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 3,000원	300원 ~ 400원	13,000~ 19,000원	여의도샛강쪽(4, 5주차장) 72,000~100,000원 한강본류호안쪽(1, 2, 3주차장) 91,000~120,000원
그 밖의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 1,500원	200원 ~ 300원	9,100~ 12,000원	45,000~64,000원
비 고 1)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1회 대여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이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한강 아라호	1시간 승선(편도)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000~6,000원 8,000~12,000원	
		2시간 승선(왕복)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6,000~9,000원 13,000~17,000원	
		1회 대여 · 대여료 (4시간 이내)	700,000~3,500,000원	
	그 밖의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이상)	1,000~1,500원 2,000~3,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 용 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3,000원	300원 ~ 400원	13,000~19,000원	여의도샛강쪽 72,000~10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91,000~120,000원
그 밖의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1,500원	200원 ~ 300원	9,100~12,000원	45,000~64,000원
비 고 1)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안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1회 대여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이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삭 제>			
	그 밖의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 · 청소년(6~18세) · 성 인(19세이상)	1,000~1,500원 2,000~3,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 용 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3,000원	300원 ~ 400원	13,000~19,000원	여의도샛강쪽 (4, 5주차장) 72,000~10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91,000~120,000원
그 밖의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1,500원	200원 ~ 300원	9,100~12,000원	45,000~64,000원
비 고 1)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5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나.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여의도선착장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 주차이용 증가 예상되어 주차요금 조정하여 개선.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란’ 삭제(안 별표 1 제1호)
   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아라호 대여’ 삭제(안 별표 2 제1호)
   다. 한강르네상스호·한강아라호 대여 중 ‘한강아라호’ 삭제(안 별표 2 제4호)
   라.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 1일 주차 요금제 적용 제외(안 별표 1 제7호)
   마.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범위 타목 적용 제외(안 별표 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3780-0740
      (2) 이메일: bomikim@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한강아라호란을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1일 최대	월정기권	06시 ~24시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4, 5주차장)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100,000원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 중 “한강르네상스호 및 아라호”를 “한강르네상스호”로 하고, 제2호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의 제목 “한강르네상스호·한강아라호 대여”를 “한강르네상스호 대여”로 한다.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은 적용 제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원 5,000원
	1회 대여(운항)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 4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 3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 2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정박대여(4시간 이내)		210,000원 700,000원 525,000원 350,000원 350,000원
한강 아라호	1시간 승선(편도)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500원 9,000원
	2시간 승선(왕복)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7,000원 14,000원
	2시간 초과 승선		매 시간 당 편도요금의 70% 추가
		정박대여	운항대여
	2시간 이내	1,200,000원	2,200,000원
	3시간 이내~2시간	1,600,000원	2,900,000원
	4시간 이내 ~ 3시간	1,900,000원	3,500,000원
기타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기본요금	1회 주차(1구획) 초과 10분당	1일 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권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00,000원	06시 ~24시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개 정 안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원 5,000원
	1회 대여(운항)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 4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 3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 2시간 이내 운항 (70명 기준) 정박대여(4시간 이내)	 210,000원 700,000원 525,000원 350,000원 350,000원
<삭 제>		
기타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기본요금	1회 주차(1구획) 초과 10분당	1일 최대	월정기권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4, 5주차장)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100,000원	06시 ~24시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별표 1의 이용시설

※ 주차장,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및 아라호 대여,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함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신 설>

4. 한강르네상스호·한강아라호 대여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별표 1의 이용시설

※ 주차장,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함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은 적용 제외함

4.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6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 신설

- (제6장) ‘선정대리인’ 신설
- (제23조) 선정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등 규정 신설
- (제24조)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구청장의 선정대리인 추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1

(2) 이메일: ehdus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납세자 권리헌장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필요한 ------- ----------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생 략) ② (생 략)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 ---------- ---------- ---------- --. 1. 서울특별시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 6. (생 략)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 ---- 서울특별시 ----------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제6장 선정 대리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현 행	개 정 안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현 행	개 정 안
	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제23조 ~ 제26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7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제14조의2~제14조의5) 및 별지 서식(제14호서식~제18호서식)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신설

- (제16조) 선정대리인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서식 규정 신설
- (제17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
- (제18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서식 규정 신설
- (제19조)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 서식 규정 신설
-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1

(2) 이메일: ehdus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선정 대리인

제16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V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 ·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청구 ·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청구 · 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 세 기 간 · 세 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관인생략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선정 대리인
<신 설>	제16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 생년월일 소 속 /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V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 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청구·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청구·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생략)
<신 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 청구일자 / 사건번호 / 납세자 / 청구세액 / 신청일 / 지정일 / 선정대리인 / 결정내용 / 인용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95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절차, 지원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뷰티패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뷰티패션산업과(전화: 02-2133-8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이 메 일: guibyeol53@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뷰티패션산업과
(2) F A X : 02-768-8965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장려금 지급
2. 시장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인 증서 수여
3. 그 밖에 우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자치구로 한다.

②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품목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품목
3.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매년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⑤ 시장은 지원 품목에 대한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97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제도 축소 추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인감증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시 양도인의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별지 제8호서식 및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나. 조직개편에 따라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를 '도시공간본부장'에서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02-2133-8501, FAX: 02-768-8925, 이메일: kfriend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925
2) 이메일: kfriend2@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도시정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도시공간본부장”을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비지매각의뢰토지명세서”를 “체비지 매각의뢰 토지명세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체비지매수신청서”를 “체비지 매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접지소유자”를 “인접지 소유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9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45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

⑤ 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명의변경신청서”를 “명의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급신청 :”을 “발급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자주소변경신청 :”을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확인신청 :”을 “소유자 확인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실확인신청 :”을 “사실 확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비지대부신청서”를 “체비지 대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비지대부계약”을 “체비지 대부계약”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체비지총괄대장”을 “체비지 총괄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비지매각대장”을 “체비지 매각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비지매각총괄대장”을 “체비지 매각 총괄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체비지대부정리부”를 “체비지 대부정리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을 “체비지 대부계약 처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체비지대부료징수부”를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을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제18호서식, 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					처리기간 1 일
양수인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양도인	성 명 (명 칭)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재 산 의 표 시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시 발행) 3.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양수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안 내 문

제 목 :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수 신 : 구 동 번지 귀하

1. 귀하께서 현재 점유 사용하고 계신 구 동 번지 호 (면적 : ㎡)는 ○ ○도시개발사업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이므로 조속히 매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매수가 어려우시면 20 . . .까지 우리구 과에 오시어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20 . . .

○ ○ 구 청 장

[별지 제19호서식]

체비지 대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 대부기간 :

○ 대부목적 :

○ 대 부 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조건 : 귀 구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공간본부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관리를 위임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리자가 된다.	제2조(체비지의 관리) ---------- 소관실 · 국 · 본부장----------
제3조(매각의뢰) ① (생 략)	제3조(매각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매각의뢰서에는 체비지매각의뢰토지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체비지 매각의뢰 토지명세서----------
제4조(매수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신청 및 통지) ① ---------- 체비지 매수신청서----------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정 · 조회 및	② ----------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단, 공동점유한 경우에는 인접지소유자 동의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 ---------- ----. ---------- -- 인접지 소유자 ---------- ----------.
제5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①·② (생 략)	제5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조정 결의는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조정 결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장물 점유 체비지의 할인금액 산정) ① (생 략)	제6조(지장물 점유 체비지의 할인금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할인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장물 현황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지장물 처리비용 산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2개 이상----------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④ ---------- ----------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지장물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 단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⑤ 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4항의 전문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	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제7조(매수자의 명의변경)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매수자의 명의변경) ① ---------- 명의변경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증명발급) 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증명발급) ① ---------- 각 호----------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 별지 제11호서식	1. ---------- 발급 신청: ----------
2. 체비지 소유자주소변경신청 : 별지 제12호서식	2. ----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
3. 체비지 소유자확인신청 : 별지 제13호서식	3. ---- 소유자 확인 신청: ----------
4. 체비지 사실확인신청 : 별지 제14호서식	4. ---- 사실 확인 신청: --------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	② ---------- 따른 ----------

조·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금 부과) ① (생 략)	제11조(변상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가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대부 절차 등) ① (생 략)	제12조(대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체비지 대부 신청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 체비지 대부계약----------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15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조대장을 둘 수 있다.	제15조(대장관리) ---------- ---------- ---------- ---------- -----.
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4호서식)	1. 체비지 총괄대장----------
2. 체비지매각대장(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 체비지 매각대장---------- ----------
3.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7호서식)	3. 체비지 매각 총괄대장---------- -------
4.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8호서식)	4. 체비지 대부 정리부---------- -----
5.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9호서식)	5. 체비지 대부계약 처리대장---------- ----------
6.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6.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 -------
7.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31호서식)	7.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양수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양도인	성 명 (명 칭)	(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재산의 표시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인감증명 1통(양도인) 2.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시 발행) 3. (겸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양수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안 내 문

제 목 :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수 신 : 구 동 번지 귀하

1. 귀하께서 현재 점유 사용하고 계신 구 동 번지 호(면 적 : ㎡)는 ○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이므로 조속히 매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매수가 어려우시면 20 . . . 까지 우리구 과에 오시어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참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용 도 : 체비지 대부신청용), 인감도장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지참 불필요

20 . . .

○ ○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양수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양도인	성 명 (명 칭)	(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재산의 표시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시 발행) 3. (겸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양수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안 내 문

제 목 :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수 신 : 구 동 번지 귀하

1. 귀하께서 현재 점유 사용하고 계신 구 동 번지 호(면 적 : ㎡)는 ○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이므로 조속히 매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매수가 어려우시면 20 . . . 까지 우리구 과에 오시어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20 . . .

○ ○ 구 청 장

[별지 제19호서식]

체비지 대부 신청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 적 :

○대부기간 :
○대부목적 :
○대 부 료 : 귀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조건 : 귀구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

체비지 대부 신청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 적 :

○대부기간 :
○대부목적 :
○대 부 료 : 귀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조건 : 귀구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51호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양재대로 상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의 이유 : 자동차전용도로 구조 및 시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구조 현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양재대로 상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여 일반도로로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번호, 노선명
      1) 도로의 종류 :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특별시도 41호선
      3) 노선명 : 양재대로
   나. 도로 구간 : 붙임 참고
      1) 구간 : 강남구 수서IC ~ 서초구 양재IC(기존 자동차전용도로 전체 구간)
      2) 규모 : 폭 6~8차로, 연장 5.4㎞

3. 의견 제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전화 02-2133-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과
      2) 이메일 : civilus22@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붙임자료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위치도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8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인 정 일 : 시보고시일

2.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고시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유산 (기능/개인)	제11호 침선장	김인자	여	1955	서울시 종로구
	제57호 백동장	조성준	남	1945	서울시 강동구

3. 인정사유

가. 제11호 침선장 보유자 김인자

김인자는 침선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로 인정함.

나. 제58호 백동장 보유자 조성준

조성준은 백동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백동장 보유자로 인정함.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관리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호(2025.01.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과 관련하여,
2. 월드컵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시설(공원관리시설)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 외 4필지
(481-6, -34, -36, -9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관리시설)사업
2) 명 칭 :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다. 사업의 규모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층 수	지하0층/지상1층	
높 이	4.8m	
건축면적	195.03㎡	
연 면 적	123.28㎡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구 조	철골조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5.04. ~ 10.

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소유 현황	
1	상암동	478-1	공	781,9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2	상암동	481-6	잡	170,94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3	상암동	481-34	천	14,35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4	상암동	481-36	잡	71,84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5	상암동	481-94	공	81,50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300-5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2호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2020.6.29.)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0호(2023.11.0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공원위원회(2024.12.1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공원의 시설 및 종류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24-6일대
3. 면 적 : 1,765,534.70㎡ (난우지구 22,425.20㎡)
4.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별도첨부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원조성과(☏ 02-2133-2075) 및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 02-879-6521)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지구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분		변경 전						구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65,534.70	493,424.32	63	32,356.84	86,481.43	867	계	1,765,534.70	494,756.13	64	32,688.55	86,813.14	882	증 1,331.81㎡
시설지구	소계	1,765,534.70	493,424.32	63	32,356.84	86,481.43	867	소계	1,765,534.70	494,756.13	64	32,688.55	86,813.14	882	증 1,331.81㎡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난우지구	22,425.20	3,332.91	-	-	-	16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증 1,331.81㎡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구 분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동수(동)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구 분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동수(동)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원신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원신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신우지구	9,401.20	-	-	-	-	-	신우지구	9,401.20	-	-	-	-	-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남현지구	14,446.20	-	-	-	-	-	남현지구	14,446.20	-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1	331.71	331.71	-	
시 설 률 (법정 40%)		(493,424.32 / 1,765,534.70) × 100 = 27.95%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증 1,331.81㎡
건 폐 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2. 시설조서 (시설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65,534.70	493,424.32	63	32,356.84	86,481.43	867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증 1,331.81㎡
기반시설	소 계	175,274.58	135,798.33	-	-	-	-	176,250.54	136,774.29	-	-	-	-	증 975.96㎡
	도 로	148,923.93	109,447.68	-	-	-	2	149,995.89	110,519.64	-	-	-	2	증 1,071.96㎡
	광 장	26,350.65	26,350.65	-	-	-	-	26,254.65	26,254.65	-	-	-	-	감 96.00㎡
조경시설		27,459.47	27,459.47	-	-	-	21	27,606.47	27,606.47	-	-	-	21	증 147.00㎡
휴양시설		45,710.50	45,710.50	1	125	125	502	45,798.50	45,798.50	1	125	125	516	증 88.00㎡
유희시설		12,727.06	12,727.06	-	-	-	59	12,727.06	12,727.06	-	-	-	59	
운동시설		81,184.43	81,184.43	13	8,971.43	21,926.87	225	81,184.43	81,184.43	13	8,971.43	21,926.87	225	
교양시설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시설	19,953.92	19,953.92	15	2,199.91	3,671.53	6	20,074.77	20,074.77	15	2,199.91	3,671.53	7	증 120.85㎡
관리시설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그 밖의 시설	900.00	900.00	-	-	-	-	900.00	900.00	-	-	-	-	
녹지 및 기타	1,232,634.13	0.00	-	-	-	-	1,231,302.32	0.00	-	-	-	-	감 1,331.81㎡
시설률 (법정 40%)	(493,424.32 / 1,765,534.70) × 100 = 27.94%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건폐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관악산근린공원(난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57-34번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425.20	3,332.91	-	-	-	16	22,425.20	4,664.72	-	-	-	31	증 1,331.81㎡
기반시설	소 계	1,378.54	1,378.54	-	-	-	-	2,354.50	2,354.50	-	-	-	-	증 975.96㎡
	도 로	1,150.54	1,150.54	-	-	-	-	2,222.50	2,222.50	-	-	-	-	증 1,071.96㎡
	광 장	228.00	228.00	-	-	-	-	132.00	132.00	-	-	-	-	감 96.00㎡
조경시설		-	-	-	-	-	-	147.00	147.00	-	-	-	-	증 147.00㎡
휴양시설		117.37	117.37	-	-	-	6	205.37	205.37	-	-	-	20	증 88.00㎡
유희시설		205.00	205.00	-	-	-	4	205.00	205.00	-	-	-	4	
운동시설		1,632.00	1,632.00	-	-	-	6	1,632.00	1,632.00	-	-	-	6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120.85	120.85	-	-	-	1	증 120.85㎡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9,092.29	-	-	-	-	-	17,760.48	-	-	-	-	-	감 1,331.81㎡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22,425.20	3,332.91					16			22,425.20	4,664.72					31	증 1,331.81㎡
기반시설	소계			1,378.54	1,378.54								2,354.50	2,354.50						증 975.96㎡
	도로			1,150.54	1,150.54								2,222.50	2,222.50						증 1,071.96㎡
	광장	가		228.00	228.00						가		132.00	132.00						감 96.00㎡
		가-1	미성동 산124-6	132.00	132.00						가-1	미성동 산124-6	132.00	132.00						
		가-2	미성동 598-258	96.00	96.00															감 96.00㎡
조경시설	소계												147.00	147.00						증 147.00㎡
	화단	나									나		147.00	147.00						증 147.00㎡
		나-1									나-1	신림동 598-223	38.00	38.00						증 38.00㎡
		나-2									나-2	신림동 598-231	72.00	72.00						증 72.00㎡
		나-3									나-3	신림동 598-231	27.00	27.00						증 27.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나-4									나-4	신림동 598-231	10.00	10.00						증 10.00㎡
변경 시 영 향	소 계			117.37	117.37					6			205.37	205.37					20	증 88.00㎡
	휴게소	다		117.37	117.37						다		205.37	205.37						증 88.00㎡
		다-1	미성동 산124-6	17.00	17.00						다-1	미성동 산124-6	17.00	17.00						
		다-2	미성동 산124-6	70.00	70.00						다-2	미성동 산124-6	70.00	70.00						
		다-3	미성동 산124-6	30.37	30.37						다-3	미성동 산124-6	30.37	30.37						
		다-4									다-4	신림동 598-183	16.00	16.00						증 16.00㎡
		다-5									다-5	신림동 598-270	16.00	16.00						증 16.00㎡
		다-6									다-6	신림동 598-351	21.00	21.00						증 21.00㎡
		다-7									다-7	신림동 598-223	30.00	30.00						증 30.00㎡
	파고라	⑤								2	⑤	전지역							2	
	평의자	①	녹지대							2	①	녹지대							2	

구분		변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등의자	②	어린이 놀이터							4	②	전지역							16	
야외시설	소계			205.00	205.00					4			205.00	205.00					4	
야외시설	어린이 놀이터	라	미성동 산124-6	205.00	205.00						라	미성동 산124-6	205.00	205.00						
야외시설	놀이 시설물	③	어린이 놀이터	–	–					4	③	어린이 놀이터	–	–					4	
야외시설	소 계			1,632.00	1,632.00					6			1,632.00	1,632.00					6	
야외시설	테니스장	마	미성동 산124-6	1,175.00	1,175.00						마	미성동 산124-6	1,175.00	1,175.00						
야외시설	다목적 구장	바		330.00	330.00						바		330.00	330.00						
야외시설	체련 단련장	사		127.00	127.00						사		127.00	127.00						
야외시설	체련 단련장	사-1	미성동 산124-6	50.00	50.00						사-1	미성동 산124-6	50.00	50.00						
야외시설	체련 단련장	사-2	미성동 산124-6	77.00	77.00						사-2	미성동 산124-6	77.00	77.00						
야외시설	체련 단련기구	④	운동 마당	–	–					6	④	운동 마당	–	–					6	
편의시설	소 계												120.85	120.85					1	증 120.8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화장실	아									아	신림동 598-269	24.85	24.85					1	증 24.85㎡
	주차장										자	미성동 598-258	96.00	96.00						증 96.00㎡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19,092.29									17,760.48							감 1,331.81㎡
				19,092.29									17,760.48							감 1,331.81㎡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45.58	1,150.54				
변경					872.58	2,222.50				
신설	소로	3	1	8.0	34.00	286.2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설		3	2	6.0	51.00	257.5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1	2.0	27.46	56.6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2.0	50.87	104.42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당초			3	2.0~3.0	141.84	318.52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4	2.0	55.00	110.00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3	
당초			5	2.0	68.66	146.83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당초			6	2.0	53.00	106.0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가-1	
당초			7	3.0	22.64	67.9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당초			8	1.0~2.0	122.83	236.94	산책로	쉼터 나-4	광장 가-1	
당초			9	1.0	3.28	3.32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4	
신설			10	1.5	70.00	199.07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1	
신설			11	1.5	54.00	157.34	산책로	소로 2	소로 1	
신설			12	1.2	79.00	113.00	산책로	소로 2	소로 1	
신설			13	1.5	39.00	58.80	산책로	소로 1	산책로 8	

조성계획도 [변경전]

난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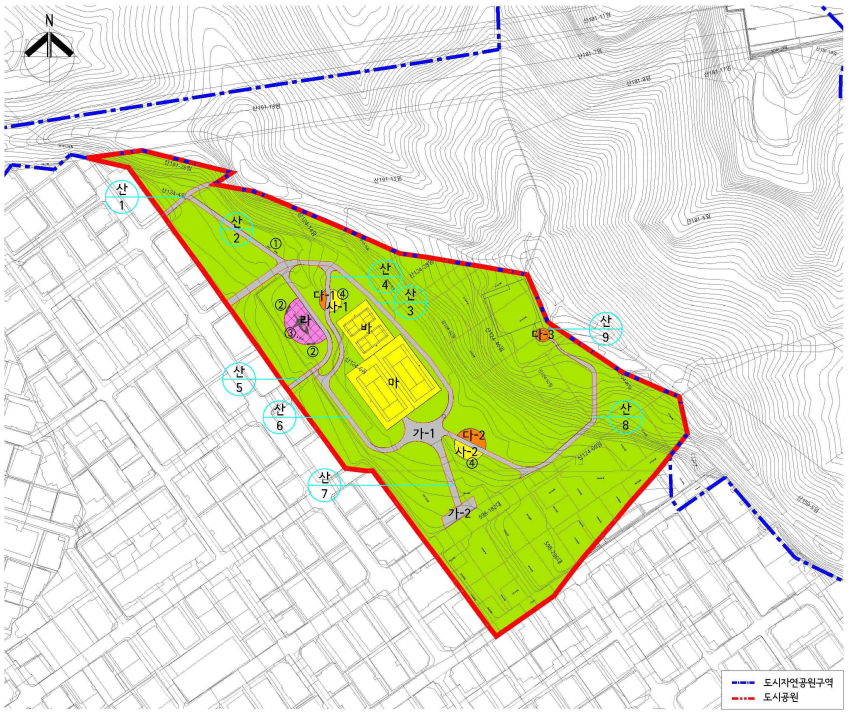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2,425.20	3,332.91	-	-	-	-	16	
기반시설	소계		1,378.54	1,378.54	-	-	-	-	-	
	도로		1,150.54	1,150.54	-	-	-	-	-	
	광장	가	228.00	228.00	-	-	-	-	-	
		가-1	132.00	132.00	-	-	-	-	-	
		가-2	96.00	96.00	-	-	-	-	-	
유양시설	소계		117.37	117.37	-	-	-	-	6	
	휴게소	다	117.37	117.37	-	-	-	-	-	
		다-1	17.00	17.00	-	-	-	-	-	
		다-2	70.00	70.00	-	-	-	-	-	
		다-3	30.37	30.37	-	-	-	-	-	
	표의자	①	-	-	-	-	-	-	2	
	동의자	②	-	-	-	-	-	-	4	
유희시설	소계		205.00	205.00	-	-	-	-	4	
	어린이놀이터	라	205.00	205.00	-	-	-	-	-	
	놀이시설물	③	-	-	-	-	-	-	4	
운동시설	소계		1,632.00	1,632.00	-	-	-	-	6	
	테니스장	마	1,175.00	1,175.00	-	-	-	-	-	
	다목적구장	바	330.00	330.00	-	-	-	-	-	
	체력단련장	사	127.00	127.00	-	-	-	-	-	
		사-1	50.00	50.00	-	-	-	-	-	
		사-2	77.00	77.00	-	-	-	-	-	
	체력단련기구	④	-	-	-	-	-	-	6	
녹지 및 기타	소계		19,092.29	-	-	-	-	-	-	
	녹지		19,092.29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난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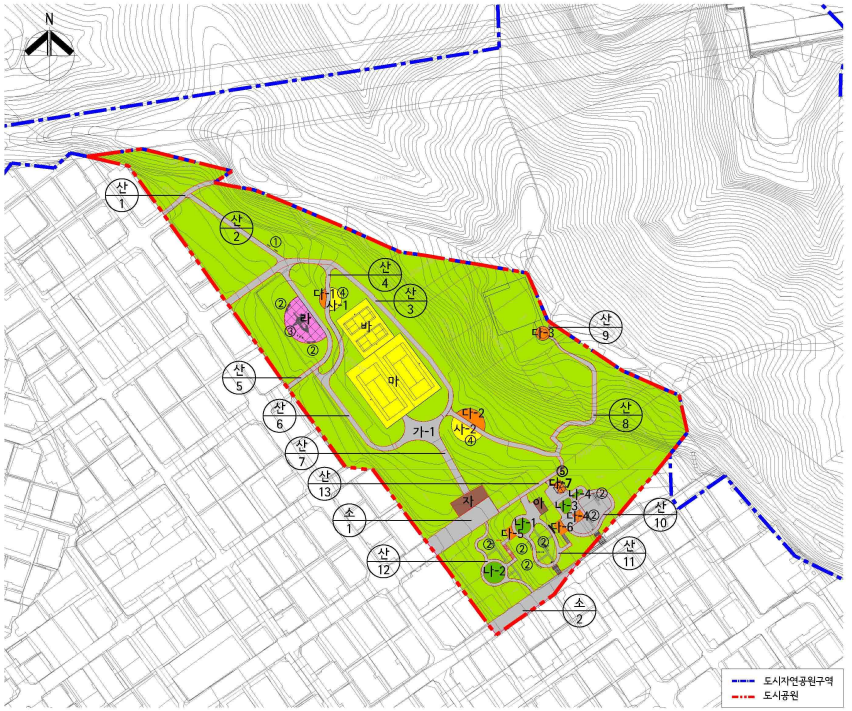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2,425.20	4,664.72	-	-	-	-	31	
기반시설	소계		2,354.50	2,354.50	-	-	-	-	-	
	도로		2,222.50	2,222.50	-	-	-	-	-	
	광장	가	132.00	132.00	-	-	-	-	-	
		가-1	(132.00)	(132.00)	-	-	-	-	-	
조경시설	화단	나	147.00	147.00	-	-	-	-	-	
		나-1	(38.00)	(38.00)	-	-	-	-	-	
		나-2	(72.00)	(72.00)	-	-	-	-	-	
		나-3	(27.00)	(27.00)	-	-	-	-	-	
		나-4	(10.00)	(10.00)	-	-	-	-	-	
유양시설	소계		205.37	205.37	-	-	-	-	20	
	휴게소	다	205.37	205.37	-	-	-	-	-	
		다-1	(17.00)	(17.00)	-	-	-	-	-	
		다-2	(70.00)	(70.00)	-	-	-	-	-	
		다-3	(30.37)	(30.37)	-	-	-	-	-	
		다-4	(16.00)	(16.00)	-	-	-	-	-	
		다-5	(21.00)	(21.00)	-	-	-	-	-	
		다-6	(21.00)	(21.00)	-	-	-	-	-	
		다-7	(30.00)	(30.00)	-	-	-	-	-	
	파고라	⑤	-	-	-	-	-	-	2	
	평의자	①	-	-	-	-	-	-	2	
	등의자	②	-	-	-	-	-	-	16	
유희시설	소계		205.00	205.00	-	-	-	-	4	
	어린이놀이터	라	205.00	205.00	-	-	-	-	-	
	놀이시설물	③	-	-	-	-	-	-	4	
운동시설	소계		1,632.00	1,632.00	-	-	-	-	6	
	테니스장	마	1,175.00	1,175.00	-	-	-	-	-	
	다목적구장	바	330.00	330.00	-	-	-	-	-	
	체력단련장	사	127.00	127.00	-	-	-	-	-	
		사-1	(50.00)	(50.00)	-	-	-	-	-	
		사-2	(77.00)	(77.00)	-	-	-	-	-	
	체력단련기구	④	-	-	-	-	-	-	6	
편익시설	소계		120.85	120.85	-	-	-	-	1	
	화장실	아	24.85	24.85	-	-	-	-	1	
	주차장	자	96.00	96.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7,760.48	-	-	-	-	-	-	
	녹지		17,760.48	-	-	-	-	-	-	

Scale=1:800

0 10 20 40 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4.01.11.)에서 선정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호(’ 24.01.12.) 및 제2025-90호(’ 25.02.20.)로 고시하였으나, 기준일에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금천구	뉴독산구역	독산동 1072번지 일대	81,663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독산동 1072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금천구	독산2구역	독산동 1072번지 일대	86,184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3. 12. 19.	81,663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3. 12. 19.(기존구역) 2025. 02. 04.(추가구역)	86,184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9) 또는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독산동 1072번지 일대(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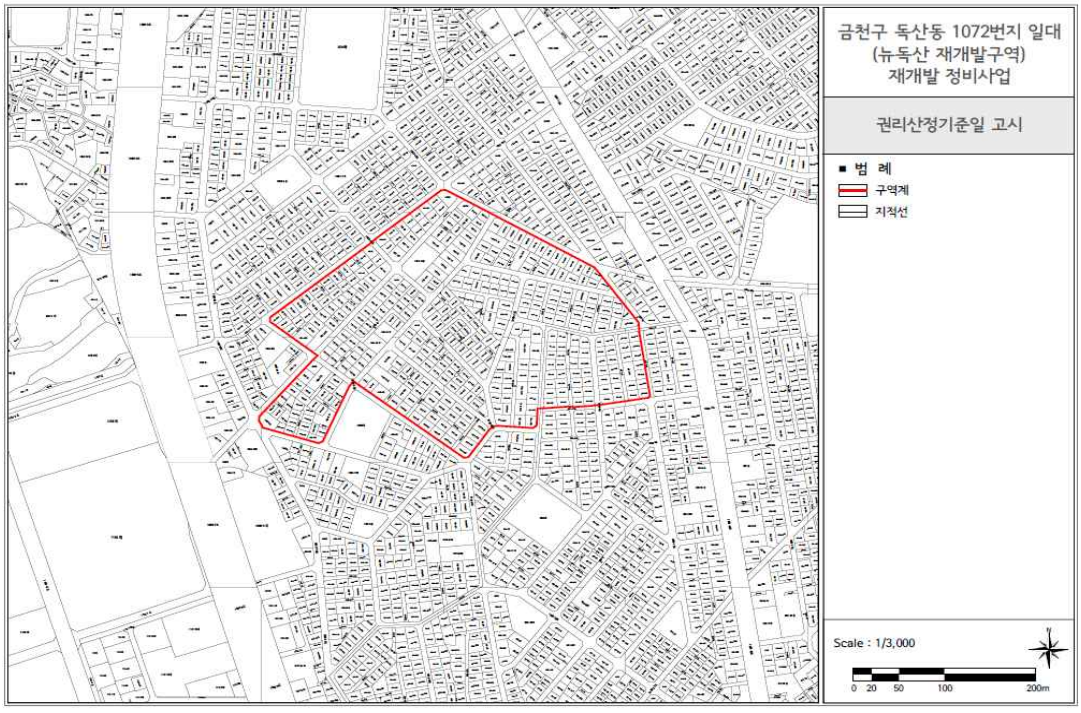

○ 독산동 1072번지 일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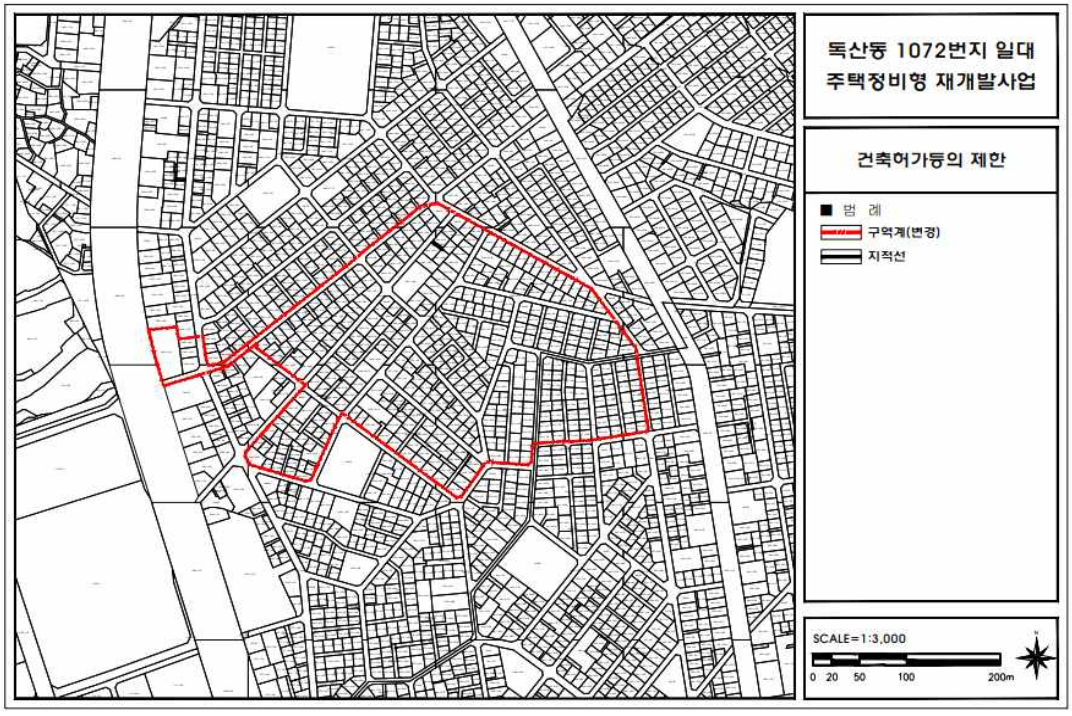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5호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43호(2021. 8. 12.)로서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서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584.9㎡
[변경] 2,585.9㎡

■변경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기부채납 면적 1.0㎡ 증가

2. 촉진지구 지정일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1) 토지세목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청파동(서계동)	33-313	대	175.5	12.5	주식회사 가든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권설정,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9년 8월 27일부터 30년
						주식회사 클래식 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5	99.4%			
2		100-1	대	2,370.4	2,370.4	주식회사 에버그린 플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7	100%			
3		107-1	대	137.1	55.0	(주)파크 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00%			
4		110	대	15.4	15.4	(주)서계동백다시일일원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100%	-	-	-
5		111	대	50.3	28.4			100%	-	-	-
6		106-2	도	103.2	103.2	기획재정부		100%	-	-	-
합계				2,851.9	2,584.9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청파동(서계동)	33-313	대	163.4	0	주식회사 클래식 플레이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36-5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권설정,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9년 8월 27일부터 30년	
2		33-359	대	12.1	12.1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33-313에서 분할 · 합산면적 0.4 감소
3		100-1	대	2,362.3	2,362.3	[위탁자] 주식회사 에버그린 플라자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503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100-1에서 분할 · 합산면적 변동없음
4		100-36	대	8.1	8.1			100%				
5		107-1	대	81	0	(주)파크 플레이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00%				· 107-1에서 분할 · 합산면적 1.1 증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6		107-5	대	56.1	56.1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7		110	대	15.4	15.4			100%	-	-	-	
8		111	대	21.6	0	주식회사 가든시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100%	-	-	-	· 111에서 분할 · 합산면적 0.3 증가
9		111-2	대	28.7	28.7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	-	
10		106-2	도	103.2	103.2	기획재정부		100%	-	-	-	
합계				2,851.9	2,585.9	-						면적 1.0 증가

■변경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필지분할 및 기부채납 면적 1.0㎡ 증가, 소유자 법인명 및 주소 변경 및 소유자 지분율 변동

2) 물건조서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6,230.0		216,230.0	100.0	
주거지역	소계	207,482.0	-	207,482.0	96.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509.0 (67.5)	-	28,509.0 (67.5)	13.2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15,901.0 (2,517.4)	감) 2,362.3	113,538.7 (155.1)	52.5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73.0	-	25,973.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7,099.0	-	37,099.0	17.2	
	준주거지역	-	증) 2,362.3	2,362.3 (2,362.3)	1.1	주택건설용지
상업지역	소계	8,748.0	-	8,748.0	4.0	
	일반상업지역	8,748.0	-	8,748.0	4.0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6,230.0		216,230.0	100.0	
주거지역	소계	207,482.0	-	207,482.0	96.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509.0 (67.5)	증) 1.0	28,509.0 (68.5)	13.2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13,538.7 (155.1)	-	113,538.7 (155.1)	52.5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73.0	-	25,973.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7,099.0	-	37,099.0	17.2	
	준주거지역	2,362.3 (2,362.3)	-	2,362.3 (2,362.3)	1.1	주택건설용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소계	8,748.0	-	8,748.0	4.0	
	일반상업지역	8,748.0	-	8,748.0	4.0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변경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 1.0㎡ 증가

2)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30	서계동 106-1	서계동 100-1	일반도로	-	-	면적 222.6㎡

※ ( )는 임시번호임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30	서계동 106-1	서계동 100-1	일반도로	-	-	면적 223.6㎡ (1.0㎡ 증가)

※ ( )는 임시번호임

■변경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기부채납 면적 1.0㎡ 증가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 명 칭 : 서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584.9㎡

[변경] 2,585.9㎡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지구지정일 ~ 2023년 9월

[변경] 지구지정일 ~ 2025년 3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84.9	100.0	-
주택건설용지	2,362.3	91.39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222.6	8.61	도로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85.9	100.0	-
주택건설용지	2,362.3	91.35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223.6	8.65	도로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	216,230 (2,584.9)	서울시고시 제2017-170호 (2017.05.18.)	-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	216,230 (2,585.9)	서울시고시 제2017-170호 (2017.05.18.)	-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6,230.0		216,230.0	100.0	
주거지역	소계	207,482.0	-	207,482.0	96.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509.0 (67.5)	-	28,509.0 (67.5)	13.2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15,901.0 (2,517.4)	감) 2,362.3	113,538.7 (155.1)	52.5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73.0	-	25,973.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7,099.0	-	37,099.0	17.2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	증) 2,362.3	2,362.3 (2,362.3)	1.1	주택건설용지
상업지역	소계	8,748.0	-	8,748.0	4.0	
	일반상업지역	8,748.0	-	8,748.0	4.0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6,230.0		216,230.0	100.0	
주거지역	소계	207,482.0	-	207,482.0	96.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509.0 (67.5)	증) 1.0	28,509.0 (68.5)	13.2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13,538.7	-	113,538.7	52.5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73.0	-	25,973.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7,099.0	-	37,099.0	17.2	
	준주거지역	2,362.3	-	2,362.3	1.1	주택건설용지
상업지역	소계	8,748.0	-	8,748.0	4.0	
	일반상업지역	8,748.0	-	8,748.0	4.0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방재계획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1) 토지세목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청파동(서계동)	33-313	대	175.5	12.5	주식회사 가든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권설정,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9년 8월 27일부터 30년
						주식회사 클래식 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5	99.4%			
2		100-1	대	2,370.4	2,370.4	주식회사 에버그린 플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7	100%			
3		107-1	대	137.1	55.0	(주)파크 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00%			
4		110	대	15.4	15.4	(주)서계동백다시일일원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100%	-	-	-
5		111	대	50.3	28.4			100%	-	-	-
6		106-2	도	103.2	103.2	기획재정부		100%	-	-	-
합계				2,851.9	2,584.9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청파동(서계동)	33-313	대	163.4	0	주식회사 클래식 플레이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36-5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권설정,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9년 8월 27일부터 30년	
2		33-359	대	12.1	12.1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33-313에서 분할 · 합산면적 0.4 감소
3		100-1	대	2,362.3	2,362.3	[위탁자] 주식회사 에버그린 플라자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503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100-1에서 분할 · 합산면적 변동없음
4		100-36	대	8.1	8.1			100%				
5		107-1	대	81	0	(주)파크 플레이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00%				· 107-1에서 분할 · 합산면적 1.1 증가
6		107-5	대	56.1	56.1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7		110	대	15.4	15.4			100%	-	-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8		111	대	21.6	0	주식회사 가든시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100%	-	-	-	· 111에서 분할 · 합산면적 0.3 증가
9		111-2	대	28.7	28.7	[위탁자] 주식회사 가든시티 [수탁자] 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100%	-	-	-	
10		106 -2	도	103.2	103.2	기획재정부		100%	-	-	-	
합계				2,851.9	2,585.9	-						면적 1.0 증가

2) 물건조서 (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도로 (도로명 : 소로 3-(1))	-
위치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외 4필지	국·공유지 제외
규모	•119.40㎡주1)(222.6㎡)	-
계획기준 및 근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
관리처분계획	•조성 후 기부채납	-

주1) 도로 조성 면적 222.6㎡ 중 국·공유지 103.2㎡를 제외한 순부담 면적임

[변경]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도로 (도로명 : 소로 3-(1))	-
위치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외 4필지	국·공유지 제외
규모	•120.40㎡주1)(223.6㎡)	-
계획기준 및 근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
관리처분계획	•조성 후 기부채납	-

주1) 도로 조성 면적 223.6㎡ 중 국·공유지 103.2㎡를 제외한 순부담 면적임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84.9	100.0	-
주택건설용지	2,362.3	91.39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222.6	8.61	도로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85.9	100.0	-
주택건설용지	2,362.3	91.35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223.6	8.65	도로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24,030.3	2025.02.27.	모아타운 구역 범위 ※ '25년 제3차 전문가 사전자문 ('25.3.20.)

2. 권리산정기준일: 2025.02.27.(구역 범위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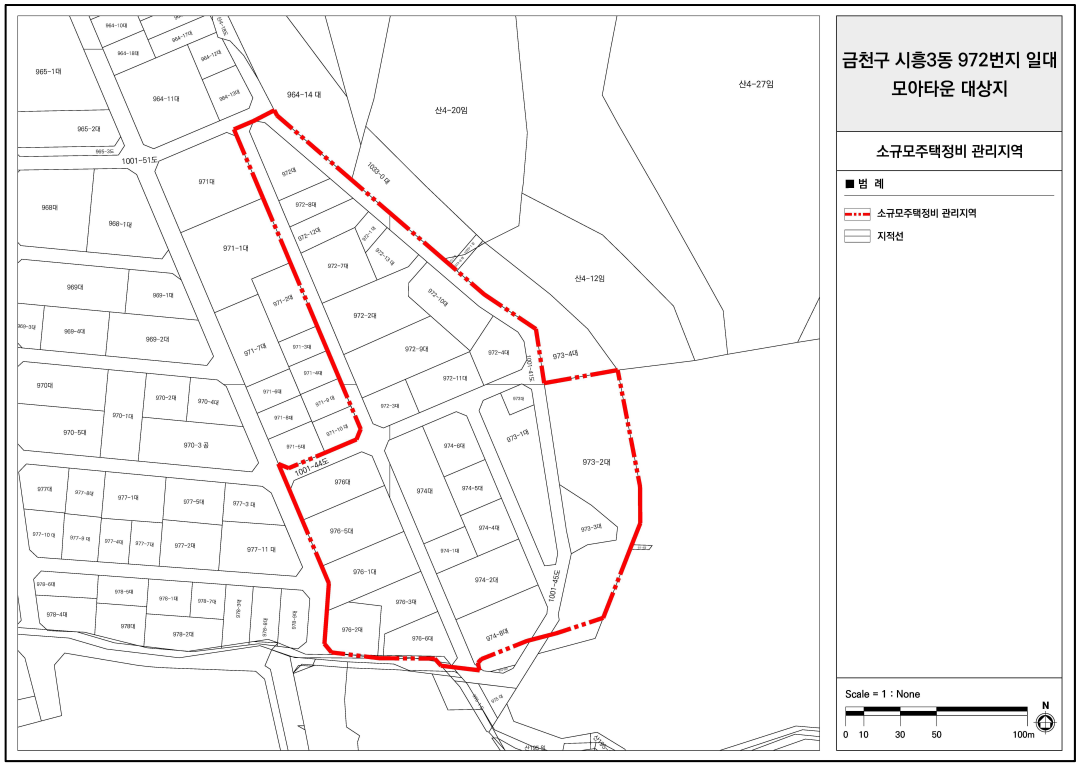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7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2024.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7호(2024.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2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10.8	-	491,110.8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10.8	-	491,110.8	100.0	· 도로 · 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309,143.1	증) 0.3	309,143.4	62.9	
상업업무용지		6,111.3	-	6,111.3	1.3	
주거복합용지		6,624.0	-	6,624.0	1.3	
종교용지		1,599.0	-	1,599.0	0.3	·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167,971.5	감) 0.3	167,971.2	34.2	·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76,100.2	-	76,100.2	15.5	·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535.0	-	535.0	0.1	
	공원	45,566.9	감) 0.3	45,566.6	9.3	
	녹지	985.4	-	985.4	0.2	
	하천	24,050.8	-	24,050.8	4.9	·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440.0	-	2,440.0	0.5	· 소방파출소+관악산지구대 1개소 · 삼성동사무소
	공공공지	330.9	-	330.9	0.1	
	학교	14,216.0	-	14,216.0	2.9	·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복지시설	2,986.3	-	2,986.3	0.6	· 사회복지시설 2개소 · 성민종합복지관 존치 1개소
	주차장	1,309.0	-	1,309.0	0.3	

※ 변경사유 : 신림3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2	-	12	46,552.3	감)0.3	46,552.0	
공원	소계	10	-	10	45,566.9	감)0.3	45,566.6	
	근린공원	1	-	1	4,169.0	-	4,169.0	
	수변공원	3	-	3	32,482.1	-	32,482.1	
	소공원	5	-	5	6,724.1	감)0.3	6,723.8	
	어린이공원	1	-	1	2,191.7	-	2,191.7	
녹지	소계	2	-	2	985.4	-	985.4	
	경관녹지	2	-	2	985.4	-	985.4	

※ 변경사유 : 신림3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168.7	49,929.6	14,796.3	9,140.7	673.0	25,319.6	11.35%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44.7	40,088.7	5,478.9	8,191.7	2,619.0	23,799.1	24.86%
기정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36.4	12,673.1	2,921.0	3,886.0	-	5,866.1	16.7%
변경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36.4	12,672.8	2,921.0	3,886.0	-	5,865.8	16.7%

※ 변경사유 : 신림3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기반시설 면적 변경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나)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136.4	-	35,136.4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1,373.8	감) 0.3	11,373.5	32.4	
	도 로	4,078.5	-	4,078.5	11.6	
	소 공 원	5,103.6	감) 0.3	5,103.3	14.5	율곡공원, 약수공원
	어린이공원	2,191.7	-	2,191.7	6.2	신우공원
택 지 (획지)	소 계	23,762.6	증) 0.3	23,762.9	67.6	
	3-1	22,463.3	증) 0.3	22,463.6	63.9	공동주택
	3-2	1,299.3	-	1,299.3	3.7	사회복지시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 로 : 변경없음

▢ 공 원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191.7	-	2,191.7	서고시 2008-121 (2008.4.10)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191.7	-	1,191.7	서고시 2008-121 (2008.4.10)	
변경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11.9	감) 0.3	3,911.6	서고시 2008-121 (2008.4.1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214.02	-	214.02	
	주민공동시설		959.02	-	959.02	
	문 고		212.49	-	212.49	
	보육시설		352.72	-	352.72	
	경로당		223.06	증)3.67	226.73	
	어린이놀이터		772.00	-	772.00	
	주민운동시설		458.03	-	458.03	

※ 변경사유 : 캐노피 일부 미반영 면적 산입을 위한 경로당 면적 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 변경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적률
산정용
연면적(㎡)</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평균층수
/최고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 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2">35,136.4</td><td>3-1</td><td>22,463.3</td><td>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대</td><td>53,013.38
이하</td><td>공동주택</td><td>30%
이하</td><td>236%
이하</td><td>15/17</td></tr>
<tr><td>3-2</td><td>1,299.3</td><td>관악구 신림동
산69-16번지 일대</td><td>2,598.60</td><td>사회복지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6</td></tr>
<tr><td rowspan="2">변경</td><td rowspan="2">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2">35,136.4</td><td>3-1</td><td>22,463.6</td><td>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대</td><td>53,014.1
이하</td><td>공동주택</td><td>30%
이하</td><td>236%
이하</td><td>15/17</td></tr>
<tr><td>3-2</td><td>1,299.3</td><td>관악구 신림동
산69-16번지 일대</td><td>2,598.60</td><td>사회복지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6</td></tr>
<tr><td rowspan="4">변경
없음</td><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571세대 이상</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r><td colspan="2">기준용적률
20%상향</td><td colspan="8">•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
- 기준용적률 상향 170% → 180%</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8">• 236%이하</td></tr>
<tr><td rowspan="2">변경</td><td colspan="2" rowspan="2">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td><td>기정</td><td colspan="7">• 소형주택 건설규모
=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
= (233.98% - 219.98%) = 14.0%</td></tr>
<tr><td>변경</td><td colspan="7">• 소형주택 건설규모
=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
= (233.99% - 219.98%) = 14.01%</td></tr>
<tr><td>변경없음</td><td colspan="2">소형주택 확보방법</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10%상향 조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td></tr>
</table>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 용적률 변경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기준 면적 변경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 로 : 변경없음

▢ 공 원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191.7	-	2,191.7	서고시 2008-121 (2008.4.10)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191.7	-	1,191.7	서고시 2008-121 (2008.4.10)	
변경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11.9	감) 0.3	3,911.6	서고시 2008-121 (2008.4.1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3	23,762.6	3-1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대	22,463.3	증)0.3	22,463.6	공동주택
		3-2	관악구 신림동 산69-16번지 일대	1,299.3	-	1,299.3	사회복지시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10.8	-	491,110.8	•서고2006-357호 (2006.10.19)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91,110.8	-	491,110.8	100.0
주거지역	소 계		443,645.6	-	443,645.6	90.3
	일반주거지역	제1종	87,195.8	-	87,195.8	17.8
		2종(7층)	57,393.2	-	57,393.2	11.7
		2종	233,457.2	-	233,457.2	47.5
		3종일반	42,527.1	-	42,527.1	8.7
	준주거		23,072.3	-	23,072.3	4.7
자연녹지			47,465.2	-	47,465.2	9.7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	근린공원	신림동 산85-25일대	1,729.2	-	1,729.2		신림2
기정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88.5	-	188.5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2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191.7	-	2,191.7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191.7	-	1,191.7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3
변경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11.9	감)0.3	3,911.6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456.7	-	1,456.7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2
기정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897.4	-	19,897.4	서고시2008-121 ('08.4.10)	저류시설 중복결정
기정	⑤		소공원	신림동 1513-7일대	1,001	-	1,001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기정	⑤		수변공원	신림동 808-498	11,128	-	11,128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기정	⑥		소공원	신림동 299-17일대	443	-	44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 변경사유 : 신림3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의 변경없이 면적 변경

2. 녹지 : 변경없음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2133-7228)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8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림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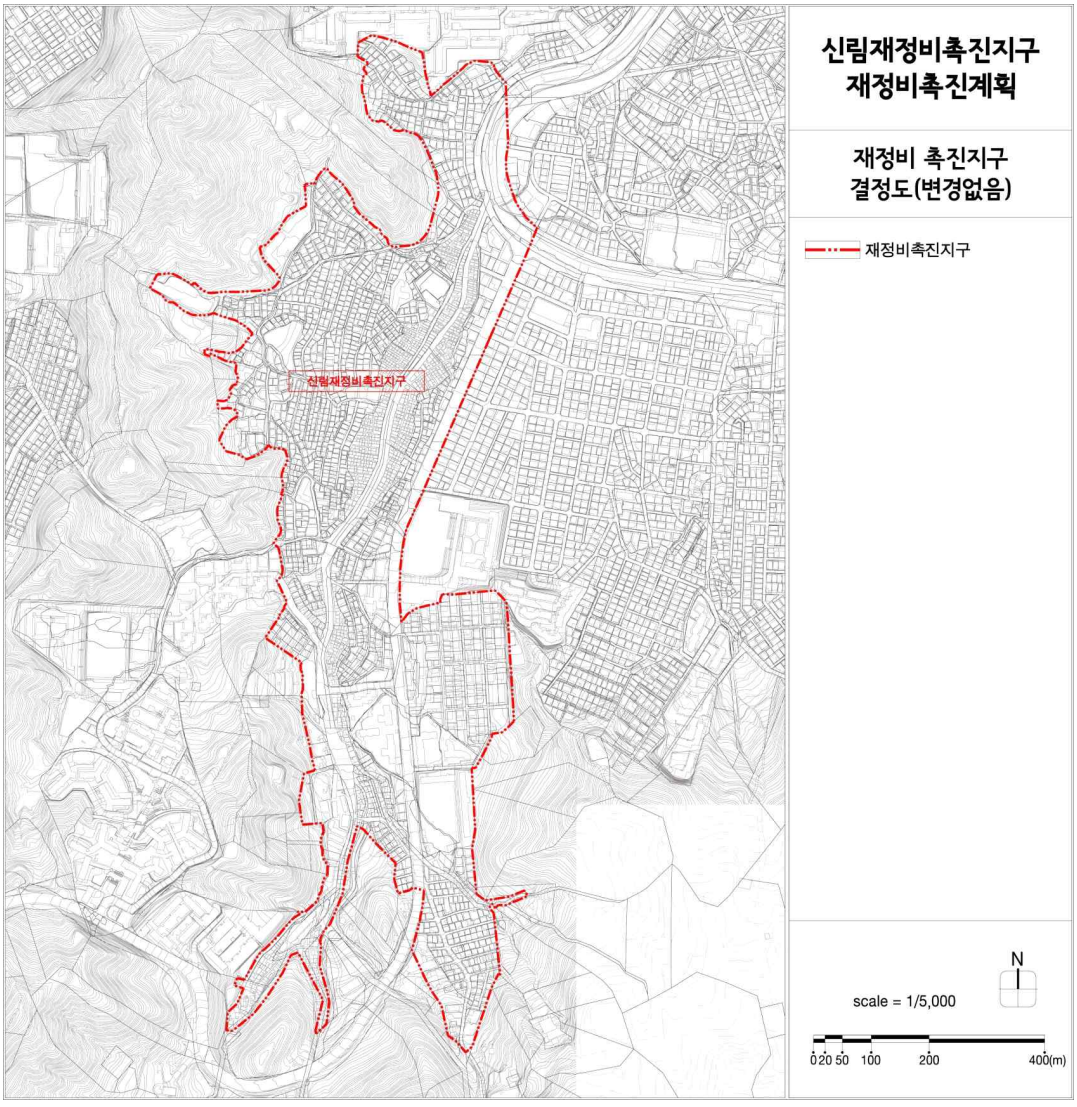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용도지역 · 지구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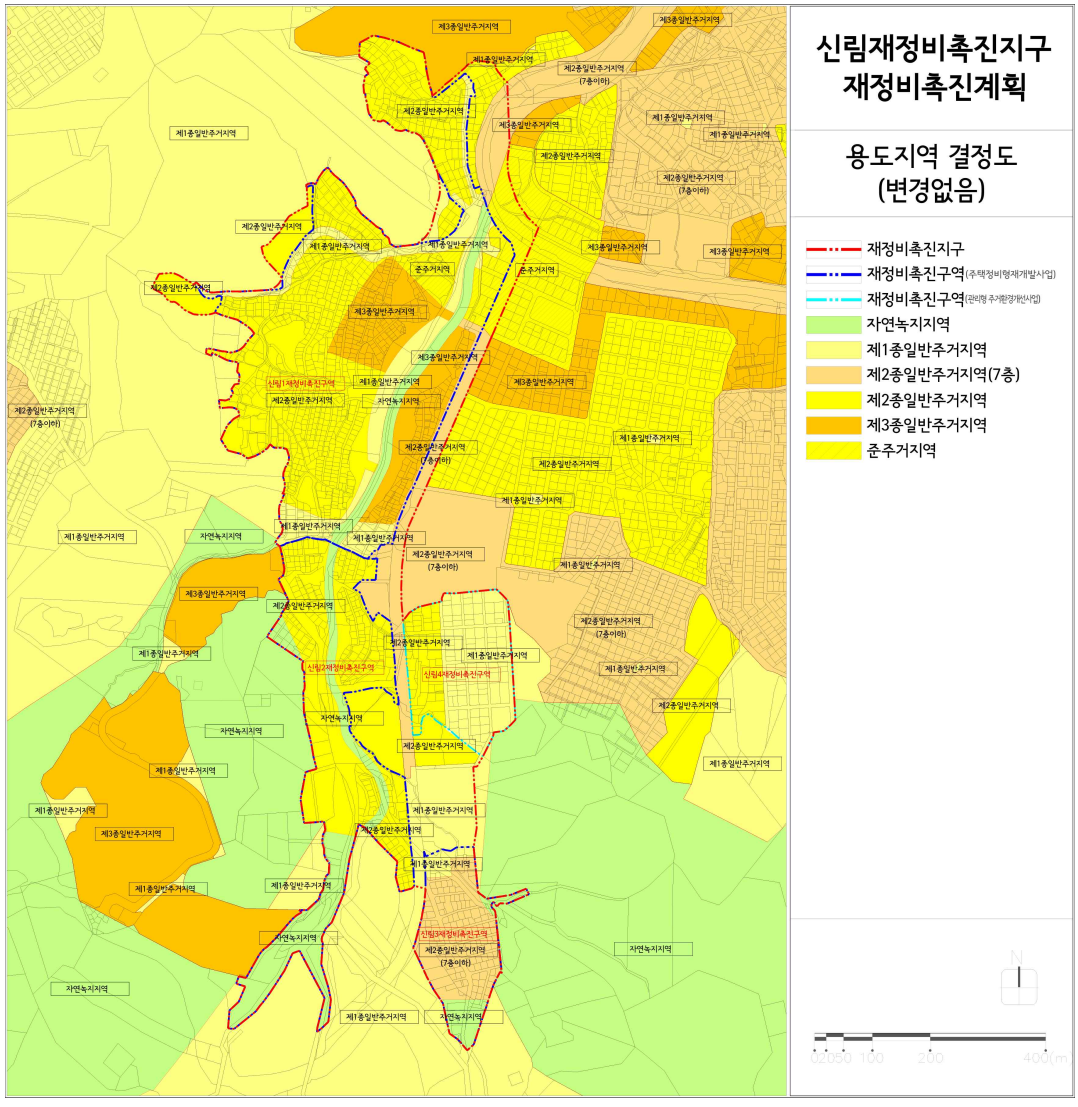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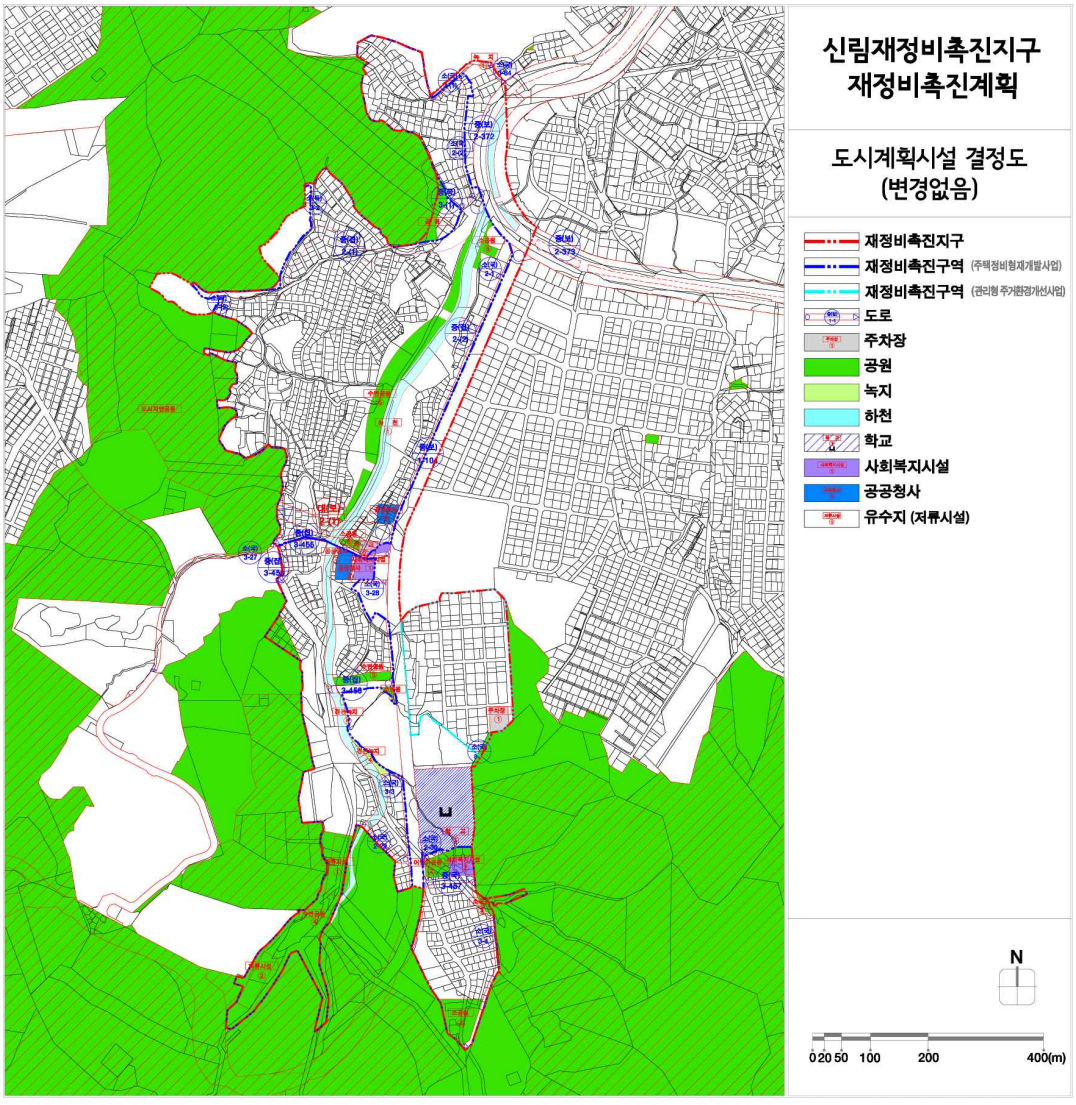

[신림3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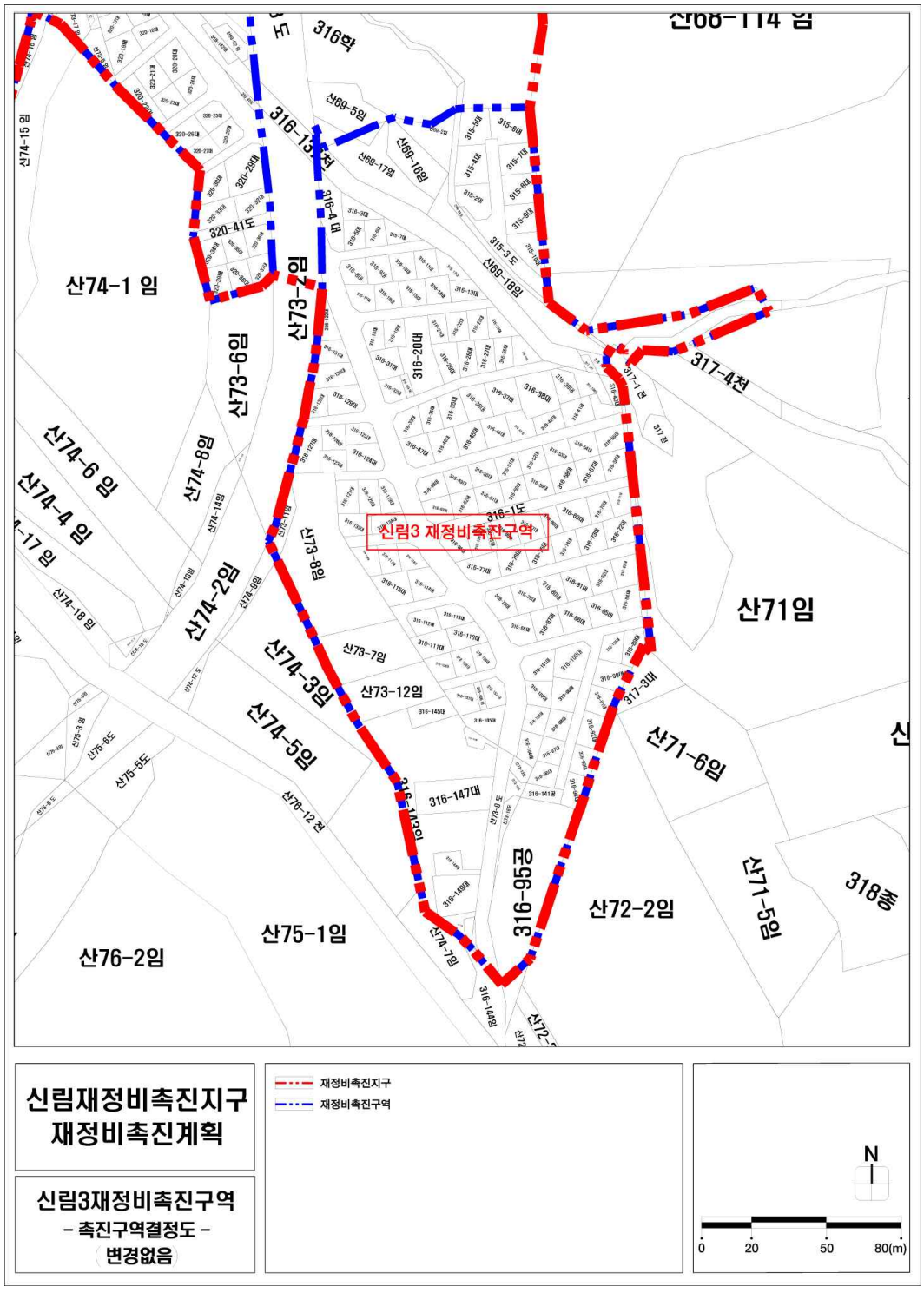

[신림3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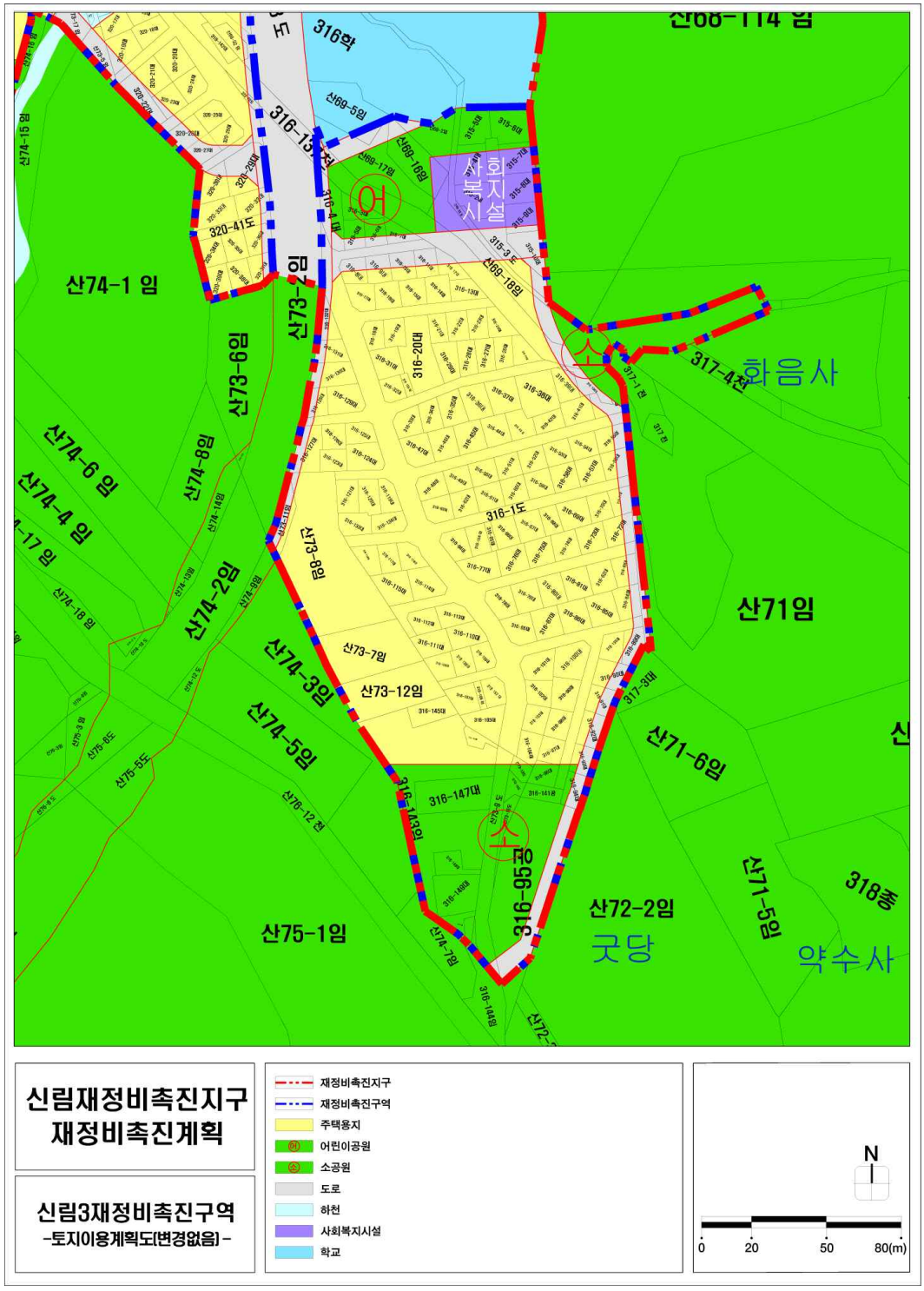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신림3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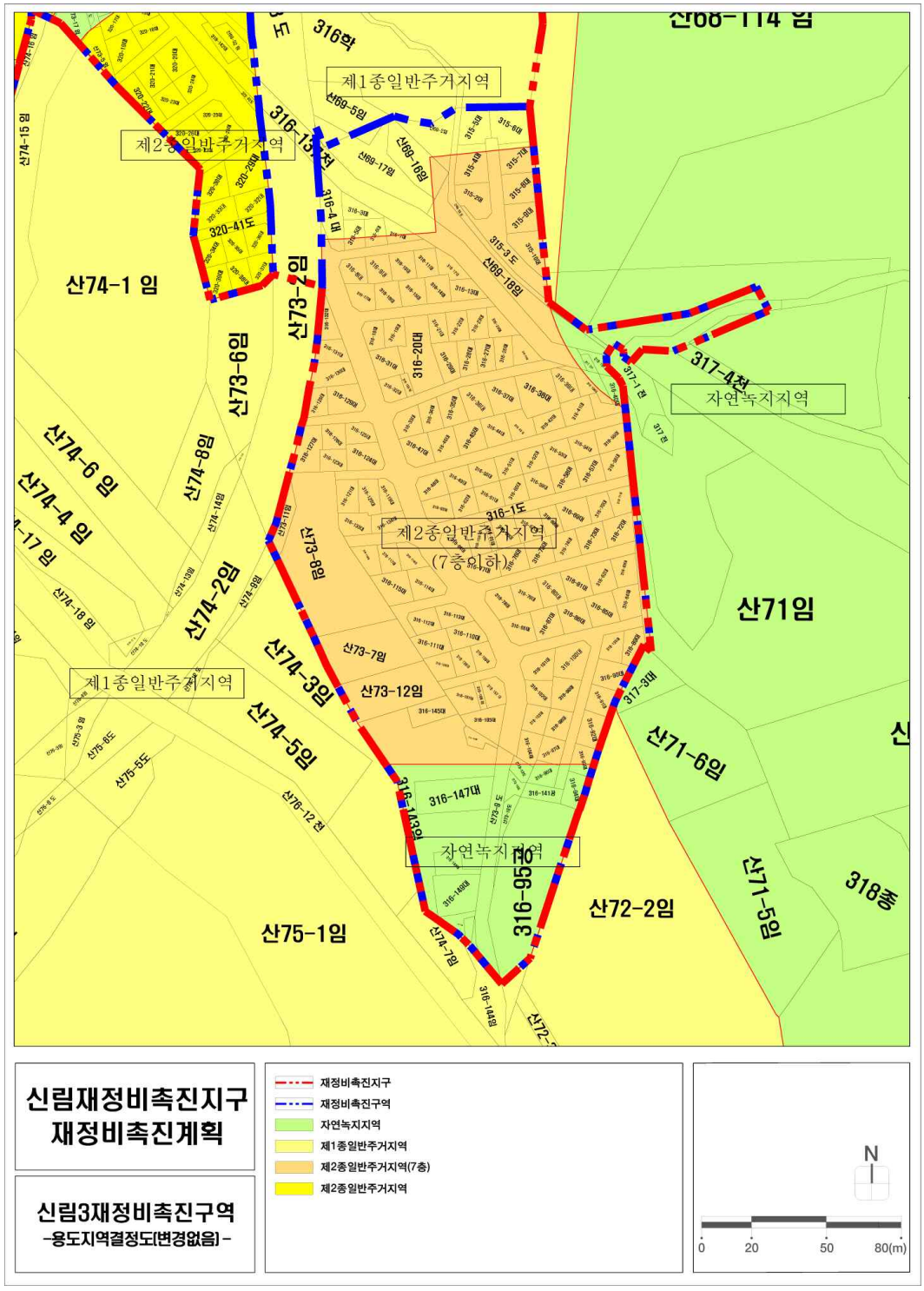

[신림3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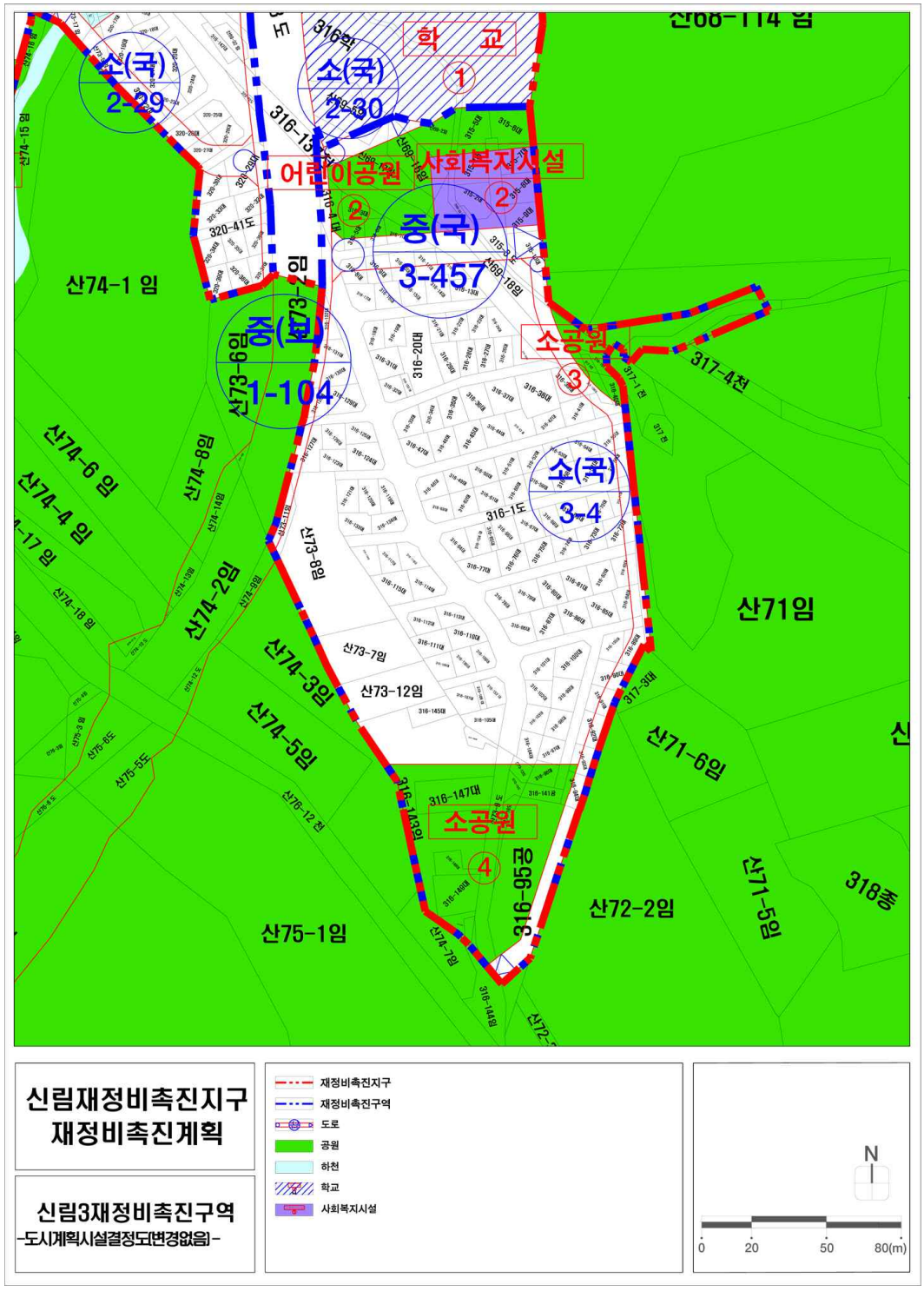

[신림3 정비계획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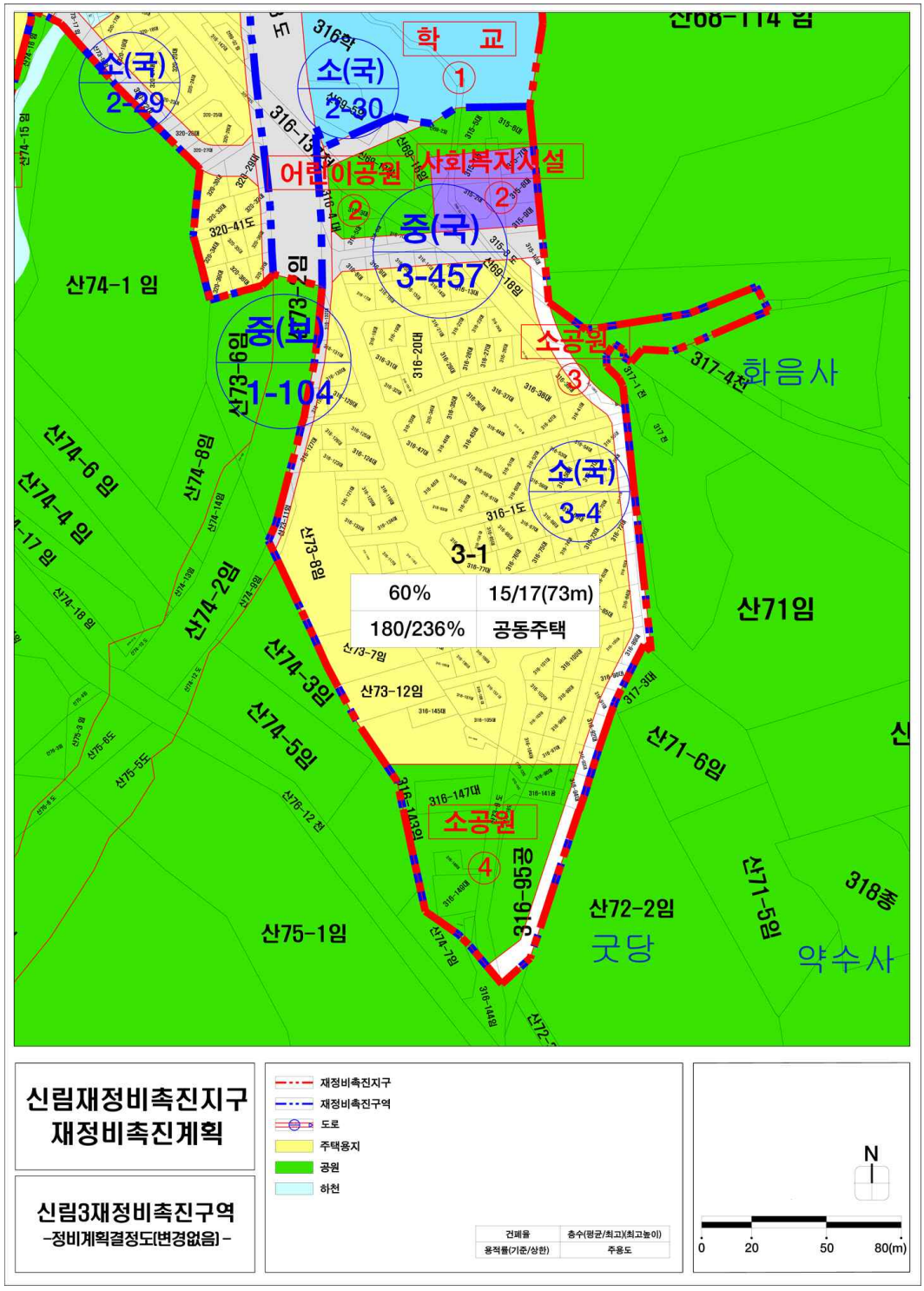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8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이하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2. 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	증) 141,286.8	141,286.8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41,286.8	141,286.8	100.0	-
정비 기반시설 등	소계	-	증) 18,851.8	18,851.8	13.3	-
	도로	-	증) 8,205.7	8,205.7	5.8	-
	문화공원	-	증) 5,411.3	5,411.3	3.8	-
	소공원	-	증) 4,940.0	4,940.0	3.5	-
	공공시설	-	증) 294.8	294.8	0.2	-
획지	소계	-	증) 122,435.0	122,435.0	86.7	-
	획지1	-	증) 119,881.0	119,881.0	84.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504.0	504.0	0.4	종교시설
	획지3	-	증) 344.0	344.0	0.2	차고지
	획지4	-	증) 1,706.0	1,706.0	1.2	청년주택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1,286.8	-	141,286.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854.0	감) 6,235.4	618.6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4,432.8	감) 113,645.6	20,787.2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19,881.0	119,881.0	84.9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동주택(획지1)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9,881.0	상도15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1,982,973,574
		일반분양	473,265,902
	임대주택	법정 용적률	166,360,842
		상한 용적률	-
	근린생활시설		27,718,200
	매출부가세		9,476,577
	소계		2,640,841,941
지출	공사비		1,134,073,104
	보상비		180,702,369
	관리비		5,915,872
	설계비		18,945,867
	감리비		24,684,450
	부대경비		105,386,960
	예비비		81,040,665

구분	항목	금액(천원)
	소계	1,550,749,287
종전자산(출자금) 평가금액		1,017,999,493
추정비례율	107.08% = {총수입(2,640,841,941천원) - 총지출(1,550,749,287천원)} ÷ 종전자산(1,017,999,493천원)×10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추산 비교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전체 사업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7,123	7,520	7,917	8,310	8,707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42,770	142.77	136.99	131.20	125.42	119.64
	5%	40,826	130.71	124.93	119.14	113.36	107.57
	0%(기준)	38,882	118.65	112.86	107.08	101.29	95.51
	-5%	36,935	106.58	100.80	95.01	89.23	83.44
	-10%	34,991	94.52	88.73	82.95	77.16	71.38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3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	1936.12.26	-
변경	중로	3	37	12~20	국지도로	1,030 (3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30 (190)	상도동 산65-179	상도동 264-244	일반도로	-	1990.03.24. (서고 제1990-75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30 (190)	상도동 산65-179	상도동 237-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21	상도동 산76-3	상도동 279-488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1	상도동 산76-3	상도동 279-48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15	상도동 293-8	상도동 459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215	상도동 293-8	상도동 459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6	-	620 (210)	상도동 248-20	상도동 279-53	일반도로	-	1978.06.12. (서고 제1978-282호)	-
폐지	소로	3	-	4	-	310	-	-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	-	670	-	-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	4	-	175	-	-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	4	-	150	-	-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410	상도동 279-528	상도동 263-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40	상도동 288-26	상도동 259-22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	10	국지도로	288	상도동 289	상도동 279-27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58	상도동 283-80	상도동 279-52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230	상도동 279-52	상도동 279-536	일반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37	중로3-37	B:12~20m, L:1,030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2-2	소로2-(1)	B:8m, L:330m	· 주변사업 도로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2	소로1-(1)	B:10m, L:221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2	소로1-(2)	B:10m, L:215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신설	-	중로3-(1)	B:12m, L:410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2)	B:8m, L:440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3)	B:10m, L:288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4)	B:8m, L:158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5)	B:8m, L:230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국) 3-(1)	도로	상도동 260-12	길이	-	증) 98m	98m	-	-
				폭	-	증) 12m	12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1,178.5㎡	1,178.5㎡		
신설	소(국) 2-(3)	도로	상도동 292-56	길이	-	증) 288m	288m	-	-
				폭	-	증) 10m	10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2,880.0㎡	2,880.0㎡		
신설	소(국) 1-(1)	도로	상도동 283-59	길이	-	증) 114m	114m	-	-
				폭	-	증) 10m	10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1,152.2㎡	1,152.2㎡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을 통해 지하매설물 높이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하고,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국) 3-(1)	도로	도로 (신설) - 증) 1,198.0 (12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소(국) 2-(3)	도로	도로 (신설) - 증) 2,860.0 (10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소(국) 1-(1)	도로	도로 (신설) - 증) 2,860.0 (10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380-2	410.5	감) 410.5	-	1998.09.30. (서고 제1998-340호)	-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264-156	192.0	감) 192.0	-	2010.07.22. (서고 제2010-281호)	-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264-154	112.0	감) 112.0	-	2010.07.22. (서고 제2010-281호)	-
신설	-	문화공원	상도동 261-5	-	증) 5,411.3	5,411.3	-	-
신설	-	소공원	상도동 288-15	-	증) 4,940.0	4,940.0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문화공원	문화공원 (신설) - 증) 5,411.3㎡	· 대상지 내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증) 4,940.0㎡	·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상도동 275	1,048.0	-	1,048.0	2005.12.08. (동작구 제2005-83호)	-
기정	-	공공공지	상도동 275	658.0	-	658.0	2017.08.03. (서고 제2017-283호)	-
기정	-	수도공급설비	상도동 274-19	277.0	감) 277.0	-	-	-
변경	-	수도공급설비	상도동 237-13	-	증) 294.8	294.8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변경) - 증) 294.8㎡	· 대상지 내 기존 가압장부지 이전설치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상도동 279번지 일대	-	증) 975	975	지상1층
	경로당		-	증) 975	975	지상1층
	작은도서관		-	증) 450	450	지하1층
	주민공동 시설		-	증) 600	600	지상1층
	다함께 돌봄센터		-	증) 900	900	지상1층
	주민운동 시설		-	증) 1,000	1,000	지상1층
	어린이 놀이터		-	증) 3,800	3,800	지상1층
	계		-	-	8,700	-
부대복리 시설	근린생활 시설		-	증) 6,320	6,320	지상1층, 지하1층
	관리사무소		-	증) 150	150	지상1층
	경비실		-	증) 120	120	지상1층
	통신실		-	증) 50	50	지하1층
	계		-	-	6,640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141,286.8	획지	119,881.0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589	1	-	585	3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141,286.8	획지1	119,881.0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기준 208.0 허용 243.4 상한 250이하	105m이하/ 최고 3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 수 : 3,204세대(분양 2,704세대, 임대 500세대)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500세대, 국민주택규모주택 0세대

구 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분양	재개발의무임대	국민주택규모주택	비율(%)		비고
60㎡이하	39㎡	-	192	-	5.99	50.65	-
	46㎡	195	-	-	6.08		
	59㎡	928	308	-	38.58		
60㎡초과~85㎡이하	74㎡	473	-	-	14.76	42.48	-
	84㎡	888	-	-	27.72		
85㎡초과	102㎡	220	-	-	6.87	6.87	-
합계		2,704	500	-	100.0		-
		3,204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계		500	15.6	-
재개발 의무임대	소계	500	15.6	-
	39㎡	192	6.0	-
	59㎡	308	9.6	-
	74㎡	-	-	-
국민주택규모 임대	소계	-	-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건설
  → 계획 : 500세대 (15.6%) ≥ 기준 : 3,204세대 × 15% = 480.6세대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 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계획 : 0세대 ≥ 기준 : 0 •초과용적률 : 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192세대 ≥ 기준: 500세대 × 30% = 150세대 또는 3,204세대 x 5% = 160.2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0세대) 제외
주택 전체 세대수
= 전체 세대수(3,204세대) -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세대수(0세대) = 3,204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의거 이주대책에 대한 인가권자 협의 결과에 따라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심의완화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건축법 제69조)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 중 개방형 시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성대로 변(대상지 북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성대로10길 변(대상지 중앙)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타 계획	입체적 보행구간		·단지 내 소공원, 문화공원 및 체육시설, 국사봉 등산로 출입구, 성대로 주요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계획하고 단차를 활용하여 입체적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획지 2·3·4 (청년주택, 차고지, 종교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계	도로	공원, 가압장	건축물 기부채납			
							건축물 대지 지분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141,286.8㎡	119,881.0㎡	2,554.0㎡	18,851.8㎡	8,205.7㎡	10,646.1㎡	-	-	2,480.6㎡	12,531.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률 : 2.7%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8,851.8㎡ - 2,480.6㎡ - 12,531.8㎡ = 3,839.4㎡									
기준용적률	▪ 기준 : 208.0% -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가중평균값 적용 - 1종일반주거지역(5.1%) 150%,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94.9%) 190% = 188.0% + 20.0%(소형주택 공급) = 208.0% ※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으로 기준용적률 20% 완화									
허용용적률	▪ 허용 : 243.4% - 2023년 서울시 대지 평균 공시지가 5,861,129원/㎡, 2023년 대상지 내 대지 평균 공시지가 3,318,616원/㎡로 (5,861,129÷3,318,616) = 보정계수 1.77 - 허용용적률 20% × 1.77 = 35.4% = 기준용적률 208.0% + 35.4% = 243.4%									
	인센티브 항목	열린단지	5%	▹ 단지 외곽개방, 연도형상가 설치 등 열린단지 조성						
		BF인증	5%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						
		층간소음 해소	5%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방재안전	5%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소 계	20%	20% 적용						
상한용적률	▪ 상한 : 250.0%(법적상한) ※상한용적률 계산시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 보정계수 적용 전 용적률 = 보정계수 적용 허용용적률 + 상한계산용 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가중치) + (0.7 × α건축물)} = 243.4 + 208.0% × {(1.3 × 0.032 × 0.9081) + (0.7 × 0)} = 251.2% = 상한용적률 : 251.2%									

구분	산정내용
α [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839.4㎡) ÷ (119,881.0㎡) = 0.0320
β [건축물]	▪ 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해당없음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250.0%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 249.98% ※ 상한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였으나,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 계획 용적률 적용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임대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3,204세대 = 3,204세대 - 0세대(법적상한 증가분)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500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이상 : 3,204세대 x 15% = 480.6세대 ∴ 500세대 계획 〉 480.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192세대 - 500세대의 30% 이상 : 500 x 30% = 150세대 또는 - 3,204세대의 5% 이상 : 3,204 x 5% = 160.2세대 ∴ 192세대 계획 〉 150세대 또는 160.2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500	15.6	100.0
전용 39㎡	192	6.0	38.4
전용 59㎡	216	9.6	61.6
전용 74㎡	-	-	-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 등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 목표 4·5등급	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	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노후·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만족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균표고 58m 평균경사 8.1°	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6. 물순환(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	
7.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8.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	
9.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공간 유형분석(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	
10.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	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1. 온실가스	온실가스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 검토	
12.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13.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	
14.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15. 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등	○	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16.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외 공원 인접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17.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등에 일조영향	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8.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	
19.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공사 시 영향 미미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발전을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가칭)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 현황세대수 : 2,572세대 • 계획세대수 : 3,204세대 • 증가세대수 : 632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일조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 내 공원 등 공공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	증) 141,286.8	141,286.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1,286.8	-	141,286.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854.0	감) 6,235.4	618.6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4,432.8	감) 113,645.6	20,787.2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19,881.0	119,881.0	84.9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동주택 (획지1)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9,881.0	상도15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3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	1936.12.26.	-
변경	중로	3	37	12~20	국지도로	1,030 (3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30 (190)	상도동 산65-179	상도동 264-244	일반도로	-	1990.03.24. (서고 제1990-75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30 (190)	상도동 산65-179	상도동 237-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21	상도동 산76-3	상도동 279-488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1	상도동 산76-3	상도동 279-48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15	상도동 293-8	상도동 459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215	상도동 293-8	상도동 459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6	-	620 (210)	상도동 248-20	상도동 279-53	일반도로	-	1978.06.12. (서고 제1978-282호)	-
폐지	소로	3	-	4	-	310	-	-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	-	670	-	-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	-	175	-	-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	4	-	150	-	-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410	상도동 279-528	상도동 263-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40	상도동 288-26	상도동 259-22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	10	국지도로	288	상도동 289	상도동 279-27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58	상도동 283-80	상도동 279-52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230	상도동 279-52	상도동 279-536	일반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37	중로3-37	B:12~20m, L:1,030m	•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2-2	소로2-(1)	B:8m, L:330m	• · 주변사업 도로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2	소로1-(1)	B:10m, L:221m	•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2	소로1-(2)	B:10m, L:215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신설	-	중로3-(1)	B:12m, L:410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2)	B:8m, L:440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3)	B:10m, L:288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4)	B:8m, L:158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2-(5)	B:8m, L:230m	•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국) 3-(1)	도로	상도동 260-12	길이	-	증) 98m	98m	-	-
				폭	-	증) 12m	12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1,178.5㎡	1,178.5㎡		
신설	소(국) 2-(3)	도로	상도동 292-56	길이	-	증) 288m	288m	-	-
				폭	-	증) 10m	10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2,880.0㎡	2,880.0㎡		
신설	소(국) 1-(1)	도로	상도동 283-59	길이	-	증) 114m	114m	-	-
				폭	-	증) 10m	10m		
				높이	-	증) 지하3m~지상6m	지하3m~지상6m		
				면적	-	증) 1,152.2㎡	1,152.2㎡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을 통해 지하매설물 높이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하고,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국) 3-(1)	도로	도로 (신설) - 증) 1,198.0 (12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소(국) 2-(3)	도로	도로 (신설) - 증) 2,860.0 (10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소(국) 1-(1)	도로	도로 (신설) - 증) 2,860.0 (10m 도로)	·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380-2	410.5	감) 410.5	-	1998.09.30. (서고 제1998-340호)	-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264-156	192.0	감) 192.0	-	2010.07.22. (서고 제2010-281호)	-
폐지	-	어린이공원	상도동 264-154	112.0	감) 112.0	-	2010.07.22. (서고 제2010-281호)	-
신설	-	문화공원	상도동 261-5	-	증) 5,411.3	5,411.3	-	-
신설	-	소공원	상도동 288-15	-	증) 4,940.0	4,940.0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문화공원	문화공원 (신설) - 증) 5,411.3㎡	· 대상지 내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증) 4,940.0㎡	·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4)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상도동 275	1,048.0	-	1,048.0	2005.12.08. (동작구 제2005-83호)	-
기정	-	공공공지	상도동 275	658.0	-	658.0	2017.08.03. (서고 제2017-283호)	-
기정	-	수도공급설비	상도동 274-19	277.0	감) 277.0	-	-	-
변경	-	수도공급설비	상도동 237-13	-	증) 294.8	294.8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변경) - 증) 294.8㎡	· 대상지 내 기존 가압장부지 이전설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119,881.0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119,88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획지2	504.0	동작구 상도동 237-5번지 일대	504.0	종교시설
신설	획지3	344.0	동작구 상도동 380-2번지 일대	344.0	차고지
신설	획지4	1,706.0	동작구 상도동 275번지 일대	1,706.0	청년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용 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시설	-
		획지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의 차고 및 주기장	-
		획지4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60% 이하	공동주택 사업부지
	획지2	60% 이하	종교부지
	획지3	60% 이하	차고지
	획지4	60% 이하	청년주택

○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08%이하	243.4%이하	250.0% 이하	250.0% 이하	-
	획지2	170%이하	-	-	-	2종일반 (7층이하) 용적률 적용
	획지2	170%이하	-	-	-	
	획지2	170%이하	-	-	-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기준용적률 완화	비고
신설	20.0% ※ 소형주택(60㎡ 이하)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열린단지	BF인증	층간소음 해소	방재안전	
신설	5%	5%	5%	5%	총 20.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고
신설	7.8%	-

○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신설	획지1	105m 이하 (35층 이하)	-
	획지2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	-
	획지3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	-
	획지4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	-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성대로 변 : 5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성대로10길 변 : 5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그 외 : 3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4) 경관계획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 저층주거 밀집지역 및 주변 개발사업지와의 높이를 고려한 영역별 주거유형 배치 - 단지 중앙부 :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고, 디자인 특화주동으로 계획 (권장) - 국사봉1길, 성대로10길 경계부 : 주변으로 열린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배치 · 테라스형 근생 및 중정형 주민공동시설의 지하 배치, 선큰광장, 데크 주차장, 입체보행가로 등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 · 동서로 열린 주동 배치를 통해 단지 바람길을 조성, 쾌적한 단지 조성
보행환경	공동주택 사업부지	· 단지 내 단차 발생 시 옹벽 등 설치를 최소화하고, 보행 약자를 고려한 자연 경사 및 수직이동시설 설치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획지 간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단차 최소화 - 주변보다 낮은 레벨의 도로 구간 상부를 활용 (입체적 결정도로 내) · 경계부에 면하여 지역에 열린 다양한 규모의 외부공간 계획
용도계획	공동주택 사업부지	· 성대로변으로 문화공원과 연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 성대로10길변으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권장) · 소공원, 국사봉1길을 따라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배치 (권장)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입면계획	공동주택 아파트	·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을 부여하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획 제시

○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경관	공동주택 아파트	· 국사봉까지 시각적으로 열린 경관확보를 위해 문화공원, 청년주택, 성대로10길 도로변을 따라 통경구간을 설정해 건축물 계획을 지양하고 열린 단지로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아파트	· 주변 중저층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단지 중앙에서 경계부 방향으로 지역경관 흐름을 이어주는 텐트형(▲) 스카이라인 계획 · 최고 층수 35층 이하 범위에서 리듬감 있는 주동 높이 계획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 지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4">계획 내용</th></tr>
<tr><td colspan="3">위치(용도지역)</td><td colspan="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면적</td><td colspan="4">• 141,286.8㎡</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대지)면적</td><td colspan="4">• 119,881.0㎡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면적</td><td colspan="4">• 18,851.8㎡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비율</td><td colspan="4">•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2.7% 내외</td></tr>
<tr><td colspan="3">공공 · 기반시설계획</td><td colspan="4">•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3,839.4㎡
–공원 2개소 계획, 도로 계획, 공공시설 계획
–공원(10,351.3㎡), 도로(8,205.7㎡), 공공시설(294.8㎡)
• 공원
–대상지 북측 성대로변으로 문화공원 조성(면적 : 5,411.3㎡)
–대상지 서측 저층주거지변으로 소공원 조성(면적 : 4,940.0㎡)
• 도로
–성대로 : 지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12m(2차선)→20m(4차선) 확폭
–성대로10길 : 성대로와 이어지는 주요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해 6m→12m (3차선) 확폭,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성대로8길, 국사봉1가길 : 진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4m→8m (2차선) 확보
–국사봉1길 : 대상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6m→10m(3차선) 확폭,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성대로14길 : 진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6m→8m(2차선) 확보
–성대로6가길, 양녕로23길 : 진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8m→10m (2차선) 확보,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국사봉길 : 진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6m→10m(2차선) 확보
• 공공시설
–수도공급설비(기존 가압장, 294.8㎡) 조성</td></tr>
<tr><td rowspan="9">건축물의 용도 · 밀도에 관한 계획</td><td rowspan="2">용도</td><td>획지</td><td>획지1
(공동주택)</td><td>획지2
(종교)</td><td>획지3
(차고지)</td><td>획지4
(청년주택)</td></tr>
<tr><td>허용</td><td>• 공동주택</td><td>• 종교시설</td><td>• 차고지</td><td>•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d>• 60% 이하</td><td>• 60% 이하</td><td>• 60% 이하</td></tr>
<tr><td rowspan="4">용적률</td><td>기준</td><td>• 208.0% 이하</td><td>• 170% 이하</td><td>• 170% 이하</td><td>• 170% 이하</td></tr>
<tr><td>허용</td><td>• 243.4% 이하</td><td>–</td><td>–</td><td>–</td></tr>
<tr><td>상한</td><td>• 250.0% 이하</td><td>–</td><td>–</td><td>–</td></tr>
<tr><td>예정 법적 상한</td><td>• 250.0% 이하</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높이</td><td>• 105m 이하 (35층 이하)</td><td>–</td><td>–</td><td>–</td></tr>
</table>

구분		계획 내용
배치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성대로~문화공원 주변으로 상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대면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 성대로10길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주민공동 이용시설 배치구간	• 주요 보행동선(소공원, 국사봉1길)을 따라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배치(권장)
	건축한계선	• 성대로 변 : 5m • 성대로10길 변 : 5m • 그 외 : 3m
차량 진출입계획		• 주택용지 : 성대로10길, 국사봉1길, 성대로16길 진출입구 조성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 목표 4·5등급	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	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노후·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만족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균표고 58m 평균경사 8.1°	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6. 물순환(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	
7.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8.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9.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공간 유형분석(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	
10.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	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1. 온실가스	온실가스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 · 재생에너지 적용 검토	
12.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13.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	신 · 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	
14.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공사에 의한 소음 · 진동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15. 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등	○	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16.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외 공원 인접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17.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등에 일조영향	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	
18.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	
19.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공사 시 영향 미미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발전을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Ⅲ. 2024년 제14차(’ 24.12.24)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4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 구역면적 : 141,286.8㎡ - 용적률계획 : 기준 208%, 허용 243.4%, 상한 2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열린단지 조성(5%), 층간소음 해소(5%), BF인증(5%), 방재안전(5%) - 세대수 : 3,204세대(임대주택 500세대) ※ 재개발의무임대 500세대 ※ 재개발의무임대주택 평형 조정 74TY 73호 → 59TY 92호 - 순부담면적 : 3,828.1㎡(2.7%)	수정사항 반영 완료	수정 사항
		- 도로계획 중 입체적결정 사항은 구분지상권 지정 범위 등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관련계획 조서에 반영 완료	조건 사항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 장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980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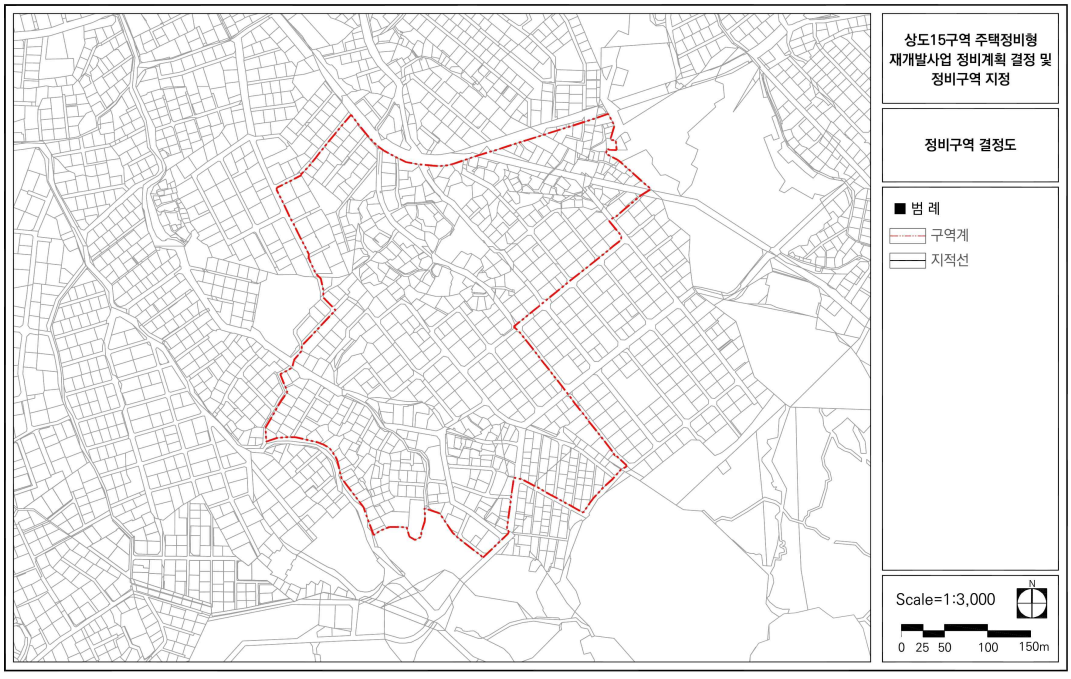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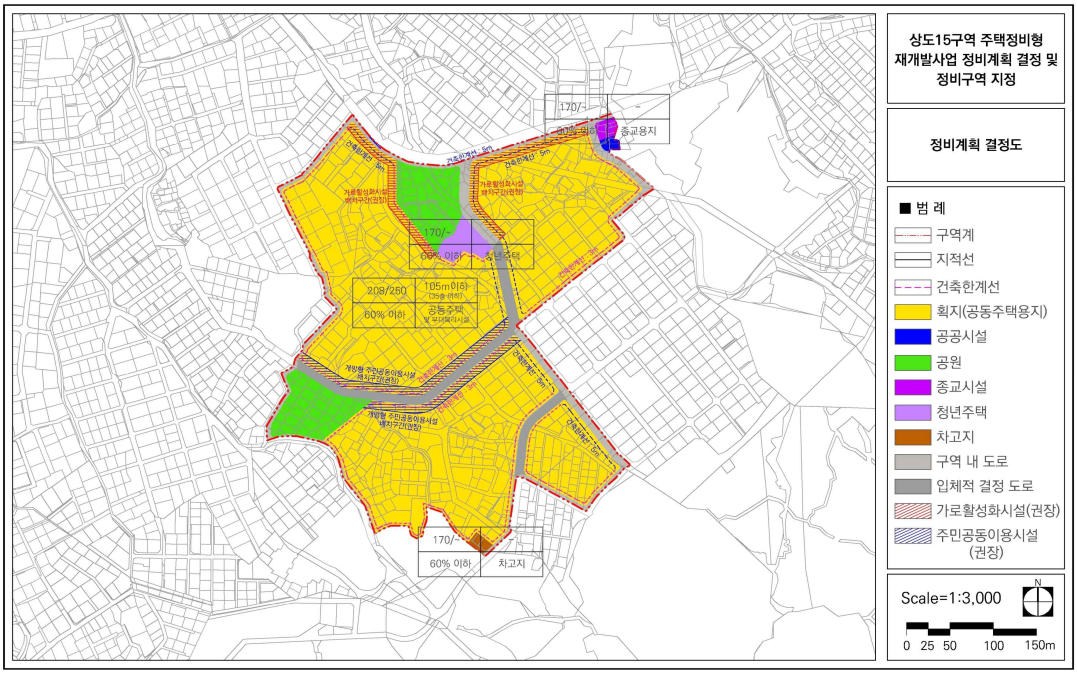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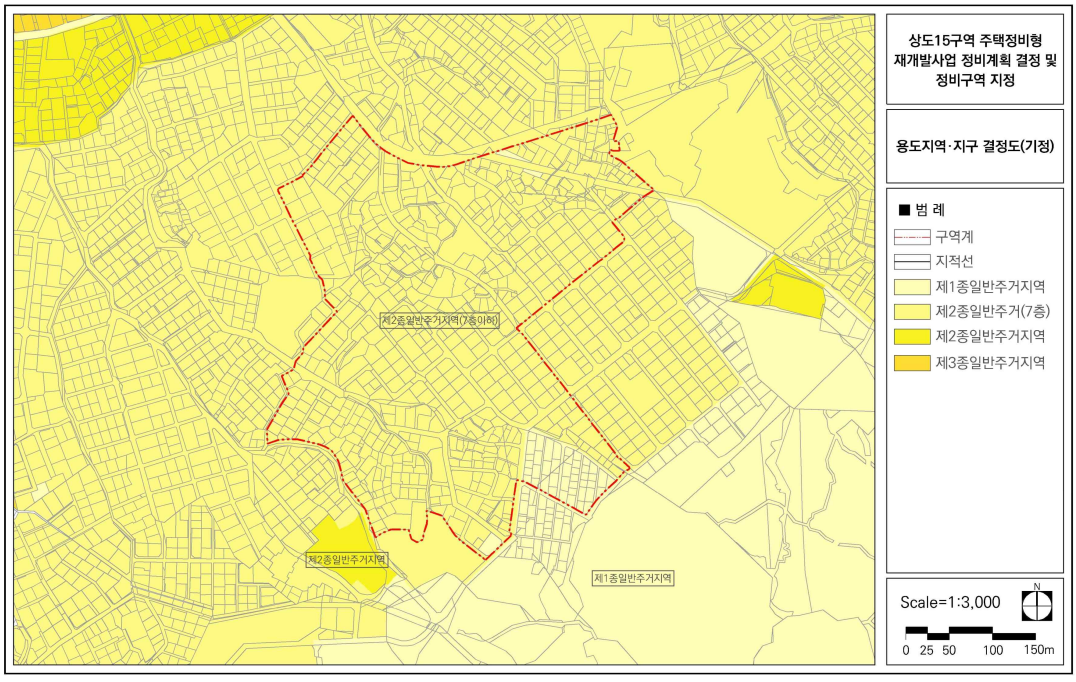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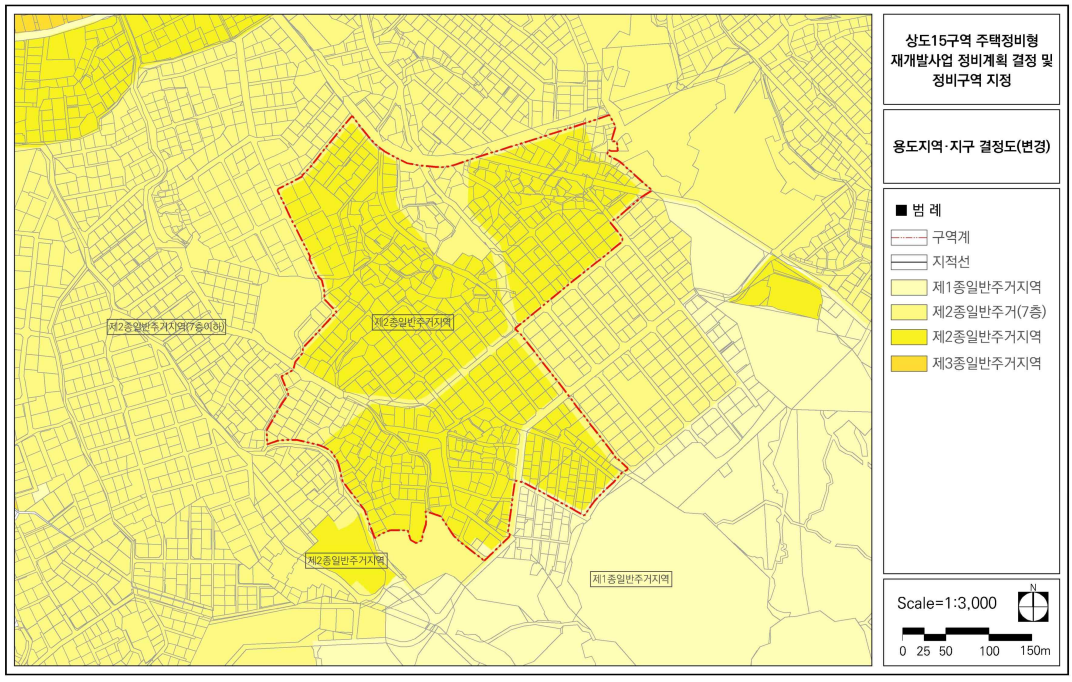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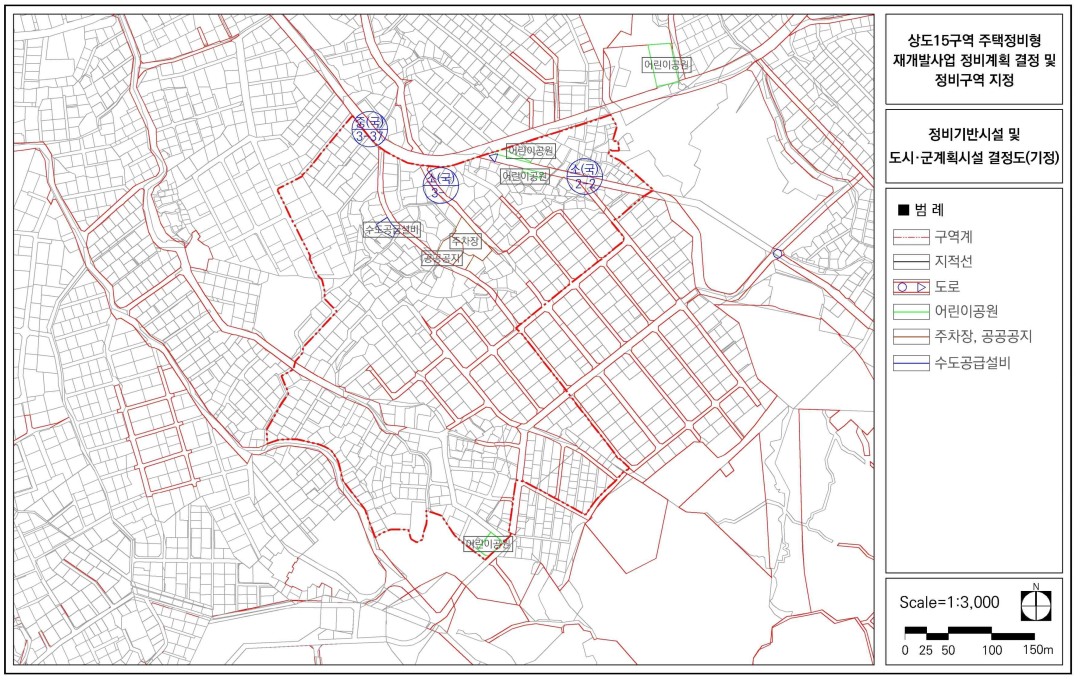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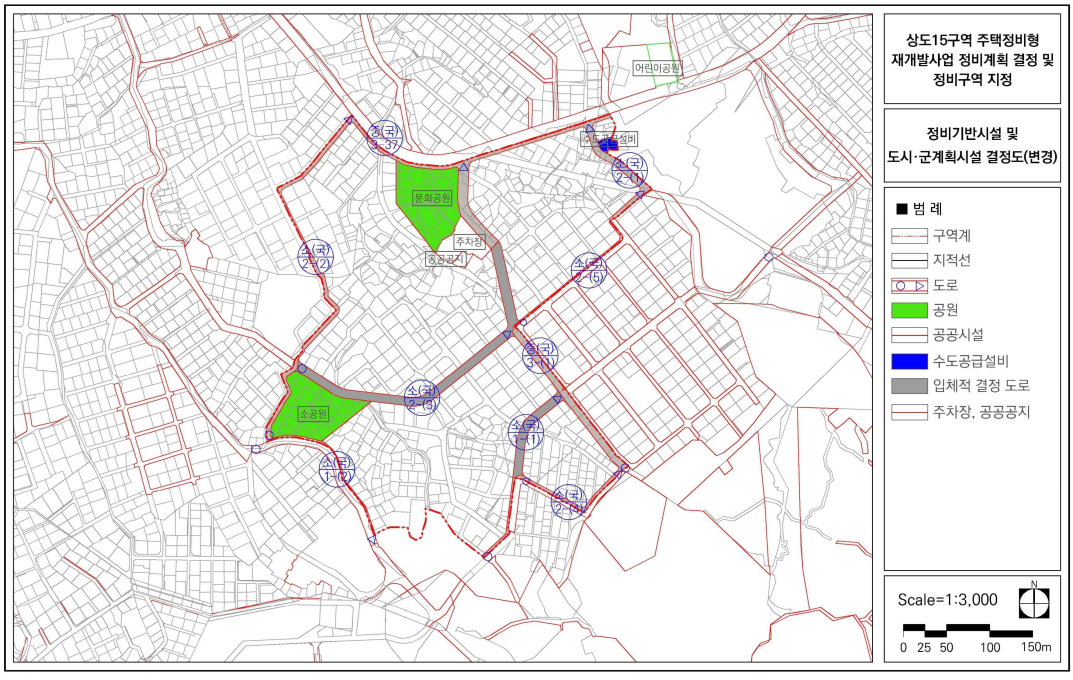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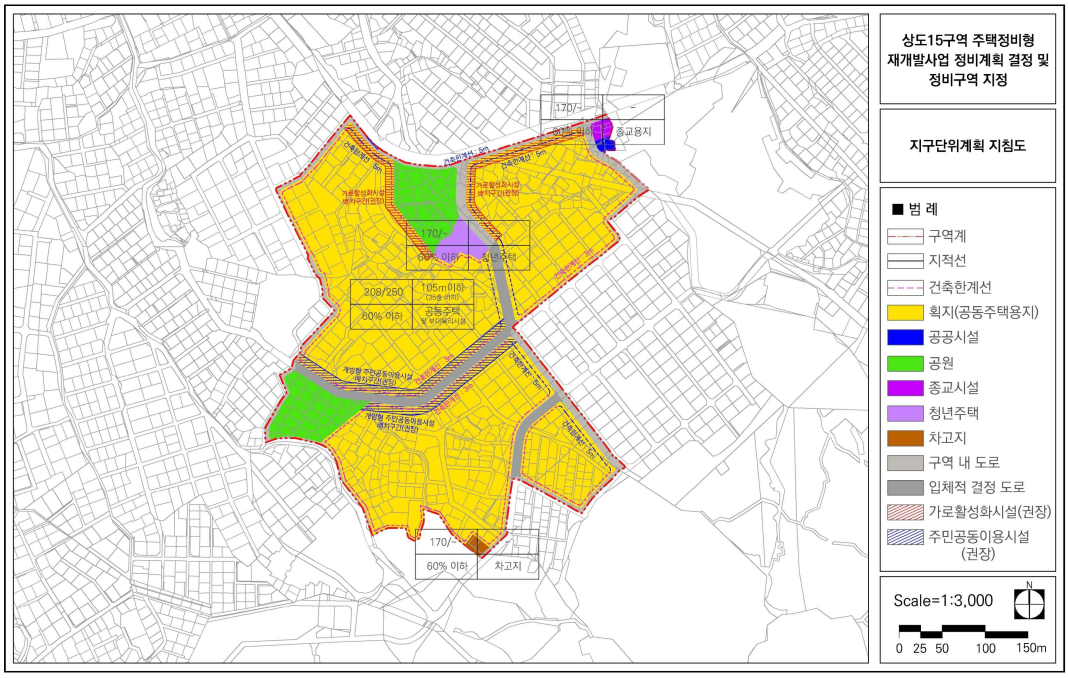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9호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이하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2. 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	증) 50,788.45	50,788.45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50,788.45	50,788.45	100.0	-
정비 기반시설 등	소계	-	증) 5,724.10	5,724.10	11.3	-
	도로	-	증) 2,151.10	2,151.10	4.3	-
	공원	-	증) 3,573.00	3,573.00	7.0	소공원
획지	소계	-	증) 45,064.35	45,064.35	88.7	-
	획지1	-	증) 42,762.25	42,762.25	84.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2,302.10	2,302.10	4.5	종교시설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788.45	-	50,788.4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88.45	감) 50,788.4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0,788.45	50,788.45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50,788.45	상도14구역은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910,945,531
	분양주택	소유자	846	706,877,848
		일반	127	123,740,826
	공공임대		218	66,740,654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13,981,112
	매출 부가세			-394,909
지출	소계			506,270,050
	공사비			380,507,980
	재경사업비			125,762,070
종전자산 추정액				396,552,000
추정비례율	102.04% ≒ [9,109억(총수입)-5,063억(총지출)] / 3,965억(종전자산 추산액) X 10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84형일반 분양가(천원/3.3㎡) \ 공사비(천원/3.3㎡)	6,750	7,125	7,500	7,875	8,250
41,800	132.38%	127.67%	122.93%	118.23%	113.48%
39,900	121.91%	117.21%	112.46%	107.76%	103.01%
38,000	111.49%	106.79%	102.04%	97.34%	92.60%
36,100	101.05%	96.35%	91.60%	86.90%	82.15%
34,200	90.61%	85.91%	81.16%	76.46%	71.72%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역內)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7	12	국지	1,030	상도동 3-18	상도동 3-35	일반	-	(1936.12.26)	-
변경	중로	3	37	12~16	국지	1,030 (268)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	-		-
폐지	소로	1	-	10	특수	13	상도동 244-225	상도동 238-2	보행자 전용	-	동작구102호 (2011.12.22)	-
폐지	기타	-	-	4~6	-	-	-	-	-	-	-	-
폐지	기타	-	-	4	-	-	-	-	-	-	-	-
기정	소로	3	-	6	국지	-	상도동 244-225	상도동 279-53	일반	-	동작구282호 (1978.06.12)	-
변경	소로	2	(38)	10	국지	126	상도동 260-14	상도동 260-209	일반	-		-
신설	소로	2	(39)	10	국지	270	상도동 244-209	상도동 244-186	일반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역內)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0)	6	국지	95	상도동 244-90	상도동 244-140	일반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37	중로3-37	도로 변경 - B: 12~16m / L: 268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 구간 확폭
폐지	소로 1-	-	도로 폐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	-	도로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변경	소로 3-	소로 2-(38)	도로 변경 - B: 10m / L: 126m	• 합리적 도로체계 위한 도로 분리
신설	-	소로 2-(39)	도로 신설 - B: 10m / L: 270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 3-(40)	도로 신설 - B: 6m / L: 95m	•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상도동 244-96	-	증) 3,573.0	3,573.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원	공원 (신설) - 증) 3,573.0㎡	·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도화공원 기능 분담 및 부족한 공원 공급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공동주택 획지	-	증) 600.0	600.0	지상층
	어린이 놀이터		-	증) 1,400.0	1,400.0	옥외
	어린이 보육시설		-	증) 600.0	600.0	지상층
	작은도서관		-	증) 250.0	250.0	지하층
	주민운동 (공동)시설		-	증) 700.0	700.0	지상(하)층
	다함께 돌봄센터		-	증) 100.0	100.0	지상층
	계		-	-	3,650.0	-
부대복리 시설	경비실		-	증) 60.0	60.0	지하층
	관리사무소		-	증) 200.0	200.0	지상(하)층
	통신실		-	증) 40.0	40.0	지하층
	계		-	-	30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7호 다목 규정에 따라 전체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배치
※ 향후 사업승인 시 시설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50,788.45	획지1	42,762.25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206	-	-	206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건축계획)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신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50,788.45	획지1	42,762.25	상도동 24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4.69%)	기준 210% 허용 223.43% 상한 250% 이하	86m이하/ 최고 29층이하
			획지2	2,302.10	상도동 244-145 일대	종교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 수 : 1,191세대(분양 1,040세대, 임대 151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수 : 해당없음

구분(전용면적)		기 준	세대수(세대)	비고
합계		-	1,191(100.0%)	-
공동주택	60㎡이하	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	869(72.9%)	-
	60㎡~85㎡이하		322(27.1%)	-
	85㎡초과	총 건립세대수의 20%미만	-	-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구분(전용면적)	기 준	세대수(세대)	비고
합계	-	151(100.0%)	-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70(46.4%)	-
40㎡~50㎡이하	-	43(28.5%)	-
50㎡~60㎡이하	-	24(15.9%)	-
60㎡이상	-	14(9.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의거 이주대책에 대한 인가권자 협의 결과에 따라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건축계획)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심의완화사항	·기준용적률 상향 (소규모주택 20% 이상 확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8.5%(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 중 개방형 시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법 제69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성대로 변(대상지 남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성대로11가길 변(대상지 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성대로21가길 변(대상지 북측) : 도로입체결정 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상도초등학교 변(대상지 동측) : 공공보행통로 포함 6m 이상 이격								
기타 계획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폭원(6m) 1개소 설치, 건축선 6m 포함 ·공공보행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지역권 설정함							
	보차혼용통로	·주차장 출입구, 상도4동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8m) 조성 ·보차혼용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지역권 설정함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계	도로	공원	건축물 기부채납			
						건축물 대지지분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50,788.45㎡	42,762.25㎡	5,724.10㎡	2,151.1㎡	3,573.0㎡	-	-	153.1㎡	1,386.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률 : 9.78%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5,724.10㎡ - 153.1㎡ - 1,386.9㎡ = 4,184.10㎡								
기준용적률	■ 기준 : 210% -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190% - 소형주택 20% 완화사항 적용 (40~50㎡이하 분양주택 공급 10%, 50~60㎡이하 분양주택 공급 10%)								

구분	산정내용
허용용적률	▪ 허용 : 223.43% -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8.5% 적용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1.58 = 서울시 대지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대지 평균 공시지가 = 5,861,129(원/㎡) / 3,721,714(원/㎡) - 8.5%(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58(사업성 보정계수) = 13.43% - 210%(기준용적률) + 13.43%(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23.43%
상한용적률	▪ 기준 : 210.0%, 허용 : 223.43%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 = 223.43% + [210%×1.3x1.0x(4,184.1/42,762.25)] ▪ 정비계획 용적률 : 250%
α [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4,184.1㎡) ÷ (42,762.25㎡) = 0.0978
β [건축물]	▪ 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해당사항 없음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250% (법적 상한용적률 250% 이하) = 249.81% ※ 상한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였으나, 법적 상한용적률 이하로 계획용적률 적용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1,191세대 = 1,191세대 - 0세대(법적상한 증가분)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51세대 - 연면적의 10%이상 (10.01%공급) : 166,142.49㎡ x 10% = 16,614.24㎡ ∴ 16,623.49㎡(151세대) ≥16,614.24㎡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151세대 - 151세대의 30% 이상 : 151 x 30% = 45.3세대 - 1,191세대의 5% 이상 : 1,191 x 5% = 59.5세대 ∴ 151세대 계획 > 45.3세대 또는 59.5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51	12.68	100.0
전용 39㎡	70	5.88	46.36
전용 48㎡	43	3.61	28.48
전용 59㎡	24	2.02	15.89
전용 84㎡	14	1.18	9.27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 통로	공공주택 획지 내	• 공공보행통로 폭원(6m) 1개소 설치, 건축선 6m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 설정 ※ 길이 140m, 폭 6m, 면적 1,545㎡ • 사업시행인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역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역권설정등기 이행
	보차혼용 통로	공공주택 획지 내	• 주차장 출입구, 상도4동성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8m) 조성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차혼용통로에 지역권 설정 ※ 길이 70m, 폭 8m, 면적 1,148㎡ • 사업시행인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역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역권설정등기 이행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 등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유도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저해 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 목표 4·5등급	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	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노후·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만족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균표고 49.49m 평균경사 8°, 급경사지 1.0%	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6. 물순환(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13%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	
7.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8.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9.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공간 유형분석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	
10.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	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1. 온실가스	온실가스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 · 재생에너지 적용 검토	
12.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13.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	신 · 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	
14.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공사에 의한 소음 · 진동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15. 경 관	스카이라인 보전 등	○	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16.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외 공원 인접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17. 일 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등에 일조영향	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	
18.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	
19.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공사 시 영향 미미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발전을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가칭)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 현황세대수 : 800세대 • 계획세대수 : 1,191세대 • 증가세대수 : 391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일조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 내 공원 등 공공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	증) 50,788.45	50,788.45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788.45	-	50,788.4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88.45	감) 50,788.4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0,788.45	50,788.45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50,788.45	상도14구역은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역內)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7	12	국지	1,030	상도동 3-18	상도동 3-35	일반	-	(1936.12.26)	-
변경	중로	3	37	12~16	국지	1,030 (268)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	-		-
폐지	소로	1	-	10	특수	13	상도동 244-225	상도동 238-2	보행자 전용	-	동작구102호 (2011.12.22)	-
폐지	기타	-	-	4~6	-	-	-	-	-	-	-	-
폐지	기타	-	-	4	-	-	-	-	-	-	-	-
기정	소로	3	-	6	국지	-	상도동 244-225	상도동 279-53	일반	-	동작구282호 (1978.06.12)	-
변경	소로	2	(38)	10	국지	126	상도동 260-14	상도동 260-209	일반	-		-
신설	소로	2	(39)	10	국지	270	상도동 244-209	상도동 244-186	일반	-	-	-
신설	소로	3	(40)	6	국지	95	상도동 244-90	상도동 244-140	일반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37	중로3-37	도로 변경 - B: 12~16m / L: 268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 구간 확폭
폐지	소로 1-	-	도로 폐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	-	도로 폐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폐지	-	-	도로 폐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
변경	소로 3-	소로 2-(38)	도로 변경 - B: 10m / L: 126m	•합리적 도로체계 위한 도로 분리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	소로 2-(39)	도로 신설 - B: 10m / L: 270m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신설	-	소로 3-(40)	도로 신설 - B: 6m / L: 95m	•기존도로 확폭 및 연번 부여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상도동 244-96	-	증) 3,573.0	3,573.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원	공원 (신설) - 증) 3,573.0㎡	·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도화공원 기능 분담 및 부족한 공원 공급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공동주택)	42,762.25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42,762.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획지2 (종교시설)	2,302.10	동작구 상도동 244-145 일대	2,302.10	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용 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획지2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공동주택)	60% 이하	공동주택 사업부지
	획지2 (종교시설)	60% 이하	종교부지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공동주택)	210%이하	223.43%이하	250% 이하	249.81% 이하	-
	획지2 (종교시설)	200%이하	-	-	-	2종일반 용적률 적용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신설	획지1 (공동주택)	86m 이하 (29층 이하)	-
	획지2 (종교시설)	-	-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성대로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성대로11, 12가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성대로21가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상도초등학교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공공보행통로 포함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분		적용 위치	용 도	비고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연동형상가 배치구간	성대로변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가로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에 가로활성화시설을 연동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배치구간	공동주택 획지	• 주민공동시설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단지 중앙 보행데크광장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설치를 권장	-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획지	• 국사봉으로의 열린 시야를 위해 단지 중앙으로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 • 탑상형과 판상형 주동을 혼합해 주동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치, 주거동 및 통경축과 연계된 옥외 마당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경사지형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텝형 단지 계획과 영역별 특성에 맞는 타입별 주동 계획(권장)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 상도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영향을 고려해 상도초등학교와 직각배치 - 인근 저층 주거지에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해 지형이 낮은 서측은 고층 탑상형 주동, 지형이 높은 동측은 중저층 판상형 배치 - 단지 내 경사 극복과 다양한 주거 타입 공급을 위한 테라스하우스 도입

2)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입면계획	공동주택 획지	•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을 부여하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획 제시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경관	공동주택 획지	• 국사봉으로의 열린 시야를 위해 단지 중앙으로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획지	• 국사봉에서 부터 자연스러운 경관계획 및 대상지 동측에서 서측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높이계획은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북동측 주동은 상도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영향 등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 통로	공공주택 획지 내	• 공공보행통로 폭원(6m) 1개소 설치, 건축선 6m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 설정 ※ 길이 140m, 폭 6m, 면적 1,545㎡ • 사업시행인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역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역권설정등기 이행
	보차혼용 통로	공공주택 획지 내	• 주차장 출입구, 상도4동성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8m) 조성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차혼용통로에 지역권 설정 ※ 길이 70m, 폭 8m, 면적 1,148㎡ • 사업시행인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역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역권설정등기 이행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 목표 4·5등급	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	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노후·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만족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균표고 49.49m 평균경사 8°, 급경사지 1.0%	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6. 물순환(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13%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	
7.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8.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	
9.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공간 유형분석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	
10.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	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1. 온실가스	온실가스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 검토	
12.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13.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	
14.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15. 경 관	스카이라인 보전 등	○	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16.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외 공원 인접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7. 일 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등에 일조영향	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	
18.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	
19.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공사 시 영향 미미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발전을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별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1,191세대 = 1,191세대 - 0세대(법적상한 증가분)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51세대 - 연면적의 10%이상 (10.01%공급) : 166,142.49㎡ x 10% = 16,614.24㎡ ∴ 16,623.49㎡(151세대) ≥16,614.24㎡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151세대 - 151세대의 30% 이상 : 151 x 30% = 45.3세대 - 1,191세대의 5% 이상 : 1,191 x 5% = 59.5세대 ∴ 151세대 계획 〉 45.3세대 또는 59.5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51	12.68	100.0
전용 39㎡	70	5.88	46.36
전용 48㎡	43	3.61	28.48
전용 59㎡	24	2.02	15.89
전용 84㎡	14	1.18	9.27

Ⅲ. 2024년 제14차 ('24.12.24.)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가결 : 수정가결

연 번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1	·용적률계획 : 기준 210%, 허용 223.43%, 상한 2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7.5%), 열린단지 조성(1%)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23.43%, 상한용적률 250% 적용 ·공공보행통로(7.5%), 열린단지 조성(1%)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	-
2	·보차혼용통로 계획은 지역권 설정을 통해 담보 방안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차혼용통로에 지역권 설정 ·사업시행인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역권 설정 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역권설정등기 이행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980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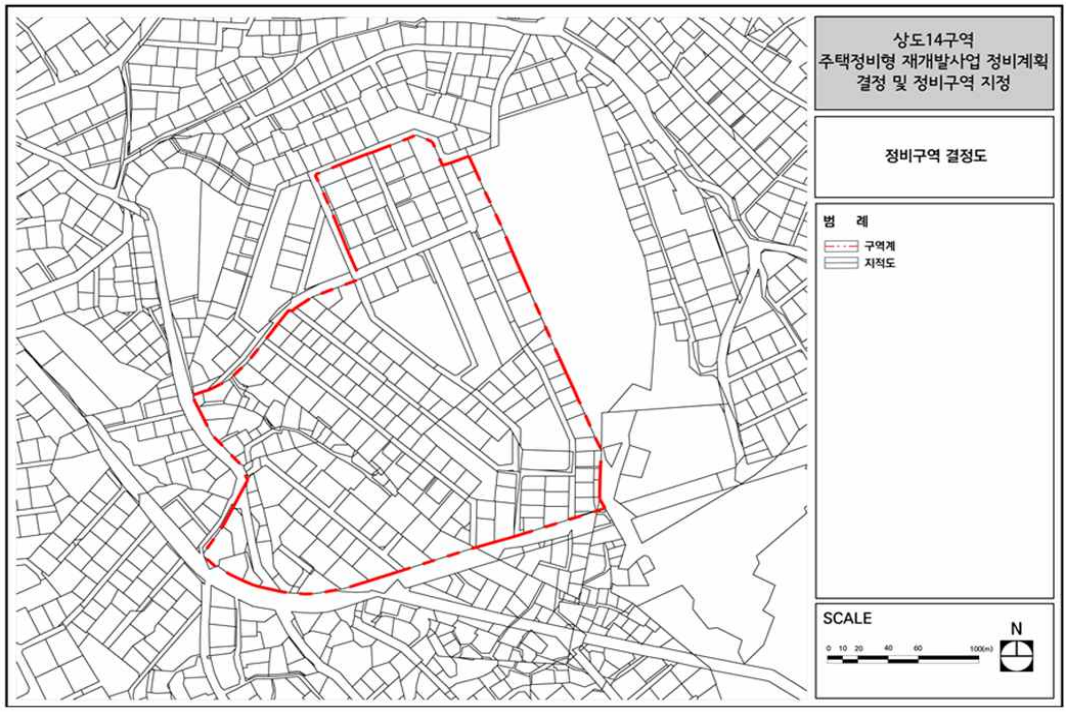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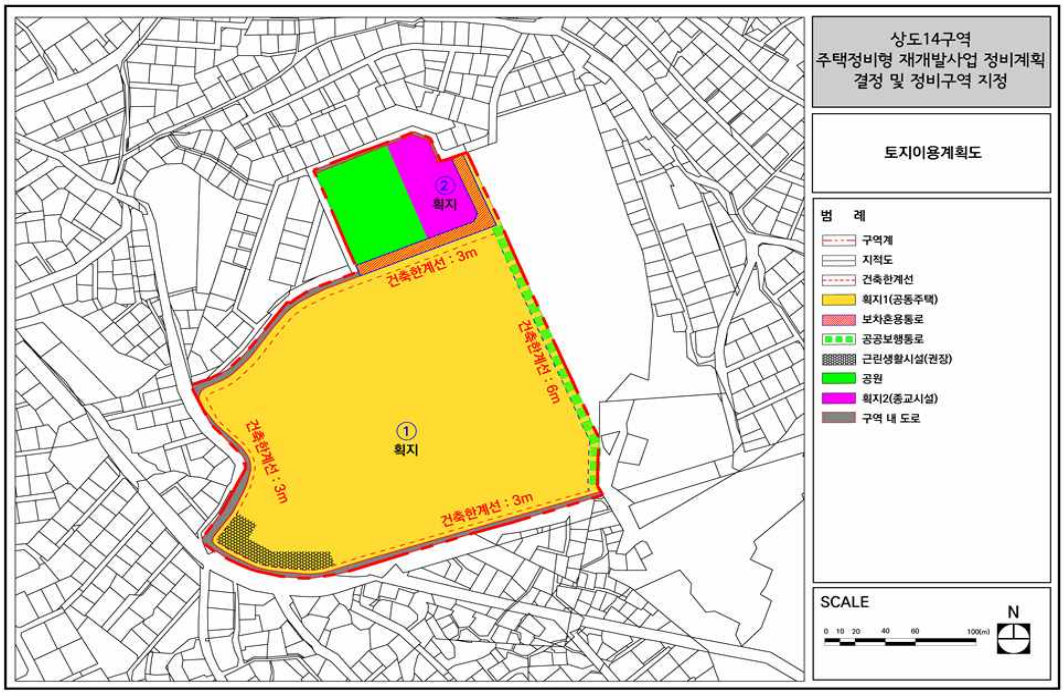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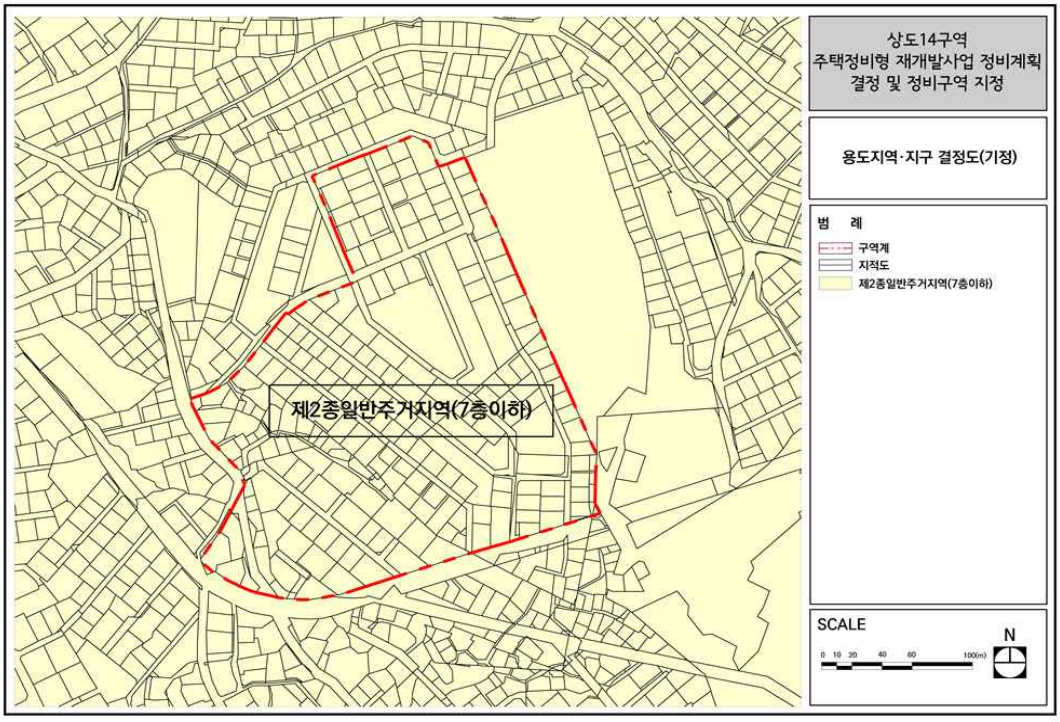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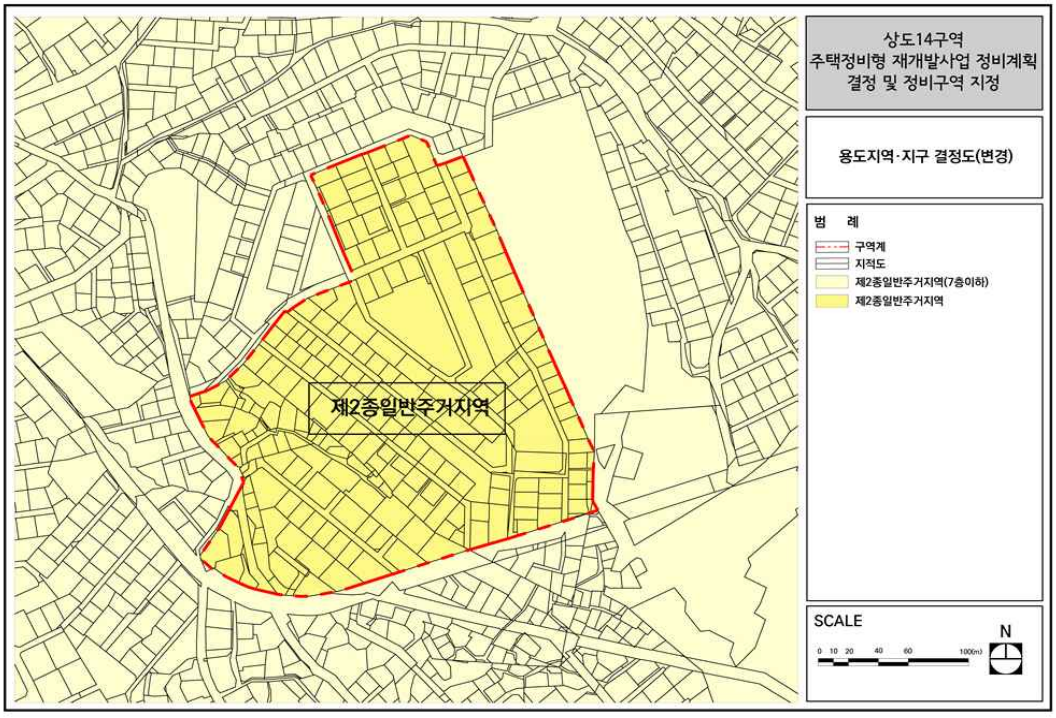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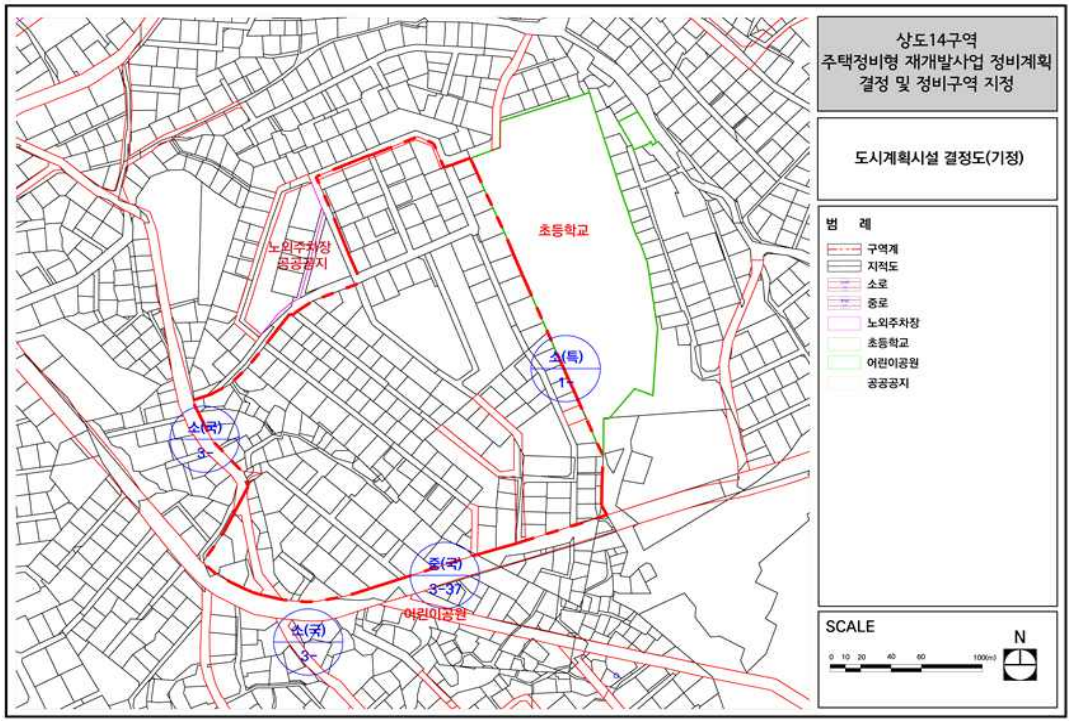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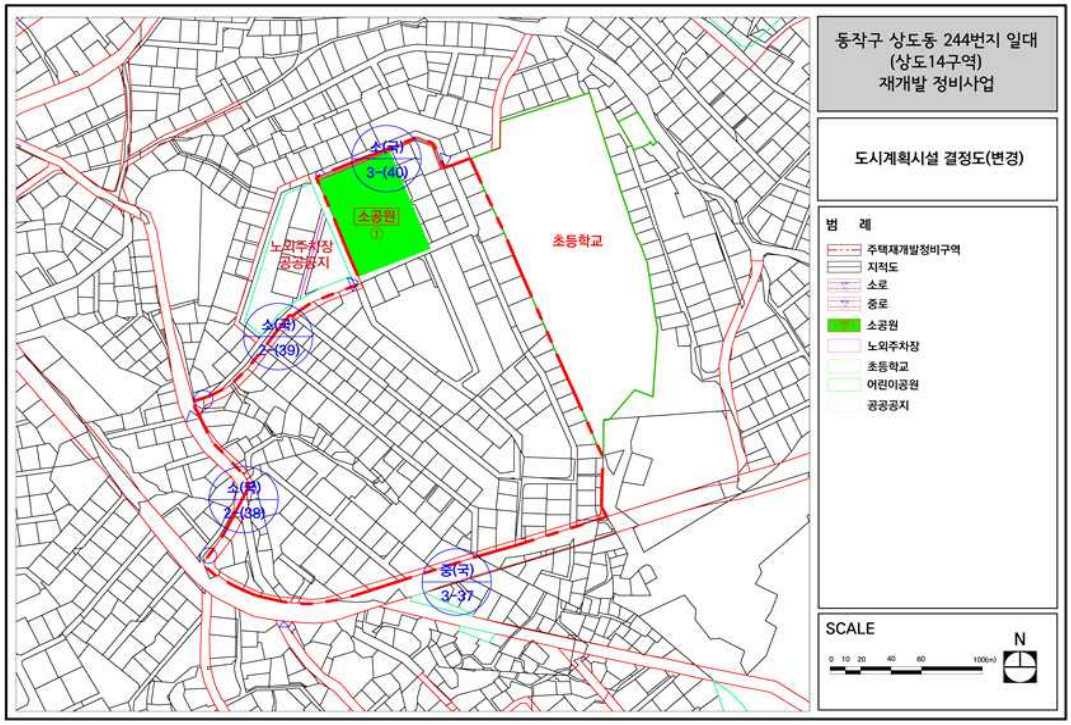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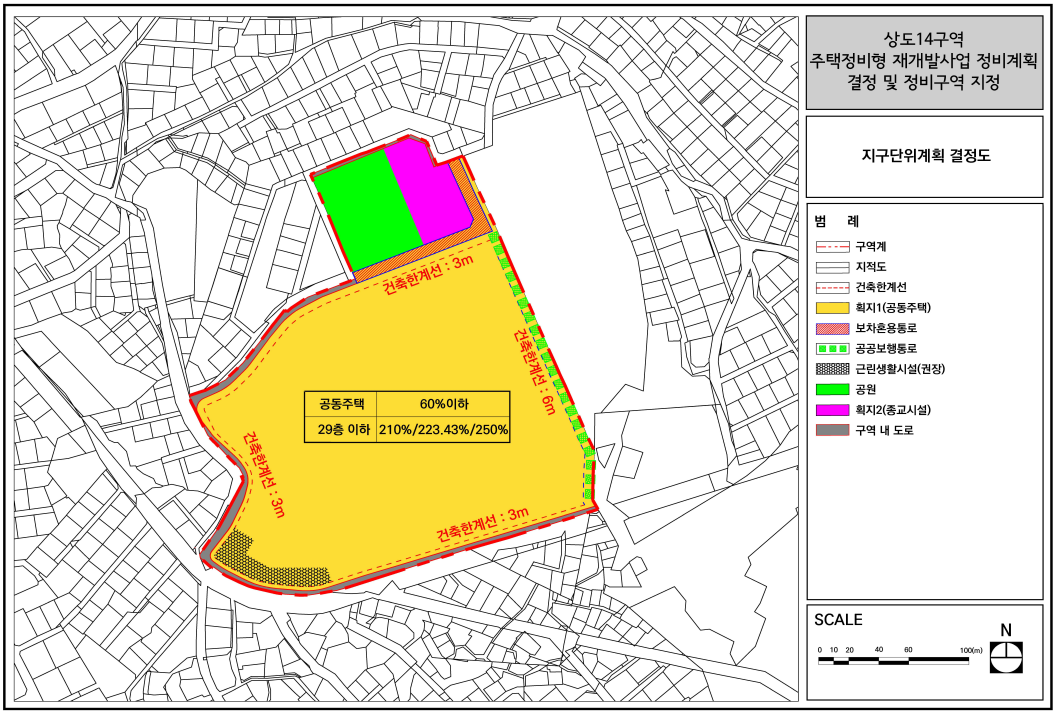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8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28호(2021.7.22.)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제2022-290호(2022.6.30.) 및 제2025-68호로 공급촉진지구 승인(변경)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기정) 684인 , 변경) 680인
2) 주택건설계획 : 기정) 293세대 , 변경) 299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	22-A TYPE	14	4.8	14	2.0	청년안심주택 건설·공급
		23 TYPE	12	4.1	12	1.8	
		소 계	26	8.9	26	3.8	
	SH 선매입	22-B TYPE	14	4.8	14	2.0	
		23 TYPE	72	24.6	72	10.5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26 TYPE	19	6.5	19	2.8	
	소 계	105	35.8	105	15.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6 TYPE	19	6.5	51	7.5	
	47 TYPE	19	6.5	51	7.5	
	48 TYPE	1	0.3	3	0.4	
	49-A TYPE	6	2.0	16	2.3	
	49-B TYPE	6	2.0	16	2.3	
	49-C TYPE	5	1.7	14	2.0	
	49-D TYPE	5	1.7	14	2.0	
	51 TYPE	1	0.3	3	0.4	
	59-A TYPE	20	6.8	53	7.7	
	59-B TYPE	40	13.7	226	33.0	
	59-C TYPE	20	6.8	53	7.7	
	59-D TYPE	20	6.8	53	7.7	
	소 계	162	55.3	553	80.8	
합 계		293	100.0	684	100.0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	22-A TYPE	14	4.7	14	2.1	청년 안심주택 건설 · 공급
		23-A TYPE	12	4.0	12	1.8	
		소 계	26	8.7	26	3.8	
	SH 선매입	22-A TYPE	2	0.7	2	0.3	
		22-B TYPE	15	5.0	15	2.2	
		23-A TYPE	36	12.0	36	5.3	
		23-B TYPE	45	15.1	45	6.6	
		26 TYPE	19	6.4	19	2.8	
		소 계	117	39.1	117	17.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6 TYPE	19	6.4	51	7.5	
		48-A TYPE	4	1.3	11	1.6	
		48-B TYPE	4	1.3	11	1.6	
		48-C TYPE	1	0.3	3	0.4	
		48-D TYPE	19	6.4	51	7.5	
		49-A TYPE	4	1.3	11	1.6	
		49-B TYPE	4	1.3	11	1.6	
		51 TYPE	1	0.3	3	0.4	
		59-A TYPE	20	6.7	53	7.8	
		59-B TYPE	40	13.4	226	33.2	
		59-C TYPE	20	6.7	53	7.8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59-D TYPE	20	6.7	53	7.8	
	소 계	156	52.2	537	79.0	
합 계		299	100.0	680	100.0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공시설(변경)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위치 / 연면적)	비 고
기정	공공기여시설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위 치 : 지상2층 ~ 지상3층 ·연면적 : 4,343.65㎡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변경	-	-	·위 치 : 지상2층 ~ 지상3층 ·연면적 : 4,336.46㎡,감)7.19	-

※ 공공시설(관리청:노원구)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변경)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4. 방재계획 (변경없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변경)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위치 / 연면적)	비 고
기정	공공기여시설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위 치 : 지상2층 ~ 지상3층 ·연면적 : 4,343.65㎡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변경	-	-	·위 치 : 지상2층 ~ 지상3층 ·연면적 : 4,336.46㎡,감)7.19	-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3호(2021.07.2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22-76호(2022.02.24.) 및 제2025-69호(2025.02.06.)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엘앤피개발	박 경 훈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 (현암동)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위탁자] 주식회사 엘앤피개발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 (현암동)	100%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5. 사업개요(변경)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나. 대지면적 : 2,892.3㎡
 다. 건폐율 : 59.99%

라. 용적률(변경)

구분	용적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비고
기정	791.50%	22,891.61㎡	-
변경	791.21%, 감)0.29	22,884.26㎡,감)8.35	-

마. 용도(변경)

구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임대	민간임대	합계		
기정	131세대	162세대	293세대	-	-
변경	143세대,증)12	156세대,감)6	299세대,증)6	-	-

바. 규모(변경)

구분	1개동,지하 4층/지상 23층	연면적	비고
기정	-	31,041.34㎡	-
변경	-	30,998.42㎡,감)42.92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책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84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결정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04.) 심의(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6호(2025.01.2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	증) 17,228.3	17,228.3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7,228.3	17,228.3	100.0	-
획 지	-	증) 17,228.3	17,228.3	100.0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업무시설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text{비례율} = \frac{\text{[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A) - 총 사업비((B))}}{\text{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C)}} \times 100\%$$

• 추정비례율 : 105.06%

(단위 : 천원)

종전자산(C)	총 수입(A)	총 사업비(B)	비례율
559,846,000	1,135,433,200	547,281,547	105.06%

총 사업비 (B)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금액	산출 근거
건축물 철거비	공사비에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의거 기존 건축물 철거는 공사계약에 포함
신축공사비	395,289,557	• 최근 인근 재건축단지 건축시설 공사비 사례 참고, 평당 900만원 적용
기타사업비용	151,991,990	• 각종 용역비 포함
합 계	547,281,547	• 총 사업비 평당 13,013,000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C)

• 공동주택

(단위 : 천원)

동 구분	총 세대수	현금 청산 세대수	세대당 추정 종전 자산가액	총 종전 자산가액
A	88	5	1,450,000	127,600,000
B	88	4	1,570,000	138,160,000
C	156	8	1,320,000	205,920,000
D	44	2	1,500,000	66,000,000
합계				537,680,000

• 근린생활시설

(단위 : 천원)

층 구분	점포수	추정액 합계	호별 평균
-1	9	3,005,000	334,000
1	14	15,436,000	1,103,000
2	15	7,986,000	532,000
3	6	7,821,000	1,304,000
4	7	7,683,000	1,098,000
5	6	7,325,000	1,221,000
합계		49,256,000	

※ 본건 실거래가, KB 부동산 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04.17. 한국 부동산원 시세 하한가 적용

종후 자산 추산액 (총수입) (A)

• 공동주택

(단위 : ㎡, 천원)

타입	주택유형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일반 분양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3.3㎡당 평균분양가	세대당 평균분양가	세대수	3.3㎡당 평균분양가	세대당 평균분양가
59㎡ (구25평형)	59.95	82.73	-	-	-	100	70,993	1,776,630
84㎡ (구35평형)	84.98	114.72	173	54,090	1,877,000	30	67,613	2,346,370
104㎡ (구42평형)	104.5	137.94	187	48,680	2,031,300	-	-	-
합계			360	51,000	704,574,100	130	70,000	248,054,100

• 근린생활시설

(단위 : ㎡, 천원)

투입종전자산	예상사업비	총원가	층구분	연면적	상가분양수입	분양단가(원/3.3㎡)
46,902,000	54,361,200	101,263,200	1	2,240	61,087,132	78,100
			2	2,240	33,597,923	42,950
			3	2,240	27,489,210	35,140
			4	2,240	27,489,210	35,140
			지하1	3,050	33,141,525	31,240
합계				12,010	182,805,000	-

추정 분담금

(단위 : 천원)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예상 권리가액		예상 분양가격		예상 분담금 (원)		비고 (종후 평형)
			예상 비례율	예상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예상 분담금	구분	
A동	25형	1,450,000	105.06%	1,523,370	59	1,579,200	55,830	추가분담	공급 25평형
					84	1,877,000	353,630	추가분담	공급 35평형
					104	2,031,300	507,930	추가분담	공급 42평형
B동	34형	1,570,000	105.06%	1,649,442	59	1,579,200	-70,242	환급	공급 25평형
					84	1,877,000	227,558	추가분담	공급 35평형
					104	2,031,300	381,858	추가분담	공급 42평형
C동	19형	1,320,000	105.06%	1,386,792	59	1,579,200	192,408	추가분담	공급 25평형
					84	1,877,000	490,208	추가분담	공급 35평형
					104	2,031,300	644,508	추가분담	공급 42평형
D동	28형	1,500,000	105.06%	15,75,900	59	1,579,200	-3,300	환급	공급 25평형
					84	1,877,000	301,100	추가분담	공급 35평형
					104	2,031,300	455,400	추가분담	공급 42평형

(단위 : 천원)

기타 (공사비,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민감도 분석			일반 분양가				
				-10%	-5%	-	5%	10%
				59,850천원 /3.3㎡	66,500천원 /3.3㎡	70,000천원 /3.3㎡	73,500천원 /3.3㎡	77,000천원 /3.3㎡
	공사비	-10%	8,100천원/3.3㎡	85.94%	102.12%	110.62%	119.13%	127.63%
		-5%	8,550천원/3.3㎡	83.06%	99.23%	107.74%	116.24%	124.75%
		-	9,000천원/3.3㎡	80.38%	96.55%	105.06%	113.56%	122.07%
		5%	9,450천원/3.3㎡	77.50%	93.67%	102.17%	110.68%	119.19%
		10%	9,900천원/3.3㎡	74.82%	90.99%	99.49%	108.00%	116.51%

※ 향후 설계, 총 사업비, 시장 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분양가격, 종전가격,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액이 달라질 수 있음.
상가는 향후 면적 확정시 달라질 수 있음.

- 이 하 여 백 -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228.3	-	17,228.3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895.6	감) 9,895.6	-	0.0	-
일반상업지역	7,332.7	증) 9,895.6	17,228.3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895.6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의도 도심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3)	8	집산 도로	80	여의도동 54-9	여의도동 5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변경	소로	2	(3)	8	집산 도로	44	여의도동 54-9	여의도동 54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2	(6)	8	집산 도로	126	여의도동 54-1	여의도동 5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104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8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변경	소로	2	(7)	8	집산 도로	36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10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	소로2-3	• 연장 변경 - L = 80m → 44m	• 노후 공동주택지의 통합적 공간재편계획 수립을 통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을 폐지하되, 도로면적 이상의 추가 공공기여 제공을 통한 획지 단위의 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소로2-6	-	• 도로 폐지	
소로2-7	소로2-7	• 연장 변경 - L = 104m → 36m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법정면적	비고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400.0	330.0㎡ 이상	-
	어린이집	490.0	330.0㎡ 이상	개방
	실내어린이놀이터	260.0	-	
	작은도서관	200.0	158.0㎡ 이상	-
	주민운동시설	150.0	-	
	어린이놀이터	960.0	788.0㎡ 이상	
	기타부대시설	580.0	-	
	소 계	3,040.0	-	
관리사무소		80.0	36.9㎡ 이상	-

나. 주민공동시설 총량기준

구 분	총 면적 기준	산 식	총 확보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당 2.5㎡ 기준	578세대 × 2.5㎡ = 1,445.0㎡	3,040.0㎡ (서울시 기준 대비 약 168.3%)
서울시 주택조례	기준면적 대비 25% 강화	1,445.0㎡ × 1.25 = 1,806.3㎡	

다. 비주거시설 개요

구 분	용 도	위 치	면 적 (㎡)	총 확보 면적
근린생활시설	상가	지상	8,700.0	비주거비율 10.04% = 13,850.0㎡ / 137,998.8㎡ (연면적비율)
	상가	지하 1층	2,950.0	
	지하주차장, 기계실		2,200.0	
합계			13,850.0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여의도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228.3	획지1	17,22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5	-	-	5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계획
(건축)</th><th>상한</th></tr>
<tr><td>신규</td><td>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17,228.3</td><td>획지1</td><td>17,228.3</td><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td><td>60이하</td><td>504.50%
이하</td><td>506.67%
이하</td><td>57층이하
(200m이하)</td><td>일반
상업
지역</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2">• 주택공급계획 : 578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rowspan="2">건립규모</th><th colspan="2">세대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세대</th><th>비율</th></tr>
<tr><td>합 계</td><td>578</td><td>100.0%</td><td rowspan="4">-</td></tr>
<tr><td>60㎡이하</td><td>172</td><td>29.7%</td></tr>
<tr><td>60㎡초과~85㎡이하</td><td>219</td><td>37.9%</td></tr>
<tr><td>85㎡초과</td><td>187</td><td>32.4%</td></tr>
</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67.7%)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5.3%)</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2">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필수 이행 항목
(20% 이상)</td><td>일반지역 기준용적률(210%)보다 20% 더 높은
기준용적률(230%)을 적용하는 대신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행위 의무화</td></tr>
<tr><td>계획유도 인센티브
(120% 이하)</td><td>친환경요소, 무장애도시, 공공공간확보, 주거안정,
도심지원 항목 적용 (78.7% 적용)</td></tr>
<tr><td>일반상업지역</td><td>인센티브항목
(20% 이하)</td><td>층간소음해소, 공개공지, 돌봄시설, 방재안전(20% 적용)</td></tr>
</table></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건축한계선 지정
- 4m : 여의대방로(11층 이상 벽면한계선 3m 추가후퇴)
- 3m : 여의동로, 여의대방로70길, 여의대방로68길</td></tr>
<tr><td>공개공지</td><td colspan="12">• 여의대방로 및 여의동로변으로 부지면적의 10% 이상 조성(13.5%)</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12">• 폭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여의대방로68길 ~ 여의대방로70길 연결)</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합계</td><td rowspan="2">대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신설 공공시설 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유상매입)</td></tr>
<tr><td>계(A+B)</td><td>토지지분면적
(A)</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B)</td></tr>
<tr><td colspan="2">17,228.3㎡</td><td>17,228.3㎡</td><td>5,001.0㎡</td><td>3,472.6㎡</td><td>1,528.4㎡</td><td>-</td><td>1,781.3㎡</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순부담 = 5,001.0㎡(29.0%)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5,001.0㎡ - 0㎡ - 0㎡ = 5,001.0㎡
※ 대지 국공유지(시유지)는 유상매입</td></tr>
<tr><td>A</td><td>공공주택
토지지분면적
(ⓐ공공임대업무
+
ⓑ공공주택)</td><td colspan="7">• 토지지분 = ⓐ + ⓑ = 3,472.6㎡
- ⓐ : [대지면적 X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X (공공임대업무전용면적 / 비주거전용면적)]
1,898.6 = [17,228.3㎡ × (30,350.0㎡ / 137,998.9㎡) × (11,700.0㎡ / 23,350.0㎡)]
- ⓑ : [대지면적 X (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X (공공주택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1,574.0 = [17,228.3㎡ × (107,648.6㎡ / 137,998.9㎡) × (5,676.1㎡ / 48,463.5㎡)]
<table><tr><td>공공임대업무
공급연면적</td><td>• 오피스 지상 + 지하 면적</td></tr></table></td></tr>
<tr><td>B</td><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공공임대업무
+
ⓑ공공주택)</td><td colspan="7">• 환산부지 = ⓐ + ⓑ = 1,528.4㎡
- ⓐ : 공공임대업무 : [공공임대업무전체연면적 X 공공임대업무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X 2)]
972.2㎡ = (16,500㎡ × 2,163,636원) / (18,360,000원 × 2)
- ⓑ : 공공주택 : [공공주택계획연면적 X 공공주택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X 2)]
556.2㎡ = (지상) 433.6㎡[(7,932.3㎡ × 2,007,273원) / (18,360,000원 × 2)]
+ (지하) 122.6㎡ [(4,837.6㎡ × 930,909원) / (18,360,000원 × 2)]
<table><tr><td>공공임대업무
건축비</td><td>•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 2,38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tr><td>공공주택 건축비</td><td>• 지상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08,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 지하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24,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tr><td>개별공시지가</td><td>• 대상지 내 상업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2022.01. 국토부)</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산정내용</th></tr>
<tr><th>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h><th>일반상업지역</th><th>가중평균</th></tr>
<tr><td>기준
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 230%</td><td>• 기준용적률 = 400%</td><td>302.36%</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허용용적률 = 308.7%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30% + 78.7%
<table><tr><th colspan="2">항목</th><th>인센티브</th></tr><tr><td colspan="2">합계</td><td>78.7%</td></tr><tr><td rowspan="4">의무이행</td><td>층간소음해소</td><td>5.0%</td></tr><tr><td>공개공지</td><td>5.0%</td></tr><tr><td>돌봄시설</td><td>5.0%</td></tr><tr><td>방재안전</td><td>5.0%</td></tr><tr><td rowspan="6">계획유도</td><td>소계</td><td>78.7%</td></tr><tr><td>친환경</td><td>52.2%</td></tr><tr><td>무장애도시</td><td>6%</td></tr><tr><td>공공공간</td><td>0.5%</td></tr><tr><td>주거안정</td><td>10%</td></tr><tr><td>도심지원</td><td>10%</td></tr></table></td><td>• 허용용적률 = 420.0%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400% + 20%
<table><tr><th colspan="2">항목</th><th>인센티브</th></tr><tr><td colspan="2">합계</td><td>78.7%</td></tr><tr><td rowspan="4">의무이행</td><td>층간소음해소</td><td>5.0%</td></tr><tr><td>공개공지</td><td>5.0%</td></tr><tr><td>돌봄시설</td><td>5.0%</td></tr><tr><td>방재안전</td><td>5.0%</td></tr></table></td><td>356.07%</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상한용적률 = 425.37% 이하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
= 308.7% × [1 + (1.3 × 1 ×
(0.237408) + 0.7 × (0.121572)]
= 430.24%이하

※ α토지 = 1,898.6 / (9,895.6 - 1,898.6)
= 0.237408
※ β건축물 = 972.2/(9,895.6-1,898.6)
= 0.121572</td><td>• 상한용적률 = 609.18% 이하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β건축물)
= 420% × [1 + (1.3 × 1 × (0.273329) + 1.0
× (0.096593)]
= 609.81%이하

※ α토지 = 1,574.0/(7,332.7-1,574.0)
= 0.273329
※ β건축물 = 556.2/(7,332.7-1,574.0)
= 0.096593</td><td>506.67%

정비계획
(건축)
용적률
504.5%</td></tr>
</table>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선방안
진출입 동선	A	• 여의대방로68길(여의대방로~사업지 차량출입구) 교통운영계획 수립 – 노상주차 14면 삭제 후 중앙선 설치 운영
	–	• 단지내 보행통행로 출입지점에 차량진입차단시설 설치로 일반차량 진입 억제
	B	• 사업지 차량출입구 우회전 곡선반경 R=6m 확보
		• 지하주차장 경사로 전면 평탄부 확보 : L=10m
보행	C	• 사업지 여의동로 접속수간 보도 확장 : B=1.5~2.0m → 6.5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2개소
주차 시설	–	• 법정주차대수 : 835면 – 건축계획 변동에 따른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 계획주차대수 : 1,123면(법정주차의 134.5% 확보)
	–	• 동별 출입구 인접지점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 (신설)3개소, (정비)1개소
	–	• 시거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 양면식 1개소
	–	• 사업지 차량출입구 전면 차선규제봉 설치로 불법주차 억제
	–	• 사업지 차량출입구에 교차로안내 노면표시 도색 :1개소
	–	•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량경보등 설치 : 1개소
	–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1개소
	–	• 교통안전시설물은 유관기관과 협의후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주변 공원 및 녹지와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지레벨 계획	-
	생활환경	• 보도, 주차장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재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및 하수도시설 요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성 체계구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측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연필향나무, 벚나무 등 분포 • 식재된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식이 어려운 수목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목을 이식 후 새로 조성되는 공원, 녹지 등에 재식하는 방안 검토	

1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생태 면적률	30%	기존토양포장상태 50~70% 이상 생태면적율 32.89% 계획	자연인공기반녹지, 전면 투수포장(자연인공적용)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생태적 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절성토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30%미만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 유형평가 3등급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Sanalyst를 이용하여 일조영향 예측	주변 주거시설 연속2시간 만족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바람흐름의 단절을 최소화 되도록 단지 배치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소비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토록 유도
경관	조망권 확보	동측 여의도한강공원과 이어지는 조망권 필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으로 정합된 도시경관 창출
휴식 및 여가공간	휴가·여가공간 최대확보	0.5km 이내 자매공원 위치함	-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도로가 협소하며 차량으로 인한 위험한 보행환경 형성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해당사항 없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해당사항 없음	-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기준	공사시 60m이내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소음저감대책 고정식(H=4~5m), 이동식(H=3m)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행

11.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정)	현황 : 376세대 계획 : 578세대 증) 202세대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일대	1,120,586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20,586.0	-	1,120,586.0	100.0	-
주거 지역	소계	106,232.0	감) 9,895.6	96,336.4	8.6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58.0	-	16,458.0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9.0	-	1,159.0	0.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503.0	-	50,503.0	4.5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12.0	감) 9,895.6	28,216.4	2.5	-
상업 지역	소계	1,014,354.0	증) 9,895.6	1,024,249.6	91.4	-
	일반상업지역	1,014,354.0	증) 9,895.6	1,024,249.6	91.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895.6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41	14,447	351,942.3	19	9,435	258,710.9	10	1,935	21,597.8	12	3,077	71,633.6
	광로	3	3,707	160,351	3	3,707	160,351	-	-	-	-	-	-
	대로	4	2,295	86,993.9	2	825	36,952.5	-	-	-	2	1,470	50,041.4
	중로	24	6,610	86,944.1	11	4,208	53,356.2	3	795	11,995.7	10	1,607	21,592.2
	소로	10	1,835	17,653.3	3	695	8,051.2	7	1,140	9,602.1	-	-	-
변경	합계	40	14,217	350,095.1	19	9,435	258,710.9	10	1,705	19,750.6	12	3,077	71,633.6
	광로	3	3,707	160,351	3	3,707	160,351	-	-	-	-	-	-
	대로	4	2,295	86,993.9	2	825	36,952.5	-	-	-	2	1,470	50,041.4
	중로	24	6,610	86,944.1	11	4,208	53,356.2	3	795	11,995.7	10	1,607	21,592.2
	소로	9	1,505	15,806.1	3	695	8,051.2	6	910	7,754.9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80	여의도동 54-9	여의도동 54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변경	소로	2	(3)	8	집산도로	44	여의도동 54-9	국제금융로 108-6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2	(6)	8	집산도로	126	여의도동 54-1	여의도동 54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기정	소로	2	(7)	8	집산도로	104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8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
변경	소로	2	(7)	8	집산도로	36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10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	소로 2-3	• 연장 변경 L = 80m → 44m	• 노후 공동주택지의 통합적 공간재편계획 수립을 통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을 폐지하되, 도로면적 이상의 추가 공공기여 제공을 통한 획지 단위의 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소로 2-6	-	• 도로 폐지	
소로 2-7	소로 2-7	• 연장변경 L = 104m → 36m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특별계획구역1(한국거래소)	여의도동 33	27,081	대규모 부지
2	특별계획구역2(KBS별관)	여의도동46, 46-5, 46-6	27,273	대규모 부지
3	특별계획구역3-1, 3-2 (학교시설 해제부지)	여의도동 61-1, 61-2	16,528	2개 구역으로 분할 가능
4	특별계획구역4(한국전력부지)	여의도동 21	9,91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5	특별계획구역5(여의도종합상가)	여의도동 35-5	3,739	도시계획시설(시장)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6	특별계획구역6(홍우빌딩)	여의도동 43-3	4,020	도시계획시설(시장)
7	특별계획구역7(서울아파트)	여의도동 21-1	16,929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8	특별계획구역8(공작아파트)	여의도동 21-2	16,929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9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	여의도동 32	15,537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10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	여의도동 54 일대	17,228.3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여의도동 54번지 일대	-
면적		• 17,228.3㎡	-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 검토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가능
기반시설		-	-
공공기여		•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면적 이상 추가 공공기여 제공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공공기여 10% 이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공공기여 25% 이상 적용	※ 구체적인 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에 따름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저층부 1~2층)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불허용도	• 당해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4">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td><td></td></tr>
<tr><td rowspan="7">규모</td><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4">•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 시 건폐율 60% 이하 적용</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준용적률</td><td rowspan="2">기존
일반상업지역</td><td colspan="3">제3종일반주거지역</td><td rowspan="2">-</td></tr>
<tr><td>유지 시</td><td>준주거지역
상향 시</td><td>일반상업지역
변경 시</td></tr>
<tr><td colspan="2">허용용적률</td><td>400%이하</td><td>210%이하</td><td>230%이하</td><td>230%이하</td><td rowspan="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름</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420%이하</td><td>230%이하</td><td>280%이하</td><td>350%이하</td></tr>
<tr><td colspan="2">건축물높이</td><td>800%이하</td><td>250%이하</td><td>400%이하</td><td>800%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물높이</td><td>200m이하</td><td>100m이하</td><td>150m이하</td><td>200m이하</td><td rowspan="2">※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허용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5조(건축물의 높이) [별표1] 기준을 준용</td></tr>
<tr><td colspan="4">• 주변과 조화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높이 이상 허용 결정</td></tr>
<tr><td rowspan="5">기타 사항</td><td rowspan="2">배치</td><td>건축한계선</td><td colspan="4">• 여의대방로변 : 4m(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동로(샛강변) : 3m
• 그 외 도로변(여의대방로70길, 여의대방로68길 등) : 3m</td><td>※ 건축한계선의 적용기준은 민간 부문 시행지침 제18조(건축한계선), 제22조(전면공지)에 따름</td></tr>
<tr><td rowspan="3">대지 내 공지 및 통로</td><td>공개공지
(공개공간)</td><td colspan="4">• 여의대방로변으로 공개공지(또는 공원) 설치
(부지면적의 3% 이상 권장)</td><td>※ 공개공지(공개공간)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공개공지), 제24조(쌈지형공지), 제29조 (실내형 공개공간)에 따름</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4">• 여의대방로68길 ~ 여의대방로70길을 연결하는 폭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td><td>※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7조 (공공보행통로)에 따름</td></tr>
<tr><td>지하연결통로</td><td colspan="4">-</td><td>-</td></tr>
<tr><td>교통 처리계획</td><td>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td><td colspan="4">• 여의대방로변 및 여의동로(샛강)변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td><td>※ 주차출입구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0조(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31조(주차출입구)에 따름</td></tr>
</table>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계획 등 세부검토 필요

Ⅲ.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진주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17,228.3	100.0%	-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228.3	-	17,228.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9,895.6	감) 9,895.6	-	0.0	
일반상업지역	7,332.7	증) 9,895.6	17,228.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895.6	•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3)	8	집산 도로	80	여의도동 54-9	여의도동 5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변경	소로	2	(3)	8	집산 도로	44	여의도동 54-9	국제금융로 108-6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6)	8	집산 도로	126	여의도동 54-1	여의도동 5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104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 (2024.11.14.)	
변경	소로	2	(7)	8	집산 도로	36	여의도동 54-6	여의도동 54-10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	소로 2-3	• 연장 변경 L = 80m → 44m	• 노후 공동주택지의 통합적 공간재편계획 수립을 통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을 폐지하되, 도로면적 이상의 추가 공공기여 제공을 통한 획지 단위의 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소로 2-6	-	• 도로 폐지	
소로 2-7	소로 2-7	• 연장변경 L = 104m → 36m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조서

구분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용도	허용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권장 용도 (저층부 1~2층)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불허 용도	• 당해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폐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건폐율 60% 이하 적용

<table>
<tr><th>구분</th><th>계획 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r>
<tr><td></td><td>시 건폐율 60% 이하 적용</td><td></td></tr>
<tr><td>용적률</td><td>
<table>
<tr><th>기존 일반상업지역</th><th>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h></tr>
<tr><td>400%이하</td><td>230%이하</td></tr>
<tr><td>420%이하</td><td>350%이하</td></tr>
<tr><td>800%이하</td><td>800%이하</td></tr>
</table>
</td><td>•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름
• (가중평균시) 기준 : 302.36% 이하 /
허용 : 356.07% 이하 / 상한 : 506.67% 이하
- 정비계획 용적률 : 503.5% 이하</td></tr>
<tr><td>높이</td><td>
<table>
<tr><th>기존 일반상업지역</th><th>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h></tr>
<tr><td>200m이하</td><td>200m이하</td></tr>
</table>
• 주변과 조화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높이 이상 허용 결정
</td><td>좌동</td></tr>
</table>

나. 용적률 인센티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합계</td><td rowspan="2">대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신설 공공시설 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유상매입)</td></tr>
<tr><td>계(A+B)</td><td>토지지분면적
(A)</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B)</td></tr>
<tr><td colspan="2"></td><td>17,228.3㎡</td><td>17,228.3㎡</td><td>5,001.0㎡</td><td>3,472.6㎡</td><td>1,528.4㎡</td><td>-</td><td>1,781.3㎡</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순부담 = 5,001.0㎡(29.0%)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5,001.0㎡ - 0㎡ - 0㎡ = 5,001.0㎡
※ 대지 국공유지(시유지)는 유상매입</td></tr>
<tr><td>A</td><td>공공주택
토지지분면적
(ⓐ공공임대업무
+
ⓑ공공주택)</td><td colspan="7">• 토지지분 = ⓐ + ⓑ = 3,472.6㎡
- ⓐ : [대지면적 X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X (공공임대업무전용면적 / 비주거전용면적)]
1,898.6 = [17,228.3㎡ × (30,350.0㎡ / 137,998.9㎡) × (11,700.0㎡ / 23,350.0㎡)]
- ⓑ : [대지면적 X (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X (공공주택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1,574.0 = [17,228.3㎡ × (107,648.6㎡ / 137,998.9㎡) × (5,676.1㎡ / 48,463.5㎡)]
<table>
<tr><td>공공임대업무
공급연면적</td><td>• 오피스 지상 + 지하 면적</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B</td><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공공임대업무
+
ⓑ공공주택)</td><td>
• 환산부지 = ⓐ + ⓑ = 1,528.4㎡
– ⓐ : 공공임대업무 : [공공임대업무전체연면적 X 공공임대업무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X 2)]
972.2㎡ = (16,500㎡ × 2,163,636원) / (18,360,000원 × 2)
– ⓑ : 공공주택 : [공공주택계획연면적 X 공공주택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X 2)]
556.2㎡ = (지상) 433.6㎡[(7,932.3㎡ × 2,007,273원) / (18,360,000원 × 2)]
+ (지하) 122.6㎡ [(4,837.6㎡ × 930,909원) / (18,360,000원 × 2)]
<table>
<tr><td>공공임대업무
건축비</td><td>•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 2,38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공공주택 건축비</td><td>• 지상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08,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 지하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24,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개별공시지가</td><td>• 대상지 내 상업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2022.01. 국토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산정내용</th></tr>
<tr><th>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h><th>일반상업지역</th><th>가중평균</th></tr>
<tr><td>기준
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 230%</td><td>• 기준용적률 = 400%</td><td>302.36%</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허용용적률 = 308.7%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30% + 78.7%
<table><tr><th colspan="2">항목</th><th>인센티브</th></tr><tr><td colspan="2">합계</td><td>78.7%</td></tr><tr><td rowspan="4">의무이행</td><td>층간소음해소</td><td>5.0%</td></tr><tr><td>공개공지</td><td>5.0%</td></tr><tr><td>돌봄시설</td><td>5.0%</td></tr><tr><td>방재안전</td><td>5.0%</td></tr><tr><td rowspan="6">계획유도</td><td>소계</td><td>78.7%</td></tr><tr><td>친환경</td><td>52.2%</td></tr><tr><td>무장애도시</td><td>6%</td></tr><tr><td>공공공간</td><td>0.5%</td></tr><tr><td>주거안정</td><td>10%</td></tr><tr><td>도심지원</td><td>10%</td></tr></table></td><td>• 허용용적률 = 420.0%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400% + 20%
<table><tr><th colspan="2">항목</th><th>인센티브</th></tr><tr><td colspan="2">합계</td><td>78.7%</td></tr><tr><td rowspan="4">의무이행</td><td>층간소음해소</td><td>5.0%</td></tr><tr><td>공개공지</td><td>5.0%</td></tr><tr><td>돌봄시설</td><td>5.0%</td></tr><tr><td>방재안전</td><td>5.0%</td></tr></table></td><td>356.07%</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상한용적률 = 425.37% 이하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
= 308.7% × [1 + (1.3 × 1 ×
(0.237408) + 0.7 × (0.121572)]
= 430.24%이하

※ α토지 = 1,898.6 / (9,895.6 - 1,898.6)
= 0.237408
※ β건축물 = 972.2/(9,895.6-1,898.6)
= 0.121572</td><td>• 상한용적률 = 609.18% 이하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β건축물)
= 420% × [1 + (1.3 × 1 × (0.273329) + 1.0
× (0.096593)]
= 609.81%이하

※ α토지 = 1,574.0/(7,332.7-1,574.0)
= 0.273329
※ β건축물 = 556.2/(7,332.7-1,574.0)
= 0.096593</td><td>506.67%

정비계획
(건축)
용적률
504.5%</td></tr>
</table>

6. 기타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 한계선	• 여의대방로변 : 4m (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동로(샛강변) : 3m • 그 외 도로변(여의대방로70길, 여의대방로 68길 등) : 3m	좌동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개공간)	• 여의대방로변으로 공개공지(또는 공원) 설치 (부지면적의 3% 이상 권장)	• 여의대방로 및 여의동로변으로 부지면적의 10% 이상 조성(13.5%) - 여의대방로변1개소, 여의동로변1개소
	공공 보행통로	• 여의대방로68길 ~ 여의대방로70길을 연결하는 폭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 여의대방로68길 ~ 여의대방로70길을 연결하는 폭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미적용)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여의대방로변 및 여의동로(샛강)변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좌동
	차량출입 허용구간	-	좌동

Ⅳ. 관련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5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안)
정비구역 결정도
■ 범례
재건축정비구역
54-1대
54-2 대
54대
54-4대
여의도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54-3대
54-5대
54-8대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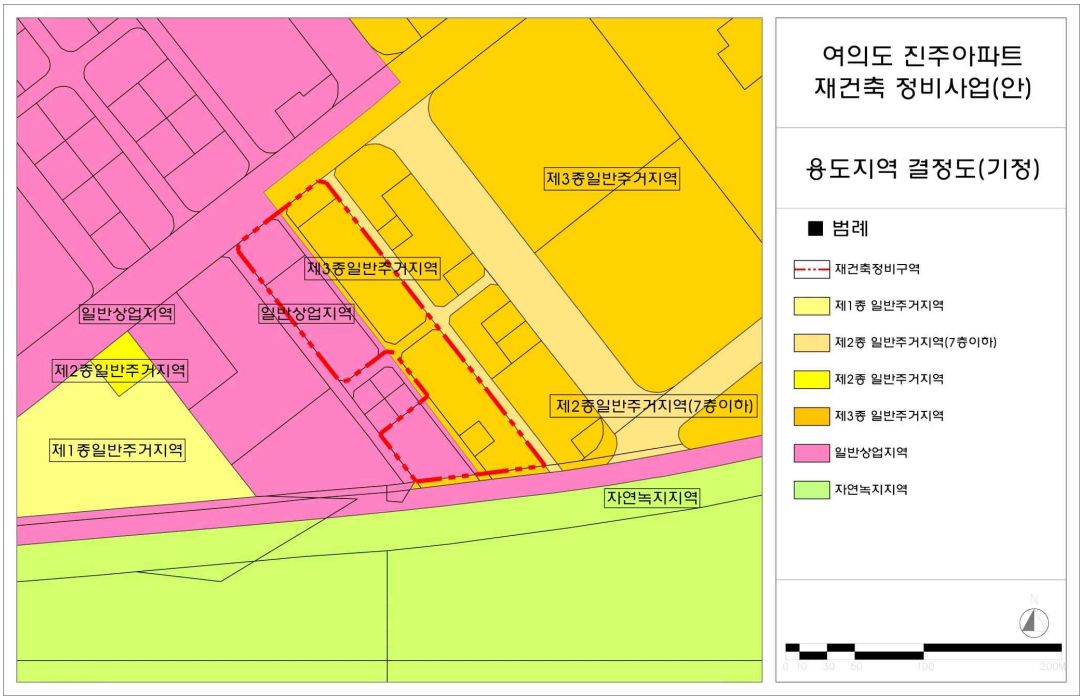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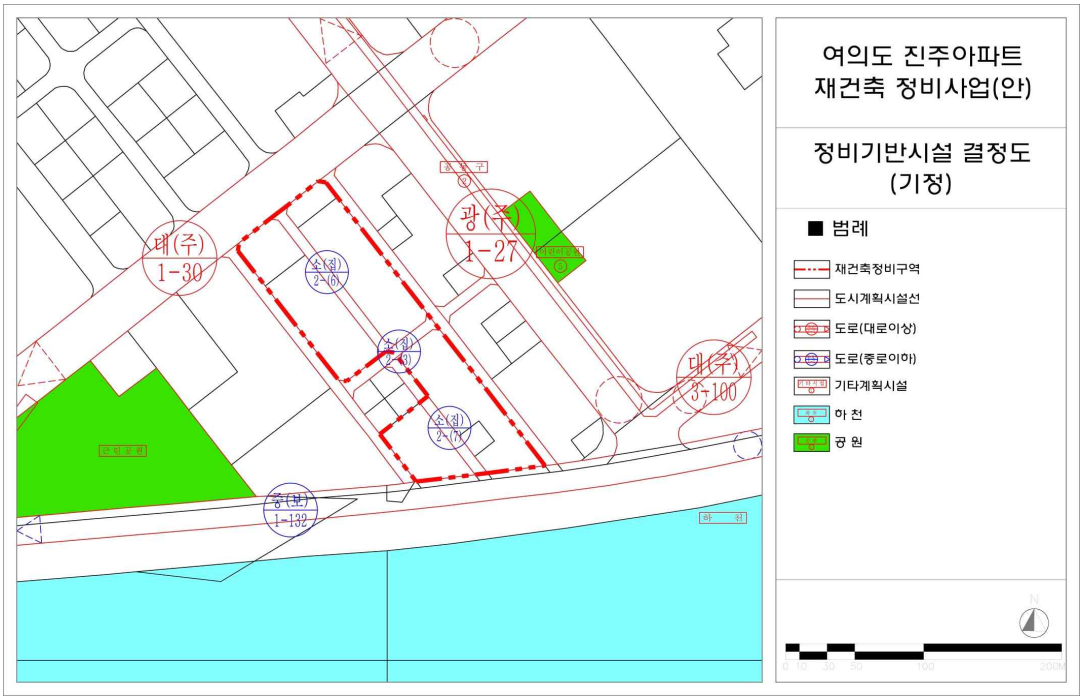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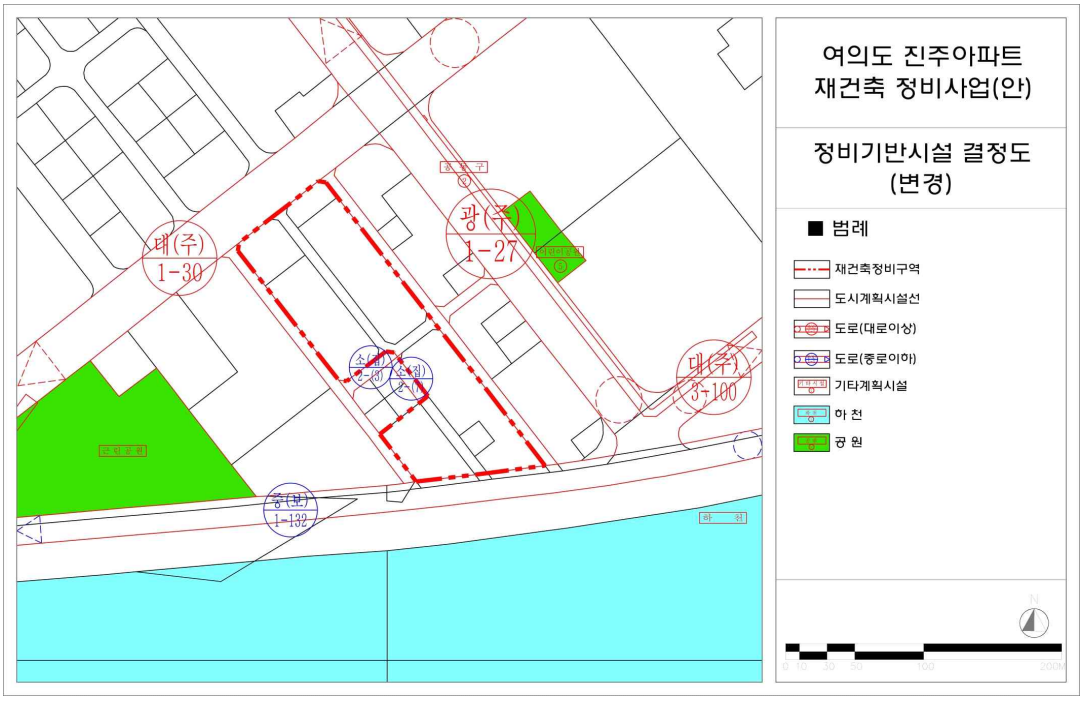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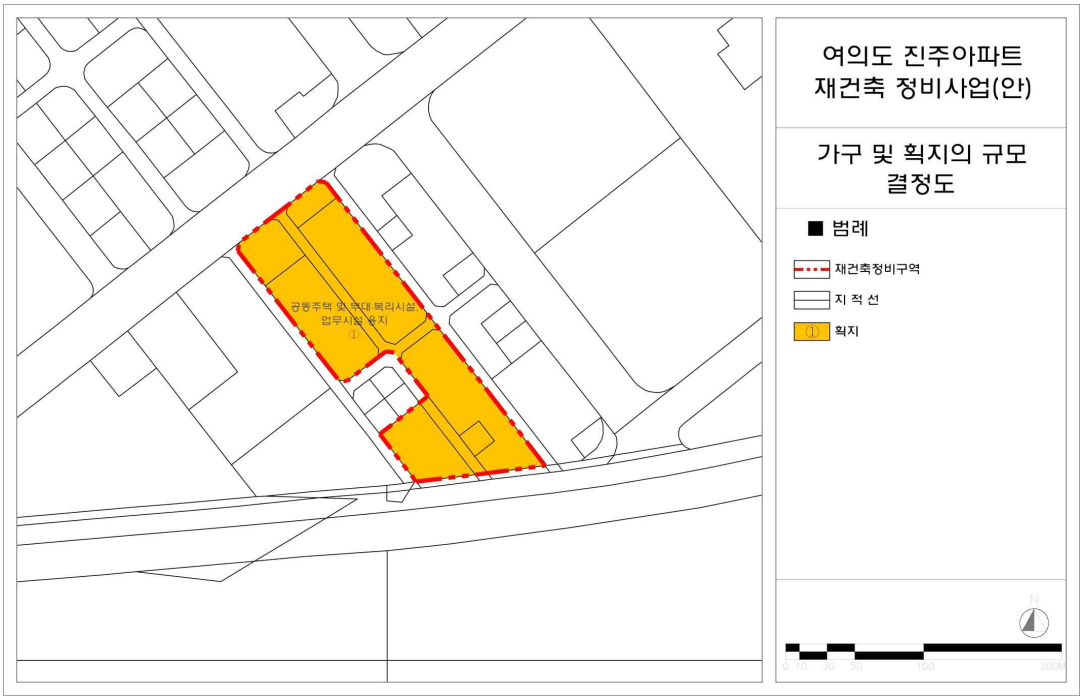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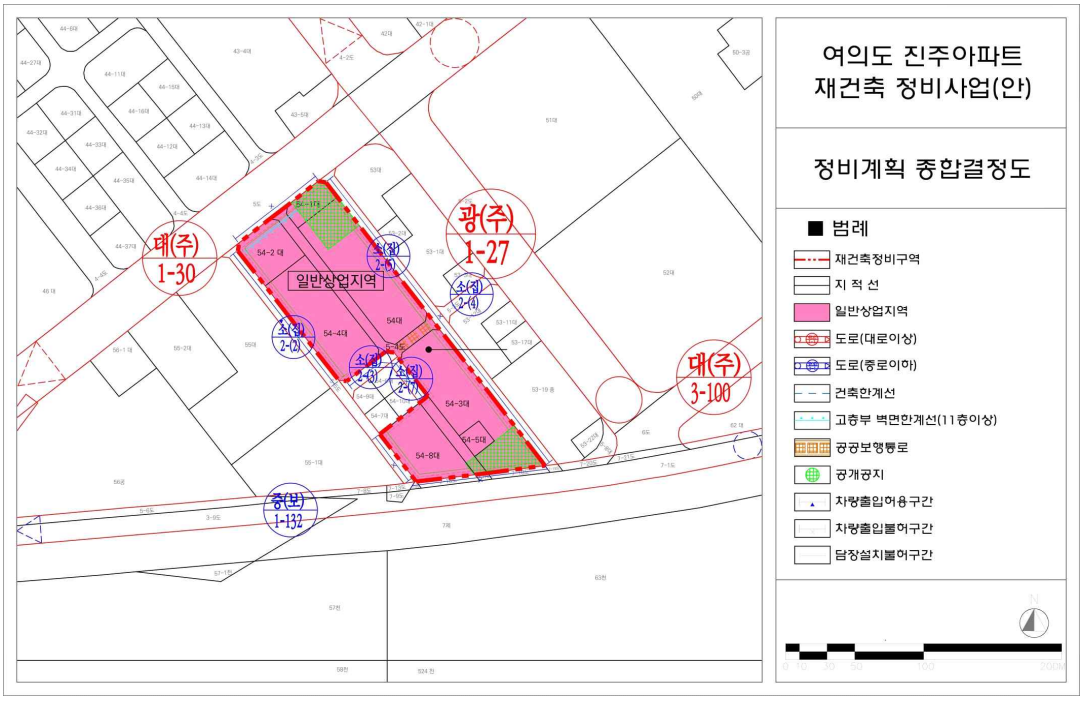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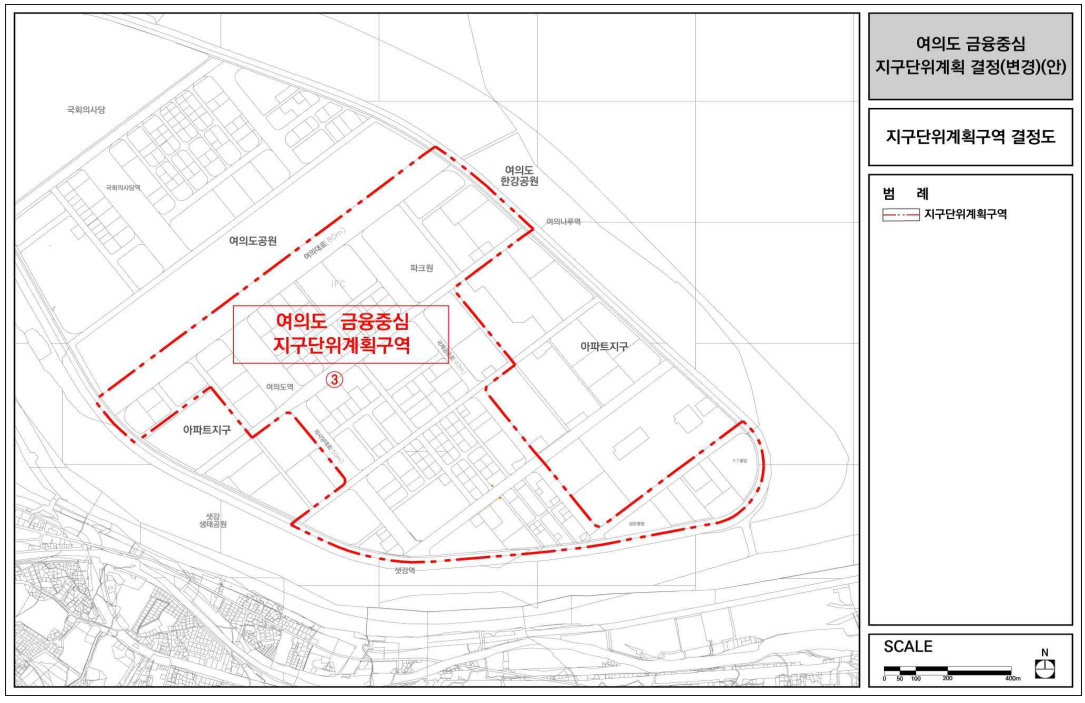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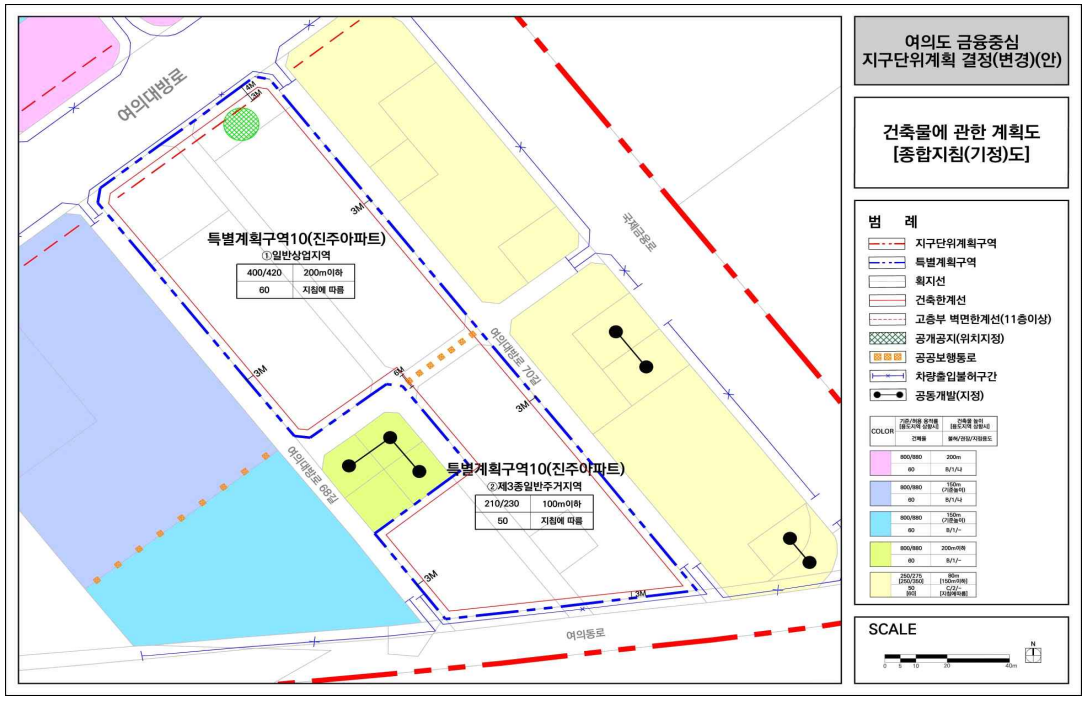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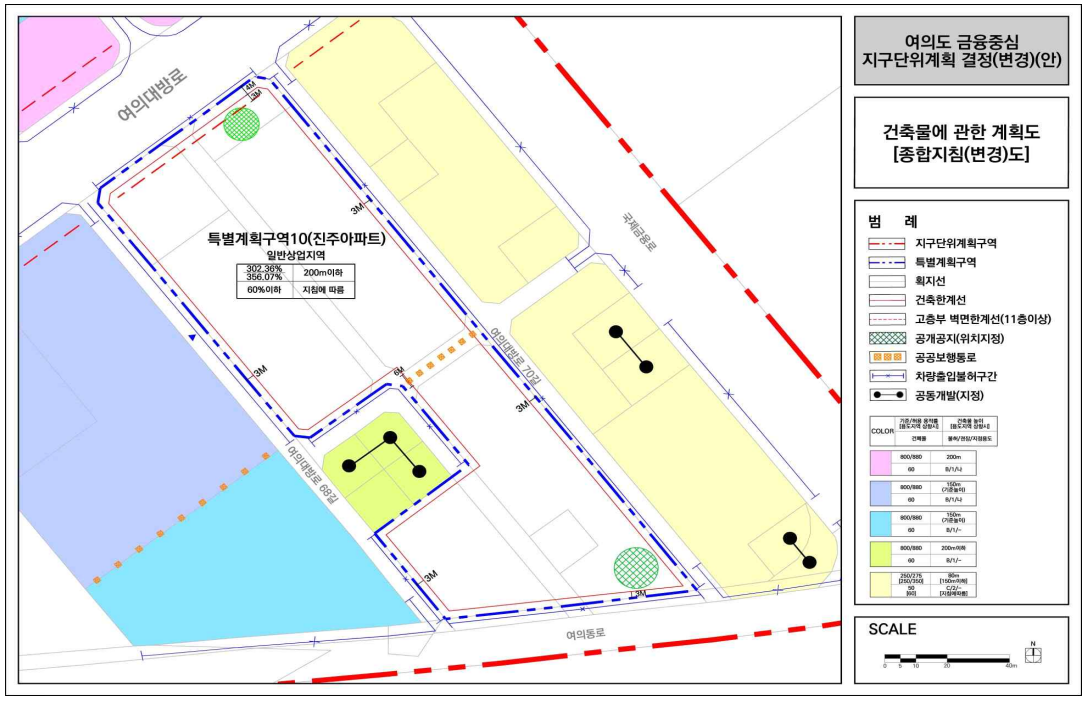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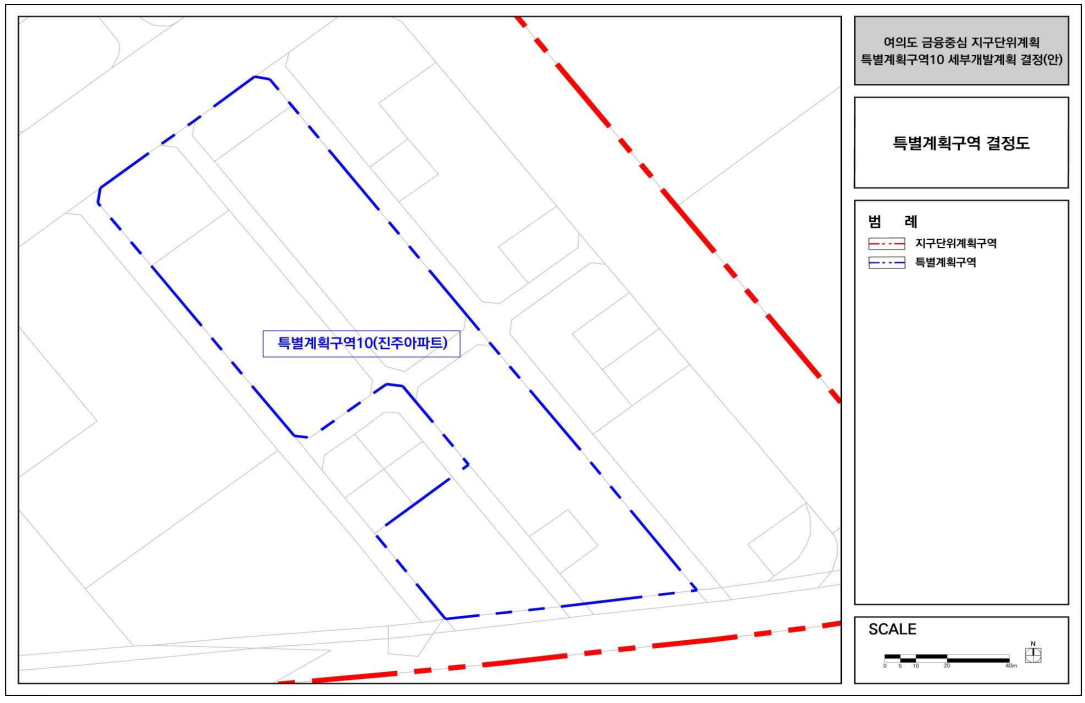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15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제3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218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65서6008	최*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01-02 07:38	양천03_경인고속도로(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100,000원
2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02 07:39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3	90머6207	㈜*폼아웃도어	경기도 광주시	2025-01-02 09:23	중랑01_북부간선도로(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4	21서7915	박*만	경상남도 남해군	2025-01-02 09:41	은평03_서오릉로(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30-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5	70조2859	㈜*커스이엔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1-02 11:37	마포03_성산로(연희IC)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7-1)	〃	〃
6	83구6331	㈜*일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1-02 14:37	송파01_송파대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60-8)	〃	〃
7	76너7131	성*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1-02 15:25	은평01_북한산로(입곡삼거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28)	〃	〃
8	86나2625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01-02 18:18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9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2 18:35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4-1)	〃	〃
10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3 07:53	성동01_뚝섬로(용비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	〃
11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03 11:46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12	22라4336	강*식	전라남도 신안군	2025-01-03 11:48	관악01_난곡터널(문성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26-4)	〃	〃
13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03 12:2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4	77루9809	TRAN *GOC AN	충청남도 아산시	2025-01-03 13:26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5	68머8269	김*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1-03 14:49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6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6 08:08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7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1-06 10:06	서초03_사당IC주도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 106)	〃	〃
18	56소8831	㈜*국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1-06 10:22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9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06 12:2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20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06 13:08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21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06 14:37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22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06 15:53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23	77루9809	TRAN *GOC AN	충청남도 아산시	2025-01-06 17:23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24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06 19:48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25	81더7038	㈜*인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5-01-06 20:42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26	80어3134	전*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1-07 06:04	강남11_밤고개로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130-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7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7 06:54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28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07 07:4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29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7 07:55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30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07 08:39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31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07 10:02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32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07 13:57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33	경기78로4287	김*진	경기도 부천시	2025-01-07 16:22	구로03_온수역(부일로)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57-9)	〃	〃
34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07 16:31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35	95저3554	이*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1-07 17:10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36	80버8510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1-07 20:59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37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8 08:00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38	80로9227	오*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08 08:18	은평01_북한산로(입곡삼거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28)	〃	〃
39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08 08:51	관악03_서울대입구역(관악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7-24)	〃	〃
40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8 09:51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4-1)	〃	〃
4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08 12:37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42	34너7737	홍*숙외1인(권*진)	경기도 고양시	2025-01-08 14:37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43	94더5861	임*태	대전광역시 중구	2025-01-08 14:59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44	05오4266	조*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01-08 16:45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45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08 17:24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46	95로4168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01-08 17:58	강남06_테헤란로(선릉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1)	〃	〃
47	80가3213	유*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1-09 06:0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48	서울81사7407	김*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09 07:38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49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09 08:0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50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09 08:07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51	78버3876	박*제	경기도 구리시	2025-01-09 10:21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52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09 10:50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53	80로9227	오*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09 11:05	은평01_북한산로(입곡삼거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28)	〃	〃
54	95로4168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01-09 12:57	강남06_테헤란로(선릉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1)	〃	〃
55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1-09 16:04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56	80가3213	유*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1-10 06:25	강남05_테헤란로(강남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4)	〃	〃
57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10 06:45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58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1-10 07:16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59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0 07:43	성동01_뚝섬로(용비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60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0 07:55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61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0 10:00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62	84너7609	이*만	충청남도 아산시	2025-01-10 10:50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	〃
63	90노9332	김*옥	경기도 이천시	2025-01-10 13:26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64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10 14:06	서대문02_모래내로(연희IC)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4)	〃	〃
65	69우9841	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1-10 16:27	성북01_화랑로(상월곡역)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6-1)	〃	〃
66	86보6542	김*섭	경기도 고양시	2025-01-10 17:18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67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10 17:56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68	46러2003	정*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1-10 18:53	강동03_고덕역(고덕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96)	〃	〃
69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3 07:56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70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3 08:0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71	서울44누2488	㈜*퍼레이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3 09:11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5-1)	〃	〃
72	91버1167	고*성	경기도 안산시	2025-01-13 09:39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73	91다1965	천*철강(주)	경기도 부천시	2025-01-13 11:00	구로02_안양천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0-17)	〃	〃
74	48마5425	박*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3 11:25	양천02_수주삼거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1-5)	〃	〃
75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13 11:5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76	91버2461	대*발전파워(주)	경기도 김포시	2025-01-13 13:11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77	83구6331	㈜*일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1-13 13:35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78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13 14:16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79	03오5225	엘*비건설-주	전라남도 순천시	2025-01-13 14:38	강남04_강남대로(신사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80)	〃	〃
80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5-01-13 15:14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1	86나2625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01-13 16:28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2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14 06:38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83	86무8001	㈜*사랑약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1-14 06:44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84	86나2625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01-14 07:45	구로05_천왕역(오리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97-6)	〃	〃
85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4 08:22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86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1-14 09:35	노원02_덕릉로(당고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12)	〃	〃
87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1-14 10:28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44)	〃	〃
88	21서7915	박*만	경상남도 남해군	2025-01-14 12:49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89	26조7138	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1-14 15:08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90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1-14 16:05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58)	〃	〃
91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14 16:22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92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1-15 07:27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80-4)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93	82마4205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5-01-15 07:56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94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15 07:57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95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5 08:00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96	97우0633	하*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1-15 08:06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97	90무3832	권*곤	경기도 포천시	2025-01-15 09:17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80-4)	〃	〃
98	91다1965	천*철강(주)	경기도 부천시	2025-01-15 09:59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99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5 10:16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00	95로4168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01-15 10:48	강남06_테헤란로(선릉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1)	〃	〃
101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5 10:59	강동03_고덕역(고덕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96)	〃	〃
102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1-15 11:09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03	07나1851	㈜*석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15 11:38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04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15 11:57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05	30노8493	이*붕	경기도 군포시	2025-01-15 12:39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06	34누4895	㈜*이엔	경기도 포천시	2025-01-15 13:15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07	21서7915	박*만	경상남도 남해군	2025-01-15 13:19	마포03_성산로(연희IC)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7-1)	〃	〃
108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1-15 15:55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09	80두2006	이*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1-15 16:17	마포02_월드컵경지장(월드컵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05-8)	〃	〃
110	48보2939	김*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1-15 16:34	용산01_서빙고로(한남역)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 62-1)	〃	〃
111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15 20:38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0-9)	〃	〃
112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6 06:55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13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6 07:46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14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1-16 08:54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15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1-16 10:43	서초03_사당IC주도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 106)	〃	〃
116	03오5225	엘*비건설-주	전라남도 순천시	2025-01-16 11:10	강남04_강남대로(신사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80)	〃	〃
117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16 11:19	도봉01_도봉로시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8-1)	〃	〃
118	62가5507	장*준	경상북도 안동시	2025-01-16 11:31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119	97우0633	하*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1-16 11:52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120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6 15:38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121	83러6237	㈜*쟌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1-16 15:51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122	80더4242	그*포스(주)	경기도 성남시	2025-01-16 16:53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23	경기82다7013	㈜*성종합건설	경기도 안양시	2025-01-16 17:07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124	56소8831	㈜*국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1-16 19:17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125	95로9145	전*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1-17 06:47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26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17 07:50	강서05_화곡터널(강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40-5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27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7 07:5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28	56소8831	㈜*국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1-17 09:21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29	80모9182	노*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1-17 10:48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130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5-01-17 12:07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3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17 13:0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32	95로4168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01-17 13:17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33	인천85사7458	케*디엘(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1-17 13:41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134	경기80거1582	㈜*나디앤엘	경기도 수원시	2025-01-17 14:14	서대문02_모래내로(연희IC)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4)	〃	〃
135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1-17 15:47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136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17 15:50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137	서울32러3120	주-인*아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1-17 16:02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38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1-17 16:38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39	02도3028	김*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17 19:00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40	53도0522	배*수	경기도 광명시	2025-01-17 19:22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7)	〃	〃
141	86부7105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2025-01-20 06:06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142	95로9145	전*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1-20 06:57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43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20 08:0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44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20 08:05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45	91다1965	천*철강(주)	경기도 부천시	2025-01-20 08:39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146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5-01-20 10:23	동대문01_회기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	〃
147	인천85사7458	케*디엘(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1-20 10:44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148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1-20 12:13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149	86보6542	김*섭	경기도 고양시	2025-01-20 12:19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50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1-20 12:37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5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20 12:5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52	82가6549	김*배	경기도 파주시	2025-01-20 15:10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153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20 15:34	강서02_개화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35)	〃	〃
154	80너8155	㈜*앤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5-01-20 16:24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55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20 16:3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56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1-20 16:51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서울시 동작구 본동 126-13)	〃	〃
157	07오7036	㈜*키모드디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1-20 19:27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58	75가8477	윤*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5-01-20 20:05	영등포04_시흥대로(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26)	〃	〃
159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25-01-21 06:1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60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21 07:11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61	86부7105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2025-01-21 08:55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62	경기86마7608	김*만	경기도 안산시	2025-01-21 10:07	구로05_천왕역(오리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97-6)	〃	〃
163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21 10:15	구로05_천왕역(오리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97-6)	〃	〃
164	95로4168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01-21 12:36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65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2025-01-21 12:59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166	56소8831	㈜*국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1-21 17:19	강남05_테헤란로(강남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4)	〃	〃
167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21 18:2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68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22 06: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69	71서7165	김*봉	경기도 성남시	2025-01-22 11:07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1)	〃	〃
170	83버1963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22 12:32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1)	〃	〃
171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22 12:43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72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22 12:45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173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1-22 13:58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174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1-22 15:57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175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22 19:32	도봉01_도봉로시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8-1)	〃	〃
176	인천94가5866	㈜*그라미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1-23 06:06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서울시 동작구 본동 126-13)	〃	〃
177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1-23 06:53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178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23 07:50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179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23 08:03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180	80다2257	윤*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1-23 10:06	서대문03_연희IC(연희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8-5)	〃	〃
181	86부7105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2025-01-23 10:33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182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23 10:37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83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23 10:41	용산02_강변북로(구리)(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184	39러9151	주식회사 *터그람아이디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23 11:04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85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1-23 11:36	노원02_덕릉로(당고개)(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12)	〃	〃
186	경기82다7013	㈜*성종합건설	경기도 안양시	2025-01-23 15:51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38-1)	〃	〃
187	01주7286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1-23 18:43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88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23 20:17	마포01_강변북로(서울)(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89	82마4205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5-01-23 20:56	마포01_강변북로(서울)(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90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1-24 06:07	마포01_강변북로(서울)(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91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01-24 07:01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1-42)	〃	〃
192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5-01-24 09:21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서울시 동작구 본동 126-13)	〃	〃
193	10구6089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24 09:28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34-10)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94	65저1679	김*곤	경기도 평택시	2025-01-24 09:48	성동01_뚝섬로(용비교)(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	〃
195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1-24 09:53	금천07_호암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3-12)	〃	〃
196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24 10:31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
197	58도5158	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2025-01-24 10:39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198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24 12:46	마포01_강변북로(서울)(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199	인천85사7458	케*디엘(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1-24 12:50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200	경기86마7608	김*만	경기도 안산시	2025-01-24 13:03	구로06_개봉교후방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95)	〃	〃
201	광주83나9508	한*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24 14:57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202	80도4677	서*현	경기도 부천시	2025-01-24 15:49	구로05_천왕역(오리로)(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97-6)	〃	〃
203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5-01-24 17:29	도봉01_도봉로시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8-1)	〃	〃
204	10무5217	성*영	경기도 안양시	2025-01-24 20:14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205	58도5158	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2025-01-31 10:25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15)	〃	〃
206	서울32러3120	주-*성아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1-31 12:02	동작03_여의교(여의대방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66-33)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07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1-31 12:28	강동03_고덕역(고덕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96)	〃	〃
208	97루7511	주식회사 *연이엔씨	경상북도 상주시	2025-01-31 12:28	종로01_북악터널(평창문화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35-2)	〃	〃
209	07두3787	양*형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01-31 12:32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210	경기85나8496	한*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31 12:44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21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5-01-31 13:02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122)	〃	〃
212	서울98사7194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1-31 13:32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
213	83러6237	㈜*쟌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1-31 14:48	강남02_한남IC부근(압구정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8-8)	〃	〃
214	서울85노9848	서*씽크-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1-31 15:25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	〃
215	86부7105	이*희	세종특별자치시	2025-01-31 15:31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69)	〃	〃
216	08조4101	김*민	경기도 오산시	2025-01-31 15:49	서초06_분당내곡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601)	〃	〃
217	80도4677	서*현	경기도 부천시	2025-01-31 17:38	구로05_천왕역(오리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97-6)	〃	〃
218	03너7673	박*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5-01-31 20:38	강남05_테헤란로(강남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4)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휴대폰 (010-9615-3241)으로 문자 전송

6.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02-2133-3652, 3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유자	성 명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법인소유차량)			생년월일 (개인소유차량)	
	주 소			휴대폰 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외 건
	고지받은 일 자	외 건		과 태 료 금 액	원
	위반내용	계절관리제운행제한		위반일시	외 건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사진촬영하여 010-9615-3241로 문자 전송

※ 우편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대기정책과(우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2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내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위반사항 및 처분근거
주식회사 젠스타메이트 (110111-488508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6 10층, (을지로2가, 삼화타워)	영업정지 1.5개월 (2025. 4 . 16.~ 2025. 5. 3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2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내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위반사항 및 처분근거
주식회사 도시연구 (110111-769360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38-6, 상가동 3층 303-1호 (풍납동, 한강극동아파트상가)	영업정지 1.5개월 (2025. 4 . 16.~ 2025. 5. 3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3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1.)로 최초 결정, 건설부고시 제349호(1979.9.24.)로 변경 결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3-6호(2023.1.1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문래정거장))에 대해 “6번 출입구 및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8-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도시철도: 정거장)
2) 명 칭 : 지하철 2호선 문래역 6번 출입구 및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시행	철도	도시철도 (문래정거장)	문래동3가 68-1 일원	1,015.2	- 6번 출입구 E/S 1200형 2대 - 내부 E/S 1200형 2대 + 계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7년 5월 13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영구점용(m2)	임시점용(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5-12	도	10,570.2	15.2	99.7	영등포구					
2			55-13	도	14,474.5	247.1	767.9	영등포구					
3			55	도	27.5	5.7	27.2	영등포구					
4			54	대	68,661.3		120.4	문래자이아파트					

사. 열람기간 : 2025.4.3.~4.17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 도시철도과(중구 덕수궁길 15, 6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3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4.3. ~ 2025.4.16.(14일간)

2. 송달대상 및 처분 개요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도건종합 건설㈜ (임중빈)	건축 공사업 03-06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3303호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내역 - 미달사유 : 기술능력 미달 - 처분일 : 2024.5.21.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2024.7.12. ~ 2025.1.11.) ○ 처분 이후 등록기준 미달 현황 - 보완자료 미제출 및 보증가능 금액 실효 상태 확인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5.4.25.)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4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윤*영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94번길 **, *동 ***호(공촌동)	일시: 2025-01-08 15:40 장소: 광명12R구역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등의 관리의무 소홀	처분일: 2025. 3. 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5. 4.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0길 **-**, ***호(독산동)	일시: 2023-10-16 12:1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69m 초과	처분일: 2024. 12.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5. 2. 28.
박*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 ***동 ***호(내곡동)	일시: 2024-11-26 10:56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1m 초과	처분일: 2024. 12.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5. 2. 28.

4. 공고기간: 2025. 4. 3.~2025. 4. 16.
5. 납부기한: 2025. 4.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3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115	2025-03-28	주식회사 이노인프라 임형준 (110111-460276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비동 814호 (문정동)
2	204114	2025-03-26	주식회사 티제이비전 전은영 (110111-615375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제6층 611호,612호 (가산동)
3	204113	2025-03-25	주식회사 브로제이 정광, 조민규 (110111-8062905)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에이스케이원타워 424호 (가산동)
4	204112	2025-03-17	비알 주식회사 (BR Corporation) 장홍석 (134511-048599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0-7 (방배동)
5	204111	2025-03-17	주식회사 모두아이티 김재범 (110111-80540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2길 2, 봉덕빌딩 8층 802호 (신길동)
6	204110	2025-03-17	주식회사 이지스텍 한석 (110111-582816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501호 (가산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7	204109	2025-03-17	주식회사 유트론 서준배 (110111-485344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성수에스케이브이원센터 1동 1213호 (성수동2가)
8	204108	2025-03-11	세담아이엔씨 주식회사 임정현 (110111-8799003)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9, 301호 (도봉동)
9	204107	2025-03-11	메인트란스 주식회사 전상훈 (110111-392052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개화동)
10	204106	2025-03-11	주식회사 스윙크 양희세 (110111-3826736)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1304호 (상암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3월)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인	201109	주식회사 디와이엔텍 임형두 [110111-2418659]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53-3 (미아동, 록일빌딩)	'25. 03. 28.	분할 합병
	양수인	-	주식회사 경천일렉콤 유건준 [284711-0010422]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55길 47, 1층 101-1호 (도봉동, 동성골든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9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공시송달) 기간 : 2025. 4. 2. ~ 2025. 4. 16. (14일간)

2. 공고(공시송달) 내용
   ○ 처분내용 :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법인번호)	무단점유 내역			부과금액 (변상금액)	의견제출 기한
	점유재산	점유면적	점유기간		
주)울OO컴퍼니 [대표 박O석]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 꿈의숲아트센터 1층	552.62㎡	'24. 2. 23. ~ '24. 7. 14. [143일]	13,697,670원	'25.4.30.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등

3.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 : 2025. 4. 30.까지 ※ [붙임] 서식 작성 제출
   ○ 위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변상금을 확정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2289-402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4. 1. 18.>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 1층	552.62㎡	2024. 2. 23. ~ 2024. 7. 14. [143일]	13,697,670원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4. 1. 18.>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점유재산의 표시		분 납 형 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 1층	552.62㎡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부이자 (원)	합 계 (원)	비 고
13,697,670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81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4.10.~2025.4.24.(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소노이엔씨종합건설 (대표 오주현)	건축공사업 01-3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402호 (화곡동)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	등록말소	2025.4.30.(수)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홍혜나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8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금○호 등 470명
4.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4. 17.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4. 3. ~ 2025. 4. 17.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9두90**	금*호	대구광역시	2025-02-26 1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	249너11**	박*용	서울특별시	2025-02-28 15: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	338라85**	송*욱	대전광역시	2025-03-01 10: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	106무13**	최*식	경기도 수원시	2025-02-24 17:4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	서울91자20**	백*현	서울특별시	2025-02-24 07: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6	303소16**	공*의	서울특별시	2025-02-26 08: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7	39어40**	(*)*윤*경	세종특별자치시	2025-02-26 17: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	113고65**	김*호	광주광역시	2025-02-27 18: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	282소32**	W*Y*N*M*	경기도 안산시	2025-02-25 17: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2-28 09: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	809노20**	주*회*삼*티*아*	경기도 군포시	2025-02-28 09: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	27주81**	B*K*U*Z*Y*V*U*A*B*R*E*	광주광역시	2025-02-27 18: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	130가41**	이*화	인천광역시	2025-02-07 17:4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50000
14	05라82**	오*석	경기도 화성시	2025-02-25 11: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	서울70자28**	주*회*제*엠*틴	서울특별시	2025-02-24 13:17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60000
16	52주84**	백*현	경기도 고양시	2025-02-26 19:08	불광역~동명여고교차로	50000
17	21저91**	김*연	인천광역시	2025-02-27 09: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	33저84**	주*회*제*앤*축	경기도 부천시	2025-02-28 08:0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9	경기59바30**	김*년	경기도 광주시	2025-03-03 04: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0	313더23**	주*회*마*크*필	서울특별시	2025-02-24 08: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	서울31아63**	윤*순	경기도 고양시	2025-02-25 09: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2	812서78**	주*회*시*산*	경기도 화성시	2025-03-03 06: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3	165호95**	김*탁	경기도 화성시	2025-02-07 20:2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	165하24**	세*기*물*(*명*)	서울특별시	2025-02-19 20: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	700노79**	X*D*N*H*I	서울특별시	2025-02-25 17:27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02누26**	(*)*문*딩*	서울특별시	2025-02-27 12: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	62모23**	엄*필	서울특별시	2025-02-28 13: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8	398소49**	박*정	경기도 김포시	2025-02-28 07: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	178거33**	봉*근	경기도 안성시	2025-03-01 12:3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0	27마22**	김*주	서울특별시	2025-02-27 16: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	50가06**	이*래	인천광역시	2025-02-21 18:3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32	15수31**	이*성	서울특별시	2025-02-28 20:26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3	42부50**	장*석	충청남도 천안시	2025-03-03 16: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4	13다02**	김*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6 17: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	78머76**	김*중	서울특별시	2025-03-01 12:5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6	209무38**	정*관	경기도 용인시	2025-02-24 18:4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7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3-01 17: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	51우37**	김*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2-28 14: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9	252마81**	서*석	서울특별시	2025-03-01 09:0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0	서울31바59**	이*범	서울특별시	2025-02-25 13: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1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5-02-26 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50000
42	135머74**	배*룡	광주광역시	2025-02-26 16: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3	78머76**	김*중	서울특별시	2025-03-01 12:52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44	27하76**	이*연	서울특별시	2025-02-20 17: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5	42부87**	N*U*E*T*I*O*G*U	경기도 용인시	2025-02-27 13:4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	57주68**	안*훈	경기도 의왕시	2025-03-01 14:5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7	09너22**	안*호	경기도 김포시	2025-02-27 18: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8	경기37바51**	이*노	인천광역시	2025-02-28 20: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9	21거59**	이*노	경기도 양주시	2025-02-24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	61라40**	J*N*H*X*N	서울특별시	2025-03-01 16: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1	281러52**	김*걸	충청북도 청주시	2025-03-01 15: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2	인천81바60**	이*우	인천광역시	2025-02-24 09:1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	17구67**	안*준	서울특별시	2025-03-01 14: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4	174부61**	유*회*양*파*너*	전라남도 나주시	2025-02-24 17: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55	59고08**	(*)*리*공	서울특별시	2025-02-27 09:0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6	11조17**	박*기	인천광역시	2025-02-27 09:11	사당IC교~사당역	50000
57	서울31사57**	최*현	서울특별시	2025-02-24 16: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58	서울32사93**	최*학	경기도 고양시	2025-02-25 20:2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59	241다97**	주*회*스*어*랜	경기도 성남시	2025-02-27 17: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0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2-18 11: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0	50000
61	69노13**	조*희	경기도 고양시	2025-02-24 08:3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62	61머63**	정*지	경기도 고양시	2025-02-28 13: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3	96거02**	주*회*대*빌*인	인천광역시	2025-02-25 12:5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	382주17**	임*환	서울특별시	2025-02-27 10:0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5	175도30**	이*춘	서울특별시	2025-02-28 09:2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66	경기90사34**	정*현	경기도 하남시	2025-02-28 08:3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60000
67	51거83**	A*N*T*E*K*A*N*	경기도 오산시	2025-03-01 12: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8	193하86**	이*현	경기도 화성시	2025-02-19 14: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9	10하70**	조*국	경기도 고양시	2025-01-22 20: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0	382거31**	S*T*A*K*A*O*Z*F*R*H*N	충청남도 논산시	2025-02-27 17:4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71	56모22**	(*)*이*팩*리	서울특별시	2025-02-28 19:22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72	42라33**	주*회*에*디*이	경기도 군포시	2025-02-25 07: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3	164구87**	고*주	경기도 고양시	2025-02-27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4	231러43**	김*천	서울특별시	2025-02-28 20:2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5	151보62**	이*임	서울특별시	2025-02-28 09: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76	294라93**	정*연	경상남도 하동군	2025-02-28 20:4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7	78주40**	대*건*(*)	경기도 용인시	2025-02-25 11: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60000
7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3-03 10:32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79	392무29**	주*회*하*	경기도 안산시	2025-02-22 1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0	271누66**	송*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4 19: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1	48가45**	정*우	서울특별시	2025-02-28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2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2-25 16: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3	17구67**	안*준	서울특별시	2025-03-01 14:4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4	193로28**	(*)*메*프*마*	서울특별시	2025-02-14 17:17	강남소방서앞	50000
85	경기87배33**	김*준	경기도 고양시	2025-02-24 09: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6	126마33**	이*성	경기도 수원시	2025-02-24 17: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7	65구10**	김*민	서울특별시	2025-02-28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8	24저93**	권*균	서울특별시	2025-02-24 15: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9	397노91**	C*I*O*G*U*	경기도 광주시	2025-02-28 20: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0	152두55**	현*름	서울특별시	2025-02-26 15:1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1	31우96**	원*재	서울특별시	2025-02-27 08:5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92	05루11**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7 18: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3	05조45**	김*숙	서울특별시	2025-02-26 09: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4	45더74**	유*회*제*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02-26 16:5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3-01 10:3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96	126호97**	김*용	경기도 양주시	2025-02-21 1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	서울31바86**	남*군	서울특별시	2025-02-26 1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	36거42**	(*)*이*컴	서울특별시	2025-02-25 20:0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9	398소49**	박*정	경기도 김포시	2025-02-25 07: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0	806나55**	안*기	경기도 양주시	2025-02-25 07:1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1	347소89**	신*석	서울특별시	2025-02-27 19: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02	서울32사80**	신*호	서울특별시	2025-03-02 18: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3	82두53**	문*환	대전광역시	2025-02-27 10:5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04	133저13**	머*랩*주*회*	서울특별시	2025-02-28 17: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5	87무17**	강*용	서울특별시	2025-02-25 17: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6	34오51**	송*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4 09:12	태릉국제스케이트장~태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7	서울84사72**	천*윤	서울특별시	2025-02-24 19:3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8	36저69**	J*N*U*J*	경기도 안산시	2025-02-26 1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9	06로25**	홍*림	서울특별시	2025-02-26 10: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0	69다09**	배*덕	경기도 김포시	2025-02-26 18: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11	28조81**	정*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03-02 16: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2	64어27**	조*민	경기도 고양시	2025-02-27 17: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3	09고31**	송*진	서울특별시	2025-03-02 17: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4	235누99**	김*준	인천광역시	2025-02-26 20: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5	48누58**	정*주	서울특별시	2025-02-28 08: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6	67두64**	최*미	경기도 고양시	2025-03-03 02:1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17	170주18**	(*)*모*브	서울특별시	2025-02-25 08: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8	294어22**	안*정	경기도 김포시	2025-02-25 17:3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9	310로10**	(*)*른*프*	서울특별시	2025-02-27 16:4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20	92라81**	정*풍	서울특별시	2025-02-22 08: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1	37버27**	(*)*튜*오*구*일	서울특별시	2025-02-27 11: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22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2-28 12:28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2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3-01 17:3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24	55라73**	박*철	충청남도 천안시	2025-02-27 19: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5	88너82**	우*식*료*식*사	서울특별시	2025-02-24 09:1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6	93보85**	장*대	경기도 성남시	2025-02-27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7	130러54**	(*)*동*리*	광주광역시	2025-02-27 1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8	93무03**	우*원	인천광역시	2025-02-27 16:3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29	141보68**	주*회*이*로*시*템	서울특별시	2025-02-24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0	135무95**	주*회*팜*아	경기도 광주시	2025-02-27 0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1	37구35**	안*순	경기도 안양시	2025-02-27 10:3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2	205오31**	여*엽	서울특별시	2025-02-27 19: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33	서울91자49**	박*규	서울특별시	2025-02-27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4	236어49**	노*원	서울특별시	2025-02-27 18: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5	서울31아84**	최*철	서울특별시	2025-02-28 08:1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36	서울32자56**	이*선	서울특별시	2025-02-28 08: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7	327누98**	강*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02-10 15: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8	142호60**	(*)*스*제*케*렌*카	서울특별시	2025-02-28 17: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9	113고65**	김*호	광주광역시	2025-02-28 18: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0	233저70**	서*휘	서울특별시	2025-02-28 18: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41	01거69**	송*훈	서울특별시	2025-02-28 20: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42	846머64**	김*범	서울특별시	2025-02-28 20: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43	136우13**	(*)*세*프*비	서울특별시	2025-02-28 16: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4	399버28**	주*회*보*랜*	경기도 용인시	2025-02-28 09: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5	133머57**	조*은	경기도 양주시	2025-02-28 08:40	성내교	50000
146	서울31사78**	김*호	서울특별시	2025-02-28 08:40	성내교	50000
147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2025-03-01 12: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8	712하10**	정*호	경기도 수원시	2025-02-10 08:1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60000
149	327누98**	강*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02-10 15: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0	810버68**	이*희	인천광역시	2025-03-03 09:47	영등포역	50000
151	서울31바95**	김*업	서울특별시	2025-03-01 15:07	여의도공원앞교차로	50000
152	84노11**	임*녀	경기도 광주시	2025-03-03 16: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3	222하97**	한*권	서울특별시	2025-02-21 18: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54	185보85**	조*섭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4 09: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5	서울36바17**	박*목	인천광역시	2025-02-24 0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6	02너89**	김*식	서울특별시	2025-02-24 19:42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57	인천81바59**	박*만	인천광역시	2025-02-19 10:3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50000
158	809어75**	박*선	경기도 광주시	2025-02-25 15:0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59	68버83**	가*자	인천광역시	2025-02-25 15:4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60	서울31바36**	김*기	서울특별시	2025-02-22 11:0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1	97두96**	서*경	경기도 광주시	2025-02-26 09: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62	163호66**	(*)*이*비*	경기도 안양시	2025-01-23 18:0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3	176하67**	박*선	경기도 하남시	2025-01-24 20:2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64	39우54**	김*자	서울특별시	2025-02-24 09:55	반포역~논현역	50000
165	34라95**	황*희	서울특별시	2025-02-24 07: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6	41버68**	최*용	경기도 수원시	2025-02-25 10: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7	42노51**	최*수	경기도 성남시	2025-02-25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8	122소18**	주*회*삼*글*벌	서울특별시	2025-02-26 13: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69	25머99**	안*섭	서울특별시	2025-02-26 09:2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0	108오28**	노*희	서울특별시	2025-02-27 12: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1	26주89**	설*환	서울특별시	2025-02-26 13: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여의도동)	50000
172	09부91**	김*순	서울특별시	2025-02-26 13:4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여의도동)	50000
173	249다40**	만*린*보*스*주*	경기도 용인시	2025-02-24 08:0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74	108마96**	최*림	경기도 군포시	2025-02-27 20:1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75	82두09**	노*호	전라남도 강진군	2025-02-28 18: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6	124구22**	김*중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8 18:0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7	57러38**	조*주	서울특별시	2025-02-28 18:2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8	서울31바26**	오*화	경기도 광주시	2025-02-25 1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9	서울31자25**	황*희	서울특별시	2025-02-20 17:53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50000
180	82우51**	이*태	인천광역시	2025-02-25 06: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81	11부23**	최*종	서울특별시	2025-02-27 20: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2	122하60**	박*원	경기도 하남시	2025-02-18 15:1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3	202우62**	유*회*민*금*	광주광역시	2025-02-28 19:3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4	26보56**	김*왕	경기도 용인시	2025-03-02 08: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3-01 10:32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86	60부56**	이*우	서울특별시	2025-03-02 18: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7	서울31사79**	안*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7 16:41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8	경기83사39**	양*천	경기도 화성시	2025-02-27 08:0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89	169모15**	마*환*산*(*)	서울특별시	2025-02-27 18: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0	32주79**	박*수	서울특별시	2025-02-27 20: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1	서울31사62**	이*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8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2	821부77**	배*호	경기도 수원시	2025-02-28 15: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3	39나07**	김*현	전라남도 나주시	2025-02-28 1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94	812누44**	박*재	경상북도 구미시	2025-02-28 12: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5	169허20**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2-28 18: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96	268나69**	(*)*파*틸	경기도 광주시	2025-03-02 14: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7	171하26**	주*회*다*이*에*	경기도 구리시	2025-02-21 08:0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98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2025-02-23 10: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9	258가89**	김*우	인천광역시	2025-02-24 11: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00	54나06**	황*일	서울특별시	2025-02-24 19: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1	257러59**	이*희	서울특별시	2025-02-24 09: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02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2-24 16:4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03	74수18**	설*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5 07:29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204	31오04**	오*원	서울특별시	2025-02-25 08: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5	115라38**	김*권	인천광역시	2025-02-25 1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6	244조34**	김*근	경기도 시흥시	2025-02-25 18: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7	17도66**	오*중	서울특별시	2025-02-20 17:2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208	152두55**	현*름	서울특별시	2025-02-25 11:5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09	서울31아73**	서*권	서울특별시	2025-02-18 11:22	청계산입구삼거리~염곡지하차도	50000
210	01어44**	신*윤	경기도 광주시	2025-02-26 08:05	생태공원앞교차로~길동사거리앞교차로	50000
211	서울31사86**	유*규	서울특별시	2025-02-26 08:0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12	007가83**	칠*크*인*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2-25 07:1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60000
213	812서20**	주*회*연*정*통*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2 07:43	개화교주변	50000
214	215너21**	윤*점	경기도 김포시	2024-12-02 07:43	개화교주변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5	05소18**	김*경	경기도 고양시	2024-12-02 07:43	개화교주변	50000
216	271머80**	이*민	서울특별시	2025-02-26 13: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7	31오04**	오*원	서울특별시	2025-02-26 09:0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8	서울81배25**	주*회*디*비*지*	서울특별시	2025-02-26 08:5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19	180허46**	피*케*(*)	경기도 화성시	2025-02-11 07: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0	327누98**	강*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02-10 13: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1	179허27**	(*)*모*환*산*	서울특별시	2025-02-18 18: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22	133호13**	조*현	서울특별시	2025-02-06 19: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3	13소56**	마*팅*컴*니*뮤*케*션*	서울특별시	2025-02-17 11: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24	197호78**	박*향	경기도 수원시	2025-02-21 17: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5	169호23**	이*호	서울특별시	2025-02-18 15: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6	197하30**	원*용	경기도 김포시	2025-02-18 18: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7	101하92**	이*승	서울특별시	2025-02-19 16: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8	32무15**	(*)*맛*산	경기도 구리시	2025-02-24 13: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9	03우63**	송*혜	서울특별시	2025-02-24 20: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30	27구53**	김*경	서울특별시	2025-02-21 18:3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31	43로63**	이*호	서울특별시	2025-02-23 16:17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32	160하99**	조*준	서울특별시	2025-02-17 16:5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33	283오86**	박*미	대구광역시	2025-02-21 15: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4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2025-02-23 10:2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5	65나04**	최*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4 07:5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36	30두01**	박*승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4 17:5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37	55가08**	이*희	서울특별시	2025-02-04 09:49	반포역~잠원IC	50000
238	21거59**	이*노	경기도 양주시	2025-02-24 18: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9	서울88바91**	전*순	서울특별시	2025-02-24 0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0	22도49**	V*L*E*K*U*A*	대구광역시	2025-02-25 13:3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1	서울32자38**	이*상	서울특별시	2025-02-24 18:3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91소90**	(*)*우*산	인천광역시	2025-02-26 11:42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43	11도56**	정*진	서울특별시	2025-02-26 17:3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44	50버16**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6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5	110하80**	주*회*에*치*이*진*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02-26 15: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46	66라72**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6 09: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47	141수23**	이*재	광주광역시	2025-02-26 20: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8	216라14**	씨*스*루*(*)	서울특별시	2025-02-26 09: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9	서울31바57**	변*순	경기도 부천시	2025-02-27 0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0	38우63**	S*K*Y*V*B*U*L*J*N*H*R*A*H*M*A*O*I*H	충청북도 진천군	2025-02-27 10:2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1	221호50**	유*람	경기도 부천시	2025-02-20 10:3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2	149하21**	(*)*이*컴*니	경기도 화성시	2025-02-19 09:1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53	서울31사79**	이*묵	경기도 양주시	2025-02-25 14:3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54	서울32자28**	유*상	서울특별시	2025-02-25 09: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55	61오90**	서*정	경기도 부천시	2025-02-25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6	366우20**	(*)*레*엄*신	서울특별시	2025-02-25 18:1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57	16어94**	김*길	서울특별시	2025-02-20 13:2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58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5-02-26 19: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9	805주45**	김*안	서울특별시	2025-02-26 14:3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0	201누92**	김*미	경기도 안산시	2025-02-26 08: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61	95어83**	김*덕	경기도 하남시	2025-02-26 08:0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62	226라38**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7 19: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63	142거64**	박*은	충청북도 제천시	2025-02-27 14: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4	08로68**	서*연	서울특별시	2025-02-28 10: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65	서울38아68**	임*래	서울특별시	2025-02-28 19:0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66	372러11**	W*N*O*G*U*	서울특별시	2025-02-28 09: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7	08부64**	김*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8 19: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68	178거33**	봉*근	경기도 안성시	2025-03-01 12: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9	87주06**	강*석	부산광역시	2025-03-01 10: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0	59더16**	윤*희	서울특별시	2025-02-24 18: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1	서울31사81**	민*식	서울특별시	2025-02-24 20:0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72	경기93자65**	민*헌	경기도 김포시	2025-02-19 10: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60000
273	59고08**	(*)*리*공	서울특별시	2025-02-25 08:35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274	86거44**	김*식	경기도 구리시	2025-02-24 09:3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5	64조08**	김*용	경기도 수원시	2025-02-25 20: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6	73보02**	김*선	서울특별시	2025-02-25 17: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277	서울32사20**	장*기	서울특별시	2025-02-25 17:39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278	160허10**	주*회*미*공*창	서울특별시	2025-02-21 19: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9	152하10**	(*)*스*로*	서울특별시	2025-02-21 17:5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0	60소59**	유*상	충청북도 제천시	2025-02-27 08:2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81	49루12**	이*아	서울특별시	2025-02-27 19: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2	83어86**	다*건*주*회*	서울특별시	2025-02-26 16:42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50000
283	69소81**	김*호	경기도 용인시	2025-02-05 17:51	경부 한남IC~잠원IC 하행	50000
284	20무04**	김*원	경상북도 김천시	2025-02-28 08:33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50000
285	167라62**	윤*정	경기도 성남시	2025-02-27 18: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86	서울동대문파68**	정*석	서울특별시	2025-02-27 15:47	논현역~신사역	40000
287	814라40**	주*회*수*터*셔*	경기도 양주시	2025-02-28 09:0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88	40머23**	도*우	경기도 고양시	2025-02-28 19: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9	11두48**	박*민	서울특별시	2025-03-02 02:0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90	219오55**	정*숙	대구광역시	2025-03-01 11:4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91	87주06**	강*석	부산광역시	2025-03-01 1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2	91거29**	김*두	경기도 평택시	2025-03-03 0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3	250조51**	박*우	경기도 김포시	2025-03-03 16: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4	57마85**	보*리*트*식*사	전라남도 구례군	2025-02-25 11: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5	45고82**	이*라	서울특별시	2025-02-26 18: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6	811수10**	주*회*지*메*케*	충청남도 서산시	2025-02-26 20: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97	236더48**	정*현	경기도 수원시	2025-02-26 17: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8	49어04**	장*희	서울특별시	2025-02-26 11: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9	36마04**	윤*광	서울특별시	2025-02-26 17: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00	703조12**	최*옥	서울특별시	2025-02-26 20:3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60000
301	87무17**	강*용	서울특별시	2025-02-25 17: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02	187수49**	김*석	경기도 양주시	2025-02-25 20: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03	서울32자40**	김*태	서울특별시	2025-02-20 19:07	LG에클라드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04	324가89**	정*실	서울특별시	2025-02-25 20:1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05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2-25 16:56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306	06수09**	유*전	서울특별시	2025-02-26 17:4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7	824서14**	유*희*엘*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2-26 0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8	336오94**	박*영	서울특별시	2025-02-26 20:1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09	111오80**	김*실	서울특별시	2025-02-26 11: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0	94어26**	김*경	인천광역시	2025-02-27 08: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1	151무23**	이*주	서울특별시	2025-02-28 19: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12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2-28 19:1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13	365라28**	류*주	전라남도 여수시	2025-02-28 15:0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4	169허20**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2-28 18: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15	서울31자18**	장*수	서울특별시	2025-02-28 14:22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50000
316	서울32사47**	심*관	서울특별시	2025-02-28 16:01	상봉역~상봉지하차도교차로	50000
317	179호10**	(*)*일*트*	인천광역시	2025-02-27 20: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18	161고88**	권*호	서울특별시	2025-02-27 20:2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19	172조77**	김*희	서울특별시	2025-02-28 09: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20	서울32바54**	장*규	서울특별시	2025-02-28 09:1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21	서울32자35**	이*철	서울특별시	2025-02-28 07:3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22	50고24**	J*N*O*G*I	서울특별시	2025-02-27 18:1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3	48수52**	(*)*이*도*개*	경상북도 구미시	2025-02-27 16: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324	서울32자30**	김*해	서울특별시	2025-02-27 1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50000
325	247조42**	이*재	인천광역시	2025-02-27 09:2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6	271거72**	김*수	인천광역시	2025-02-27 1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7	30라01**	(*)*성*재*피*보*대*점	서울특별시	2025-02-28 07:01	여의대로2길	50000
328	137러37**	임*진	서울특별시	2025-02-28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9	352부91**	김*옥	경기도 김포시	2025-03-02 23:09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30	48거86**	주*회*쿤*트*어	서울특별시	2025-03-03 2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1	172나95**	이*상	경기도 광주시	2025-02-28 17: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32	78어11**	최*호	서울특별시	2025-02-28 17:50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333	169허20**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2-28 18:1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34	서울31자78**	김*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8 16: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35	281러52**	김*걸	충청북도 청주시	2025-03-01 15: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6	128라63**	고*옥	경기도 광명시	2025-02-28 09: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7	21두77**	유*회*케*피*커*니*이*	경기도 고양시	2025-03-02 19:2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8	102루33**	A*I*O*A*M*D*U*O*	경기도 화성시	2025-03-02 17:3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3-03 16:39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40	300서25**	김*현	경기도 수원시	2025-03-02 07: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41	103호32**	이*단	경상북도 칠곡군	2025-01-21 19:4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42	358어87**	선*표	경기도 광명시	2025-02-03 18: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43	252부99**	이*자	서울특별시	2025-02-24 08:5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44	40소44**	박*섭	경기도 안산시	2025-02-26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5	165하31**	이*기	경기도 화성시	2025-02-05 12:1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6	42노52**	김*옥	경기도 부천시	2025-02-24 17: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47	경기92바13**	박*구	경기도 양주시	2025-02-28 18: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8	190허27**	조*재	서울특별시	2025-02-23 16:46	국제금융로7길	50000
349	838우56**	유*봉	서울특별시	2025-02-24 20: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50	35고65**	김*숙	서울특별시	2025-02-24 18: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51	서울31바53**	유*종	서울특별시	2025-02-24 19: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2	304소24**	박*권	서울특별시	2025-02-24 12: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3	152고30**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4 07: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4	경기81바34**	김*환	경기도 군포시	2025-02-25 09: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5	123누75**	고*혁	서울특별시	2025-02-25 10: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56	부산91자45**	김*호	부산광역시	2025-02-25 0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57	67부28**	김*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2-25 12:5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58	57마85**	보*리*트*식*사	전라남도 구례군	2025-02-25 11: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9	327부91**	염*호	서울특별시	2025-02-26 18: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60	서울32자51**	천*기	서울특별시	2025-02-26 10:4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61	175도30**	이*춘	서울특별시	2025-02-26 09:1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62	33수38**	이*민	서울특별시	2025-02-27 08:42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63	257가89**	김*진	경기도 양주시	2025-02-27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4	96두89**	N*A*G*R*L*N*B*L*	서울특별시	2025-02-27 17: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5	101호60**	송*원	서울특별시	2025-02-07 18: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66	288루82**	신*철	서울특별시	2025-02-25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7	26라28**	박*숙	서울특별시	2025-02-21 18:3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368	18우60**	박*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5 19:2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69	83오54**	최*운	충청북도 옥천군	2025-02-25 19:2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70	경기93사30**	김*수	경기도 양평군	2025-02-25 17: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71	55부08**	이*승	서울특별시	2025-02-25 0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72	91러96**	서*태	인천광역시	2025-02-25 1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73	36루95**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5 14:01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50000
374	42노52**	김*옥	경기도 부천시	2025-02-26 17: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75	39고87**	박*석	경기도 고양시	2025-02-26 17: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76	48가45**	정*우	서울특별시	2025-02-28 09: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7	서울31사74**	박*기	서울특별시	2025-03-01 02: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78	186루99**	정*정	광주광역시	2025-02-24 14: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9	174루43**	주*회*삼*테*너	서울특별시	2025-02-26 19:0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80	42라16**	강*순	경기도 평택시	2025-02-26 08:14	대치역~도곡역	50000
381	42버99**	이*래	서울특별시	2025-02-26 08:53	월계1교교차로~하계5,6단지사거리	50000
382	171라71**	정*교	서울특별시	2025-02-27 08:07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83	41고67**	김*숙	서울특별시	2025-02-26 02:4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84	21조54**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6 18: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5	51루12**	A*H*F*ㅣ*ㅣ*O*S*F*B*U*L*A*D*L*A	대전광역시	2025-02-26 13: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86	28보88**	강*문	서울특별시	2025-02-26 20: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7	서울85자97**	이*우	서울특별시	2025-02-26 08: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8	199조68**	(*)*릭*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6 09:1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89	68고53**	문*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6 19:3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90	398소49**	박*정	경기도 김포시	2025-02-26 07: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91	179허40**	뤼*스*터*셔*(*)	서울특별시	2025-02-18 20: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2	70저70**	주*회*벽*랑	경기도 고양시	2025-02-27 0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393	53너16**	이*연	경기도 오산시	2025-02-27 09: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94	81부99**	임*태	경기도 구리시	2025-02-14 16:22	종로1가교차로~종로2가교차로	50000
395	164버37**	주*회*아*텍*어*이*	서울특별시	2025-02-20 14:54	삼각지역~신용산역	50000
396	42루09**	이*복	서울특별시	2025-02-22 09:56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97	107수87**	주*회*제*에*산*	경기도 안양시	2025-02-19 14:16	고척교~구로역교차로	50000
398	52로05**	주*회*카*	서울특별시	2025-02-22 14:11	군자역~아차산역	50000
399	서울38아79**	이*기	서울특별시	2025-02-24 10:41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400	서울32자41**	김*목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5 11:58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401	서울32자17**	김*기	인천광역시	2025-02-24 09:21	종합운동장사거리~종합운동장역	50000
402	58모62**	최*열	경기도 김포시	2025-02-25 07:4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03	03우63**	송*혜	서울특별시	2025-02-24 20: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4	41두17**	석*석	서울특별시	2025-02-24 17: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05	392무29**	주*회*하*	경기도 안산시	2025-02-22 10: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6	334주66**	(*)*니*먼*에*	서울특별시	2025-02-21 14: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407	서울31바36**	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6 07:28	몽촌토성역~잠실역	50000
408	서울은평파88**	강*덕	서울특별시	2025-02-24 17:18	종로5가역~동대문역	40000
409	서울31자69**	양*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5 20:2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10	서울14라61**	이*훈	서울특별시	2025-02-26 10:20	강남소방서앞	60000
411	06수09**	유*전	서울특별시	2025-02-26 18: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2	220머98**	(*)*일*프*스*	서울특별시	2025-02-26 18: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3	21무85**	Z*O*X*E*I*G	서울특별시	2025-02-28 18:4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14	68보85**	정*수	서울특별시	2025-02-24 14:0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15	175도30**	이*춘	서울특별시	2025-02-27 09:4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16	경기88사19**	최*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7 09: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17	248노26**	조*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7 09:30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18	59더16**	윤*희	서울특별시	2025-02-27 18: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19	36더25**	이*률	서울특별시	2025-02-27 19: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20	87저67**	(*)*한*포*	경기도 파주시	2025-02-27 17: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21	700노79**	X*D*N*H*I	서울특별시	2025-02-27 17: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422	101부18**	이*형	서울특별시	2025-02-28 18: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23	216서75**	홍*련	부산광역시	2025-02-28 08: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24	48거77**	(*)*발*컴*니	서울특별시	2025-02-28 09: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25	서울39거24**	권*호	서울특별시	2025-02-28 18: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26	169가59**	주*회*바*처*스	서울특별시	2025-02-28 18: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27	812누44**	박*재	경상북도 구미시	2025-02-28 12:2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28	364부51**	임*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2-28 19: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29	58로09**	오*택	서울특별시	2025-02-28 18: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30	41서03**	주*회*뿌*나*병*	충청북도 청주시	2025-03-01 14: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1	서울31바32**	김*태	서울특별시	2025-02-25 09: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32	226너94**	이*영	서울특별시	2025-02-28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3	183우22**	이*현	서울특별시	2025-02-28 18:3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34	50오38**	B*I*H*N*X*N	서울특별시	2025-02-26 08: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35	213루35**	지*학	인천광역시	2025-02-28 14:43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36	172조61**	주*섭	서울특별시	2025-02-28 10:2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37	서울서초사68**	김*곤	경기도 성남시	2025-02-23 11:35	총신대입구역~이수역사거리	40000
438	109머89**	(*)*실*사*들	경기도 안양시	2025-03-01 14:56	서울역환승센터	50000
439	172어40**	유*경	경기도 안양시	2025-02-13 11:06	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440	281다97**	곽*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01 16: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41	경기92바11**	송*실	경기도 광주시	2025-02-26 11:25	어린이병원~ 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442	51러30**	천*자	경기도 부천시	2025-02-28 08: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3	05저42**	김*우	서울특별시	2025-03-01 16:21	말미사거리~금천구청입구삼거리	50000
444	82다27**	서*영	부산광역시	2025-02-28 19:2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5	서울32바89**	유*선	서울특별시	2025-03-03 08:1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46	87조87**	정*윤	서울특별시	2025-02-24 07: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7	83버52**	(*)*앤*푸*시*템	경기도 김포시	2025-02-28 20: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48	62오54**	김*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2-27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9	170더49**	주*회*케*아*씨*글*벌	서울특별시	2025-02-27 18:2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50	142호34**	이*오	경기도 수원시	2025-02-11 10:1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51	45로35**	김*완	서울특별시	2025-02-25 19:0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52	182주92**	농*회*법*흙*랑*이*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5-02-12 19: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53	95수08**	최*숙	경기도 김포시	2025-02-25 09:0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54	서울32사63**	김*수	서울특별시	2025-02-25 07:22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455	89더70**	(*)*로*테*	경기도 성남시	2025-02-28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6	398소49**	박*정	경기도 김포시	2025-02-24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57	서울32사90**	권*성	서울특별시	2025-02-20 19:11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458	194하33**	홍*옥	서울특별시	2025-02-17 1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60	50000
459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3-01 17: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60	35무82**	김*	충청남도 공주시	2025-02-26 11: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61	185더66**	주*회*영*스*직	서울특별시	2025-02-14 14:4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동)	50000
462	17라08**	장*경	경기도 부천시	2025-02-26 17: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63	05머26**	주*회*실*로*2*	경기도 고양시	2025-03-03 01: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4	72호22**	(*)*로*복*법*	서울특별시	2025-02-17 09:4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465	153하83**	함*현	서울특별시	2025-02-06 07:1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66	65나62**	김*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02-24 09: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67	169호16**	주*회*엔*크	경기도 용인시	2025-02-21 18: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68	61조85**	김*중	서울특별시	2025-02-26 19: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69	서울83사70**	정*진	서울특별시	2025-02-25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70	94주09**	유*만	서울특별시	2025-02-28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4월 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 제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학교보건 및 교육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료 · 복지 분야 전문가, 학교 교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안전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임 ·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 해촉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이관)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고 기능에 적합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제2조)

- 제1순위부터 제3순위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
- 경제적 사정 및 치료의 중증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사회적 이익 극대화

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 치료비 지원 상한 금액과 기준,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경제적 사정 및 시급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최우선 복지 실현 도모

다.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
- 소관 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 확보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기준과 직무, 위원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의와 의결 기준 및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등 지정, 출석 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마. 사무 이관 시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3조)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규칙 적용에 관한 사항
- 잦은 행정 변화에도 업무 단절을 최소화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의 연속성 유지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5-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287호(1981.07.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38호(1999.05.24.)로 결정(변경)된 도시철도 3호선 약수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도시계획시설(철도)(약수역 3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시설결정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약수역)	중구 신당동 373-13 일대	4,565	증) 150.4	4,715.4	1981.07.30. (서고287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철도	· 면적 변경 - 4,565㎡ → 4,715.4㎡(증 150.4㎡) - 시설면적 5.0% 이내 (3.3%) - 승강편의시설(E/L) 설치	· 원활한 지하철 접근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신설로 이용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 편의성 향상에 따른 변경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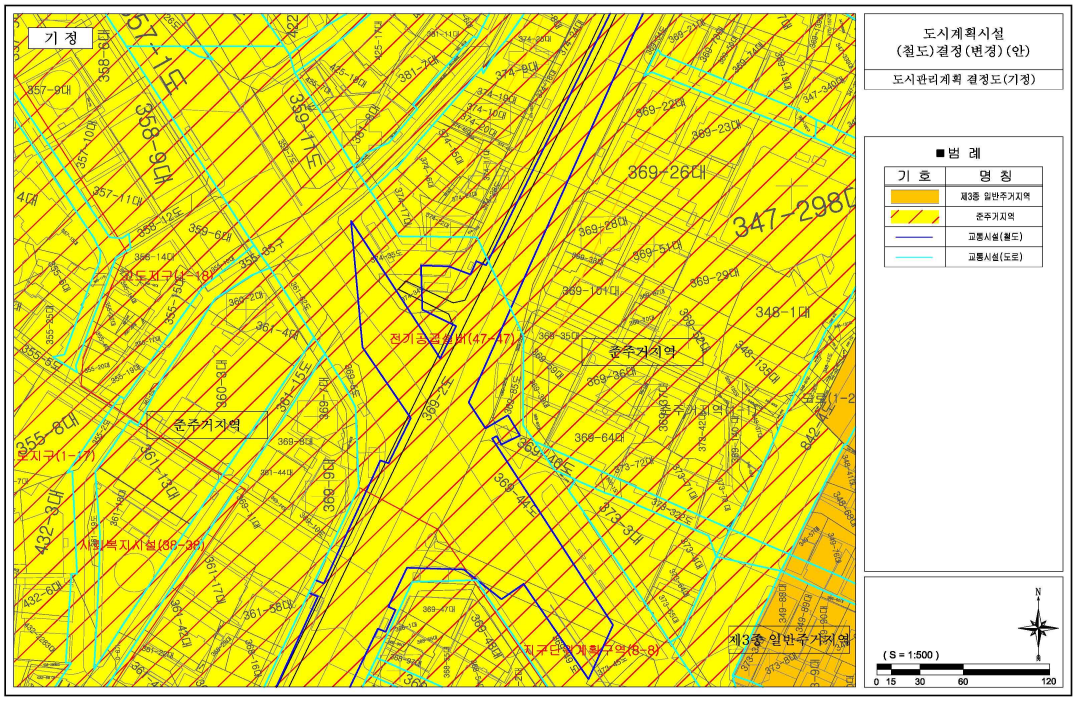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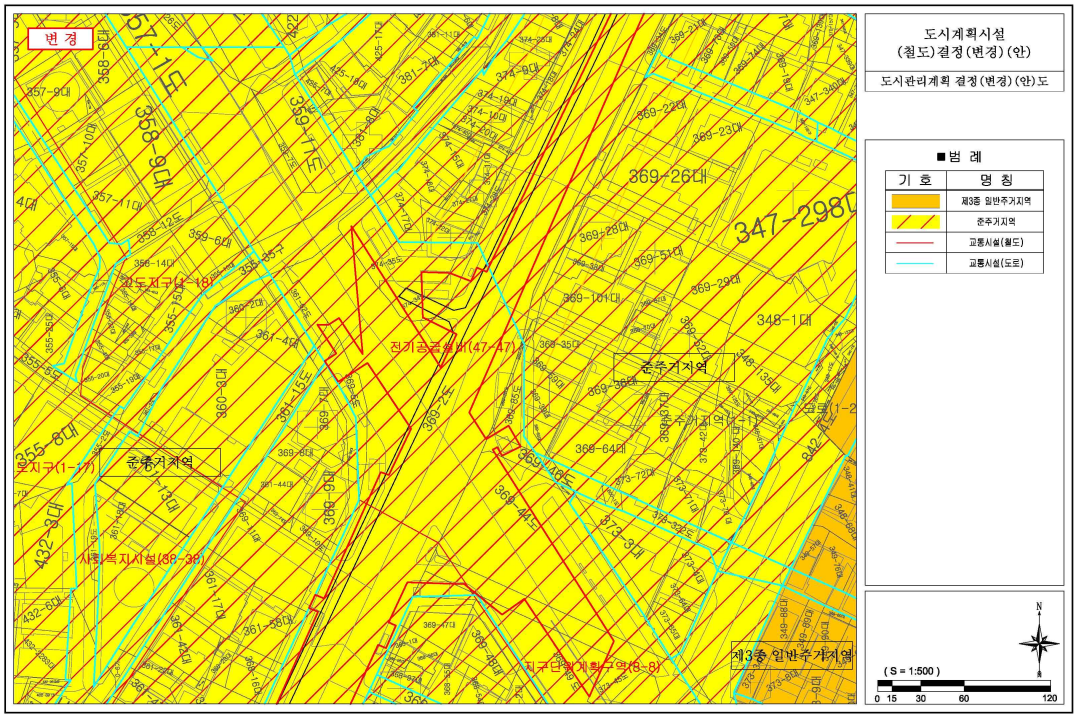

◈ 성동구고시 제2025-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47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성동구고시 제2020-61호(2020.6.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24-120호(2024. 9. 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근동 189-1~199-4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89-1~199-4(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성동구 사근동 189-1~199-4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66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붙임(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목과(☎2286-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사근동 201	대	215	17	윤*중	서울특별시□성동구 사근동11길 **	1/2				
						이*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	1/2				
	변경	사근동 201-1	대	18	18	윤*중	서울특별시□성동구 사근동11길 **	1/2				
						이*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	1/2				
2	변경 없음	사근동 199-5	전	54	54	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2길 **	3/9				
						장*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94길 **	2/9				
						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3로 **	2/9				
						장*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2길 **	2/9				
3	변경 없음	사근동 233-3	전	149	149	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2길 **	3/9				
						장*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94길 **	2/9				
						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3로 **	2/9				
						장*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2길 **	2/9				
4	변경 없음	사근동 231-35	도	117	117	이*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	25,564/102250				
						이*황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	25,562/102250				
						이*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	25,562/102250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이*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7길 *	25,562/102250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5	변경없음	사근동 199-4	도	49	49	서울특별시						
6	변경없음	사근동 189-1	도	4,796	214	서울특별시						

※ 본 조서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토지보상 시 지번, 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노원구고시 제2025-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2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4호(2020.12.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1-59호(2021.4.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노원구고시 제2023-25호(2023.4.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노원구 공릉동 26-61번지 일원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 대해 변경사항(사업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라.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일로부터 4년간
  - 변경 :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일로부터 7년간
마.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바. 열람장소 : 노원구청 정원도시과(☎02-2116-3969)
사. 변경내용 및 사유 : 사업기간 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공릉동 27-39	임	임야	572	572	기획재정부				
2	공릉동 29	공	대지	1709	1709	서울시				
3	공릉동 29-1	답	공원	790	790	서울시				
4	공릉동 29-2	전	공원	3428	3428	서울시				
5	공릉동 29-4	철	공원	14438	14438	서울시				
6	공릉동 29-17	답	공원	89	89	서울시				
7	공릉동 29-28	답	공원	1101	1101	서울시				
8	공릉동 29-29	답	공원	715	715	서울시				
9	공릉동 29-30	답	공원	536	536	노원구				
10	공릉동 29-32	공	공원	311	311	서울시				
11	공릉동 29-35	도	녹지	707	707	국토교통부				
12	공릉동 29-37	전	녹지	40	40	서울시				
13	공릉동 39-38	전	녹지	73	73	서울시				
14	공릉동 29-39	전	녹지	50	50	기획재정부				
15	공릉동 29-42	대	공원	238	238	노원구				
16	공릉동 29-48	도	공원	337	172	노원구				
17	공릉동 29-49	답	공원	194	194	노원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8	공릉동 29-53	답	대지	850	850	서울시				
19	공릉동 29-54	전	대지	62	62	서울시				
20	공릉동 29-55	도	녹지	1104	1029	국토교통부				
21	공릉동 29-59	임	건물	1917	1917	문화재청				
22	공릉동 30-1	도	공원	17	17	노원구				
23	공릉동 30-4	답	공원	423	423	서울시				
24	공릉동 38-1	철	공원	382	382	서울시				
25	공릉동 38-2	답	임야	185	185	노원구				
26	공릉동 38-7	도	공원	258	258	서울시				
27	공릉동 39-65	도	녹지	45	45	국토교통부				
28	공릉동 39-41	도	공원	67	67	국토교통부				
29	공릉동 39-51	도	공원	1	1	서울시				
30	공릉동 103-2	철	공원	1142	1142	서울시				
31	공릉동 103-3	철	공원	99	99	서울시				
32	공릉동 103-8	철	공원	307	307	서울시				
33	공릉동 103-10	도	녹지	204	111	국토교통부				
34	공릉동 103-14	답	공원	122	122	노원구				
35	공롱동 103-15	답	공원	3	3	노원구				
36	공릉동 103-16	도	녹지	304	304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37	공릉동 103-42	도	공원	139	139	노원구				
38	공릉동 103-44	대	공원	46	46	서울시				
39	공릉동 103-45	도	공원	26	26	서울시				
40	공릉동 103-46	대	공원	3	3	서울시				
41	공릉동 103-47	대	공원	3	3	서울시				
42	공릉동 103-48	도	공원	26	26	서울시				
43	공릉동 103-50	대	공원	7	7	서울시				
44	공릉동 103-53	대	공원	3	3	서울시				
45	공릉동 103-71	철	철도	16	16	국토교통부				
46	공릉동 39-2	철	공원	63	63	서울시				
47	공릉동 38-5	철	공원	456	456	서울시				
48	공릉동 39-63	철	공원	7	7	서울시				
49	공릉동 37-2	철	공원	921	921	서울시				
50	공릉동 37-6	철	공원	387	387	노원구				
51	공릉동 37-5	철	공원	438	438	서울시				
52	공릉동 29-61	철	공원	804	804	서울시				
53	공릉동 38-13	철	공원	532	532	서울시				
54	공릉동 29-51	철	공원	3678	3678	서울시				
55	공릉동 29-62	철	공원	249	249	노원구				
56	공릉동 103-78	도	녹지	1	1	국토교통부				

◈ 구로구고시 제2025-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로구 고시 제2023-216호(2023.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 공고 제2024-359호(2024. 2.22.)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구로구 고시 제2024-80호(2024. 5.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공고 제2025-474호(2025. 3. 6.)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2 ~ 12-18간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7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변경]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 첨 [변경]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	서울특별시 ○동 ○-○				
2	항동 13	대지	245	242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아파트 ○○○-○○○				
3	항동 222	구거	515	30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항동 231	도로	365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상기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토 지 조 서 (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	서울특별시 ○동 ○-○				
2	항동 13-3	대지	242	242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모지번 13
3	항동 222-104	구거	232	2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 / 무상귀속대상
4	항동 222-105	구거	77	7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
5	항동 231-2	도로	321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31

물 건 조 서 (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3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14	건물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아파트 ○○○-○○○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항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항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항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물 건 조 서 (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3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45	건물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현지번 13-3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18	창고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항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항동 222-105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항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5	항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 구로구고시 제2025-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시고시 제352호(2011.12.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74호(2020.12.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로구 고시 제121호(2021. 6. 3.)로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688호(2021.12.16.)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고시 제17호(2023. 2. 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고시 제2023-28호(2023. 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천왕역세권 보행자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로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860-3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97-3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오류동 297-32번지 일원 천왕역세권 보행자도로 개선공사
다. 사업 규모
 · 보행자도로 개선 (A=471㎡) (폭 7.6m~14.4m, 연장 40.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이레에이치앤씨 대표자 이병훈, 나상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54, 502호(오류동, 성민빌딩)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년 6월까지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이레에이치앤씨

○ 사 업 의 명 칭 : 천왕역세권 보행자도로 개선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297-32	대지	148	14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오류동 297-33	대지	91	9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오류동 297-34	대지	27	2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오류동 산 39-137	임야	205	20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관악구고시 제2025-37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우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138호(2019.12.19.)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관악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우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취지
-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신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중 대상지의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3번지 일대

다. 면 적 : 2,191.70㎡

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02-879-650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191.70	1,032.12				68	2,191.70	1,027.80				66	감 4.32㎡
기반시설	소 계	393.26	393.26					575.16	575.16					증 181.90㎡
	광 장	216.39	216.39					317.47	317.47					증 101.08㎡
	산책로	176.87	176.87					257.69	257.69					증 80.82㎡
조경시설		-	-				2	-	-				2	-
휴양시설		27.50	27.50				9	27.50	27.50				9	-
유희시설		515.70	515.70				13	329.48	329.48				13	감 186.22㎡
운동시설		95.66	95.66				5	95.66	95.66				5	-
관리시설		-	-				39	-	-				37	-
녹지		1,159.58	-					1,163.90	-					증 4.32㎡
시설율 (법정 60%)		(1,032.12 / 2,191.70) × 100 = 47.09%						(1,027.80 / 2,191.70) × 100 = 46.90%						감 0..19%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191.70	1,032.12					68			2,191.70	1,027.80					66	감 4.32㎡
기반시설	소 계			393.26	393.26								575.16	575.16						증 181.90㎡
	광 장	광장-가		60.46	60.46						광장-가		64.17	64.17						증 3.71㎡
		광장-나		155.93	155.93						광장-나		152.35	152.35						감 3.58㎡
											광장-다		67.95	67.95						증 67.95㎡
											광장-라		33.00	33.00						증 33.00㎡
	산책로	1		15.51	15.51						1		50.94	50.94						증 35.43㎡
		2		75.59	75.59						2		75.59	75.59						
		3		85.77	85.77						3		81.41	81.41						감 4.36㎡
											4		49.75	49.75						증 49.75㎡
조경시설	소 계									2									2	
	파고라	①								2	①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27.50	27.50					9			27.50	27.50					9	
	휴양공간	다		21.73	21.73						마		21.73	21.73						
	등의자	③								9	②								9	
	장식벽	④		5.77	5.77						③		5.77	5.77						
유희시설	소 계			515.70	515.70					13			329.48	329.48					13	감 186.22㎡
	놀이공간			515.70	515.70						바		329.48	329.48						감 186.22㎡
	조합놀이대	⑤								1	④								1	
	놀이시설	⑥								10	⑤								10	
	흔들놀이	⑦								2	⑥								2	
운동시설	소 계			95.66	95.66					5			95.66	95.66					5	
	체력단련장	마		95.66	95.66						사		95.66	95.66						
	체력단련시설	⑧								5	⑦								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소 계									39									37	
	공원등	⑨								9	⑧								9	
	녹지등	⑩								11	⑨								11	
	투사등	⑪								6	⑩								6	
	CCTV	⑫								2	⑪								2	
	볼라드	⑬								7	⑫								5	
	휀스	⑭								(209m)	⑬								(250m)	
	공원안내판	⑮								4	⑭								4	
녹지	녹지			1,159.58									1,163.90							증 4.32㎡

다. 도로조서

- 공원 내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1.61	176.87				
변경					147.73	257.69				
당초	산책로		산책로-1	1.5	6.89	15.51	산책로	놀이공간	동측	
당초	산책로		산책로-2	2.0	37.54	75.59	산책로	광장 가	광장 나	
당초	산책로		산책로-3	1.5	57.18	85.77	산책로	광장 나	광장 나	
변경	산책로		산책로-1	2.0	27.03	50.94	산책로	광장 가	동측	
변경	산책로		산책로-2	2.0	37.54	75.59	산책로	광장 가	광장 나	
변경	산책로		산책로-3	1.5	54.23	81.41	산책로	광장 나	광장 나	
변경	산책로		산책로-4	1.5~2.0	28.93	49.75	산책로	산책로-2	광장 나	

4. 지형도면

조성계획도(변경전)

신림3 신우어린이공원

■ 시설조서범례

구 분	시 설 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2,191.70	1,032.12	68	(47.09%)
기반시설	계		393.26	393.26		
	광장	가	60.46	60.46		
		나	155.93	155.93		
	산책로	1	15.51	15.51		
		2	75.59	75.59		
		3	85.77	85.77		
조경시설	계				2	
	파고라	①			2	
휴양시설	계		27.50	27.50	9	
	휴양공간	다	21.73	21.73		
	등의자	②			9	
	장식벽	④	5.77	5.77		
유희시설	계		515.70	515.70	13	
	놀이공간	라	515.70	515.70		
	조합놀이대	⑤			1	
	놀이시설	⑥			10	
	흔들놀이	⑦			2	
운동시설	계		95.66	95.66	5	
	체력단련장	마	95.66	95.66		
	체력단련시설	⑧			5	
관리시설	계				39	
	공원등	⑨			9	
	녹지등	⑩			11	
	투시등	⑪			6	
	CCTV	⑫			2	
	볼라드	⑬			7	
	펜스	⑭				(209M)
	공원안내판	⑮			4	
녹지	녹지		1,159.58			(52.91%)

조성계획도(변경후)

신림3 신우어린이공원

■ 시설조서범례

구 분	시 설 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2,191.70	1,027.80	68	(46.90%)
기반시설	계		575.16	575.16		
	광장	가	64.17	64.17		
		나	152.35	152.35		
		다	67.95	67.95		
		라	33.00	33.00		
	산책로	1	50.94	50.94		
		2	75.59	75.59		
		3	81.41	81.41		
		4	49.75	49.75		
조경시설	계				2	
	파고라	①			2	
휴양시설	계		27.50	27.50	9	
	휴양공간	마	21.73	21.73		
	등의자	②			9	
	장식벽	④	5.77	5.77		
유희시설	계		329.48	329.48	13	
	놀이공간	바	329.48	329.48		
	조합놀이대	④			1	
	놀이시설	⑥			10	
	흔들놀이	⑧			2	
운동시설	계		95.66	95.66	5	
	체력단련장	사	95.66	95.66		
	체력단련시설	⑦			5	
관리시설	계				37	
	공원등	⑨			9	
	녹지등	⑩			11	
	투시등	⑪			6	
	CCTV	⑫			2	
	볼라드	⑬			5	
	펜스	⑭				(250M)
	공원안내판	⑮			4	
녹지	녹지		1,163.90			(53.10%)

◈ 관악구고시 제2025-38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약수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138호(2019.12.19.)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관악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약수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취지
-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약수소공원 조성공사 중 대상지의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95번지 일대
다. 면 적 : 3,911.90㎡
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02-879-650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95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11.90	779.31				67	3,911.90	770.26				67	감 9.05㎡
기반시설	소 계	727.93	727.93					719.22	719.22					감 8.71㎡
	광 장	108.61	108.61					98.01	98.01					감 10.60㎡
	산책로	619.32	619.32					621.21	621.21					증 1.89㎡
조경시설		-	-				5	-	-				2	-
휴양시설		-	-				16	-	-				9	-
운동시설		51.38	51.38				8	51.04	51.04				5	감 0.34㎡
관리시설		-	-				38	-	-				41	-
녹지		3,132.59	-					3,141.64	-					증 9.05㎡
시설율 (법정 60%)		(779.31 / 3,911.90) × 100 = 19.92%						(770.26 / 3,911.90) × 100 = 19.69%						감 0.23%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911.90	779.31					67			3,911.90	770.26					67	감 9.05㎡
기반시설	소 계			727.93	727.93								719.22	719.22						감 8.71㎡
	광 장	광장-가		11.00	11.00						광장-가		50.38	50.38						증 39.38㎡
		광장-나		38.16	38.16						광장-나		47.63	47.63						증 9.47㎡
		광장-다		59.45	59.45															감 59.45㎡
	산책로	1		354.74	354.74						1		317.06	317.06						감 37.68㎡
		2		12.00	12.00						2		13.99	13.99						증 1.99㎡
		3		12.00	12.00						3		13.99	13.99						증 1.99㎡
		4		90.64	90.64						4		89.24	89.24						감 1.40㎡
		5		18.50	18.50						5		54.11	54.11						증 35.61㎡
		6		23.23	23.23						6		32.91	32.91						증 9.68㎡
		7		18.30	18.30						7		19.70	19.70						증 1.40㎡
		8		34.62	34.62						8		38.34	38.34						증 3.72㎡
		9		55.29	55.29						9		41.87	41.87						감 13.42㎡
조경시설	소 계									5									5	
	파고라	①								3	①								3	
	물확	②								1	②								1	
	장미아치	③								1	③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 계									16									16	
	등의자	④								7	④								7	
	평의자									9									9	
운동시설	소 계			51.38	51.38					8			51.04	51.04					8	감 0.34㎡
	체력단련장	다		51.38	51.38						다		51.04	51.04						감 0.34㎡
	체력단련시설	⑤								8	⑤								8	
관리시설	소 계									38									38	
	공원등	⑥								13	⑥								13	
	녹지등	⑦								18	⑦								18	
	수목투사등	⑧								3	⑧								3	
	CCTV	⑨								2	⑨								2	
	휀스	⑩								(234m)	⑩								(234m)	
	공원안내판	⑪								2	⑪								2	
녹지	녹지			3,132.59									3,141.64							지이 9.05㎡

다. 도로조서

- 공원 내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52.04	619.32				
변경					326.68	621.21				
당초	산책로		산책로-1	2.0	176.18	354.74	진입로	북측	광장 나	
당초	산책로		산책로-2	2.0	6.20	12.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산책로		산책로-3	2.0	6.40	12.00	진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산책로		산책로-4	2.0	45.23	90.64	진입로	남동측	광장 나	
당초	산책로		산책로-5	1.2	10.36	18.50	진입로	북동측	광장 가	
당초	산책로		산책로-6	1.2	19.58	23.23	진입로	광장 가	광장 나	
당초	산책로		산책로-7	1.2	15.24	18.30	진입로	광장 가	산책로-1	
당초	산책로		산책로-8	1.2	29.06	34.62	진입로	산책로-4	광장 나	
당초	산책로		산책로-9	1.2	43.79	55.29	진입로	산책로-1	산책로-4	
변경	산책로		산책로-1	2.0	154.26	317.06	산책로	북측	광장 가	
변경	산책로		산책로-2	2.0	7.00	13.9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변경	산책로		산책로-3	2.0	7.00	13.9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변경	산책로		산책로-4	2.0	43.64	89.24	산책로	남동측	광장 가	
변경	산책로		산책로-5	1.7	29.56	54.11	산책로	북동측	산책로-1	
변경	산책로		산책로-6	1.4	23.51	32.91	산책로	산책로-5	광장 가	
변경	산책로		산책로-7	1.5	12.97	19.70	진입로	산책로-6	산책로-8	
변경	산책로		산책로-8	1.5	25.48	38.34	진입로	산책로-4	광장 가	
변경	산책로		산책로-9	1.7	23.26	41.87	진입로	산책로-1	산책로-4	

4. 지형도면

조성계획도(변경전)

신림3 약수소공원

■ 시설조서범례

구 분	시 설 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3,911.90	779.31	67	(19.92%)
기반시설	계		727.93	727.93		
	광장	가	11.00	11.00		
		나	38.16	38.16		
		다	59.45	59.45		
	산책로	1	354.74	354.74		
		2	12.00	12.00		
		3	12.00	12.00		
		4	90.64	90.64		
		5	18.50	18.50		
		6	23.23	23.23		
		7	18.30	18.30		
		8	34.62	34.62		
		9	55.29	55.29		
조경시설	계				5	
	파고라	①			3	
	물확	②			1	
	정이이지	③			1	
휴양시설	계				16	
	등의자	④			7	
	원의자				9	
운동시설	계		51.38	51.38	6	
	체력단련장	다	51.38	51.38		
	체력단련시설	⑤			6	
편의시설	계				38	
	공원등	⑥			13	
	녹지등	⑦			18	
	수목투사등	⑧			3	
	CCTV	⑨			2	
	화소	⑩				(234.00M)
	공원안내판	⑪			2	
녹지	녹지		3,132.59			(80.08%)

조성계획도(변경후)

신림3 약수소공원

■ 시설조서범례

구 분	시 설 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3,911.90	770.26	67	(19.69%)
기반시설	계		719.22	719.22		
	광장	가	50.38	50.38		
		나	47.63	47.63		
	산책로	1	317.06	317.06		
		2	13.99	13.99		
		3	13.99	13.99		
		4	89.24	89.24		
		5	54.11	54.11		
		6	32.91	32.91		
		7	19.70	19.70		
		8	38.34	38.34		
		9	41.87	41.87		
조경시설	계				5	
	파고라	①			3	
	물확	②			1	
	정이이지	③			1	
휴양시설	계				16	
	등의자	④			7	
	원의자				9	
운동시설	계		51.04	51.04	6	
	체력단련장	다	51.04	51.04		
	체력단련시설	⑤			6	
편의시설	계				38	
	공원등	⑥			13	
	녹지등	⑦			18	
	수목투사등	⑧			3	
	CCTV	⑨			2	
	화소	⑩				(234.00M)
	공원안내판	⑪			2	
녹지	녹지		3,141.64			(80.31%)

◈ 송파구고시 제2025-3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6개 구역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외 16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역별로 상이한 시행지침 내용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의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붙임 참조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Ⅳ. 관계도면(변경없음): 생략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붙임]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내용

○ 공동개발(권장)

구역	기 정	변 경
거여	**제7조(공동개발 권장)** ②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권장) 변경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변경한다.** 이 경우 주차출입구 확보 등 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지역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면표시(예시 생략)	**제7조(공동개발 권장)** **② 삭제** **② 도면표시**(예시 생략)
개롱	**제7조(공동개발 권장)** ② **공동개발(권장) 미준수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한 후 개발하도록 한다.(필요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가능)** ③ 도면표시(예시 생략)	**제7조(공동개발 권장)** **② 삭제** **② 도면표시**(예시 생략)

○ 자율적 공동개발

구역	기 정	변 경
거여	**제9조(자율적 공동개발) 권장사항** ① 공동개발(권장/지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대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은 아래 적용 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예시 생략)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제9조(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①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공동개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 될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면적이 큰 대지의 지침을 적용한다.** ③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은 아래 적용 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예시 생략) 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구역	기 정	변 경
잠실 광역중심 제1지구, 제2지구	제N조(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지정) ①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 이하 생략 -	제N조(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①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공동개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 될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면적이 큰 대지의 지침을 적용한다.** ②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은 아래 적용 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예시 생략)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방이 송파나루, 석촌고분, 송파대로1, 문정택지	제N조(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지정) ①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송파대로 2	제8조(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권장)) ①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삼전, 위례성길	제N조(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지정) ①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은 공동개발 지정, 권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대지에 대하여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구역	기 정	변 경
개롱, 오금 지구중심	**제N조(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지정)** ①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한다.	**제N조(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①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공동개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 될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면적이 큰 대지의 지침을 적용한다.**
풍납	**제6조(획지계획/공동개발)** ①,②,③ 생략	**제6조(획지계획/공동개발)** **④ [신설]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공동개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 될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면적이 큰 대지의 지침을 적용한다.** ④-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은 아래 적용 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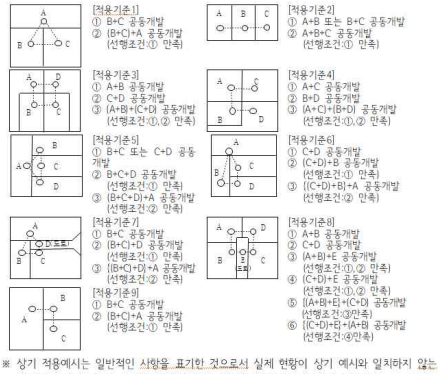 ※ 상기 적용예시는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이 상기 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을 토대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건축한계선

구역	기 정	변 경
잠실 광역중심 제2지구, 송파대로1, 송파대로2, 거여,개롱, 위례성길 삼전,방이, 송파나루, 석촌고분, 문정택지	**제N조(건축한계선)** ⓝ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제N조(건축한계선)** ⓝ 향후 개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도로경계선 변경 시 결정도상 건축한계선 선형을 유지 운영한다.**
오금 지구중심	**제16조(건축한계선)** ②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풍납	**제14조(건축한계선)** ④ 향후 개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잠실 광역중심 제1지구	**제19조(건축한계선)** ②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다만, 방이이면부 상업지역 및 현황 2m도로변에서 도로확폭 될 경우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은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건축한계선)** ② 향후 개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다만, 방이이면부 상업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도로경계선 변경 시 결정도상 건축한계선 선형을 유지 운영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구역	기 정	변 경(신설)
거여 택지	-관련 규정 없음-	**제N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장지 택지	-관련 규정 없음-	
서울 마천 국민임대주택 지구	**제68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 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 시의 해당 부분	

◈ 강동구고시 제2025-4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및『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2022.04.21.)로『조성계획결정(최초)』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0호 (2022.09.01.)로『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3-74호(2023.05.10.)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제1호 어린이공원' 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1호 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4,640.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 제1호 어린이공원
① 면적 : 4,640.0㎡, ② 내용 : 어린이공원 조성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인가고시일 ~ 2025.03.31.
- (변경) 인가고시일 ~ 2025.05.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 임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번지 일대

<제1호 어린이공원>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필지		112,101.1	4,640.0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	112,101.1	4,640.0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별첨-2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제1호 어린이공원>

◈ 강동구고시 제2025-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198호(1971.04.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05.0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23호(2015.01.2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3-92호(2023.06.0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1) 광로 1-28(양재대로) 강동구 둔촌동 520-1 일원
2) 공공공지③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2) 사업의 명칭: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사업

다. 사업내용
1) 규모 및 내용
- 광로 1-28 (규모) 17,206.9㎡,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및 개량
- 공공공지③ (규모) 2,385.6㎡, (내용) 식재, 시설물·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

2) 사업대상
-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1	28	50~53	주 간선도로	13,250 (245)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제	일반 도로	서고406호 ('84.2.14)

주) ()는 정비구역 해당사항

- 공공공지

시설명	연번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공공공지	③	둔촌동 170-1	2,385.6	서고135호 ('13.5.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도로: 광로1-28(양재대로)
- (기정)인가고시일 ~ 2025. 3. 31.
- (변경)인가고시일 ~ 2025. 5. 31.
2) 공공공지: 공공공지③
- (기정)인가고시일 ~ 2025. 3. 31.
- (변경)인가고시일 ~ 2025. 5.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강동구 및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 광로 1-28(양재대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8필지		190,452.0	17,206.9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744.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8	도로	951.9	42.0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8	도로	9.0	9.0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444.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3,902.5	1,084.0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0-4	도로	3,912.0	1,098.0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2	도로	2,182.6	93.0	서울특별시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	대지	25,455.4	309.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1-6	도로	3,910.7	1,249.0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14	도로	3,909.3	3,909.3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7	도로	1,858.6	1,858.6	서울특별시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13	도로	2,478.4	1,259.0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26	도로	2,778.5	6.0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3	도로	4,183.7	253.0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4	도로	2,609.9	2,417.0	서울특별시					
16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28	도로	6,678.3	815.0	강동구					
17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30	도로	8,542.7	1,574.0	서울특별시					
1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22	도로	1,052.4	43.0	서울특별시					

□ 공공공지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2,385.6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강동구고시 제2025-4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51호(1991. 4. 1.)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6호(1993. 7.24.)로 변경 결정, 강동구고시 제2022-210호(2022.12.22.)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1호(2023. 4.27.)로 변경 결정 및 강동구 고시 제2023-116호(2023.07.1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5호선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2) 사업의 명칭: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 이설공사

다. 사업내용
1) 사업규모: 633.4㎡
2) 사업내용: 양재대로 확장에 따른 기존 보도에 설치된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3) 사업대상
- 철도(본선)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길동~마천)	강동구 길동 379 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 일대	7,500	-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 철도(정거장)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둔촌동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416일대	6,349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인가고시일 ~ 2024. 10. 31.
- (변　경) 인가고시일 ~ 2025.　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별첨

토 지 조 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1,044.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39	도로	8,529.1	535.6	강동구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40	도로	3,910.7	793.3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235.9	서울특별시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8	도로	951.9	509.7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3,902.5	3,229.8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9.0	0	서울특별시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5-410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8.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42호(2002.5.2.)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호(2011.12.8.)로 변경 결정된 광진구 화양동 6-1 일대(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2)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6-1 일대 (지하철 2 · 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171,352.0	증) 33,685.8	205,037.8	1996. 8. 10. (서고시 제1996-216호)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내용은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 가능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 강북구공고 제2025-489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5-346호(2025. 3. 7.)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4. 4. ~ 4. 17.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강북구청 6층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436,100	-	436,1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54호 (1997.01.06.)	-

2. 토지이용 및 시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3.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9,485.6	-	9,485.6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구역명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구역면적		• 9485.6㎡ (공공청사 면적 8,443.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공공용도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구민청)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구민청) 등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 : 600%/800% 이하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은 기준용적률 600% 이내 조성		• 기준/허용 : 600%/8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新청사 용적률 계획기준」에 따름	
높이		• 블록 1 : 80m 이하 / 블록 2 : 100m 이하		• 100m 이하 ※ 단, 소로 3-0 연접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80m이하로 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연접지역 고려 건축물 이격 배치 및 3층 이하 저층 배치 (10m 이내) • 이용자 편의 고려 블록1, 2 건축물 간 입체 통로 조성		• 건축한계선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3m, 신설도로변 2m • 벽면한계선 : 한천로139가길변 2m	
대지내 공지	대지내 조경 권장구간	-		• 구청사 이면부 연접지역 폭 11m - 조성시 조경공간 50% 이상 (대지내조경 식재기준 부합)	
	공개공지	• 한천로139길 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공중 연결통로	-		• 도로의 수직적 중복결정 상부 통경구간 계획을 위하여 공중연결통로 구간 설정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타	• 폐지되는 주차장 면수(45대)이상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 개발 규모를 고려한 한천로 확폭 및 이면도로 확보 계획수립 • 공공청사 외 용도는 세부개발 계획수립 시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신설 및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중복결정 범위 변경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사유	
용도	• 공공용도(돌봄센터, 북라운지, 운동시설, 전망대 등) 계획 수립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新청사 용적률 계획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높이	• 복합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높이계획 수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공공청사부지 내 주민에게 개방된 휴식 및 쉼터를 조성토록 하고자 함 • 복합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배치계획 수립	
대지 내 공지	대지내 조경 권장구간	• 연접지역 고려한 건축배치 및 구청사 이용자 휴식 및 쉼터 제공을 위한 조경공간 권장
	공개공지	•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블록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 조정
	공중 연결통로	• 한천로 139가길 상부 통경구간 계획 및 효율적인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공중연결통로 조성

(이 하 여 백)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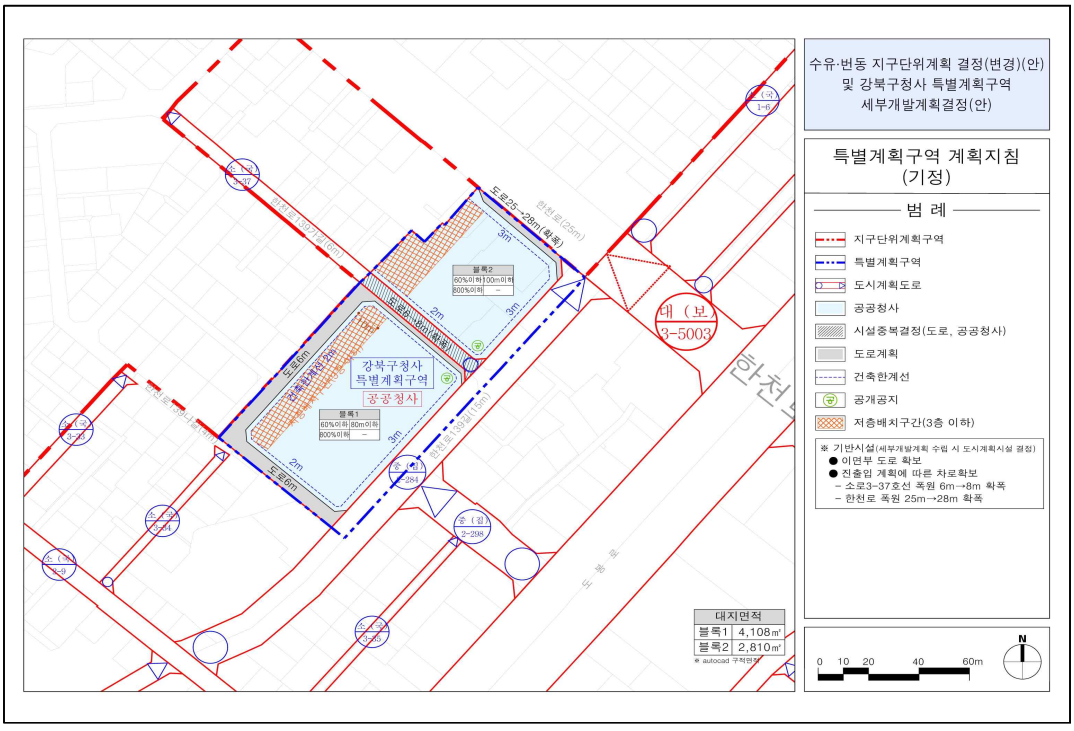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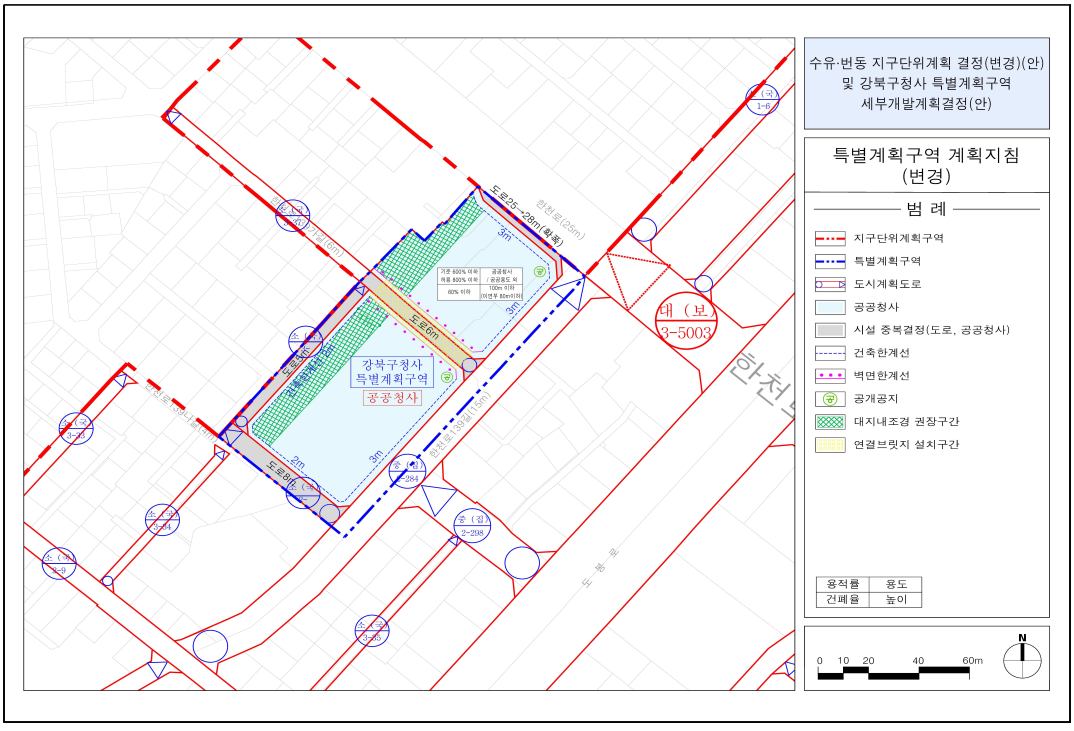

Ⅱ.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9,485.6	-	9,485.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9,485.6	-	9,485.6	100.0	-
주거지역	소계	9,485.6	감) 9,485.6	-	0.0	-
	준주거지역	9,485.6	감) 9,485.6	-	0.0	-
상업지역	소계	-	증) 9,485.6	9,485.6	100.0	-
	일반상업지역	-	증) 9,485.6	9,485.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485.6㎡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증) 9,485.6㎡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해당없음)

(이 하 여 백)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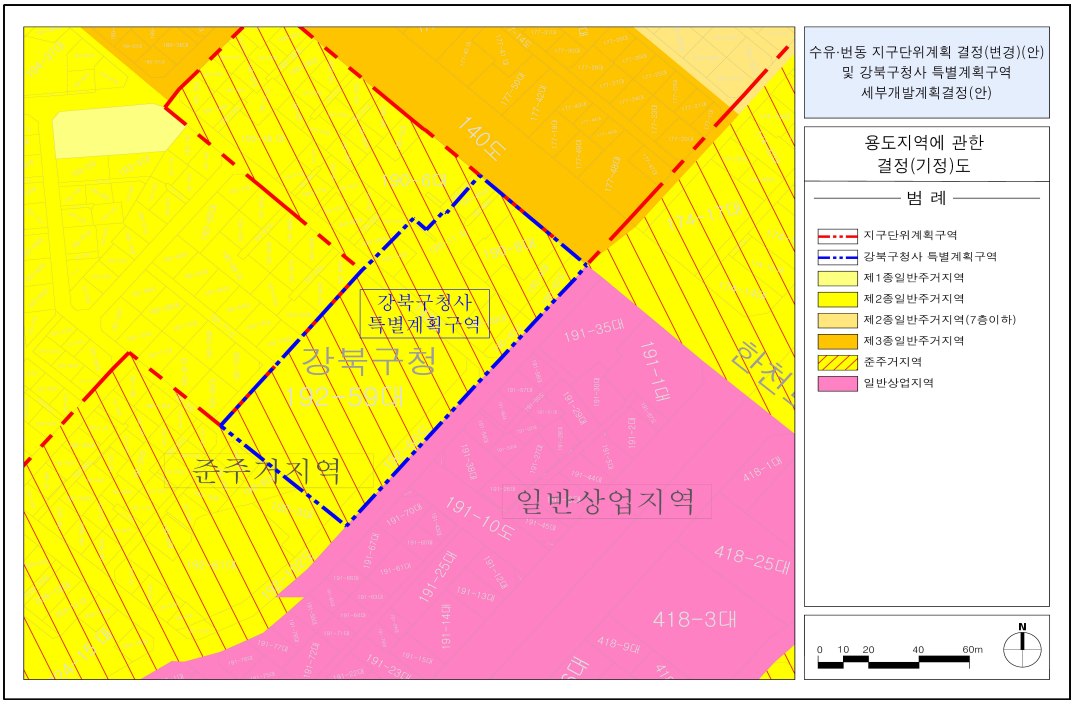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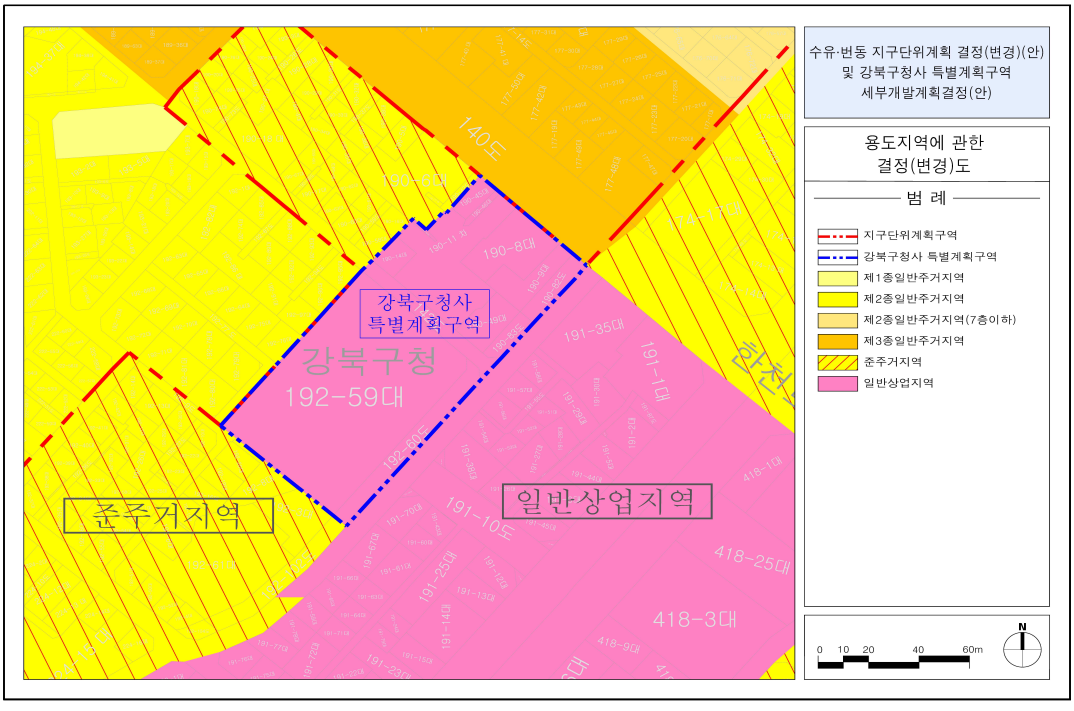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84	15	집산도로	226	수유3동 192-104	수유3동 190-82	일반	-	-	-
변경	중로	2	284	15	집산도로	226	수유3동 192-104	수유3동 190-82	일반	-	-	선형변경 수직적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163	수유3동 192-59	수유3동 192-19	일반	-	-	-
변경	소로	3	37	6	국지도로	163	수유3동 192-59	수유3동 192-19	일반	-	-	수직적 중복결정 (수직적 범위설정 포함)
신설	소로	2		8	국지도로	59	수유동 192-59	수유동 192-77	일반	-	-	수직적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5	국지도로	78	수유동 192-59	수유동 192-95	일반	-	-	수직적 중복결정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2-284	중로 2-284	• 선형변경 - 폭(B): 15m, 연장(L) : 226m • 수직적 중복결정(공공청사)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가감속차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공공청사 수직적 중복결정
소로 3-37	소로 3-37	• 공공청사와 도로의 수직적 중복결정 - 수직적 범위 : 지상 0~10m (표고 31.0m~41.0m) • 폭(B) : 6m, 연장(L) : 54m	• 공공청사 시설과의 중복구간에 대하여 수직적 중복결정 (수직적 범위 설정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
-	소로 2-	• 도로 신설 - 폭(B): 8m, 연장(L) : 59m • 수직적 중복결정(공공청사)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공공청사 수직적 중복결정
-	소로 3-	• 도로 신설 - 폭(B): 5m, 연장(L) : 78m • 수직적 중복결정(공공청사)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진출입체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공공청사 수직적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공공청사	구청사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8,443	-	8,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2호 (2022.08.11.)	수직적 중복결정 (도로)

▌공공청사 건축물 범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600% 이하	100m 이하	공공청사에 한함

※ 용적률 적용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공공청사 외 시설에 대한 공간적 범위 결정은 복합청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입용도 등에 따라 결정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공공청사	• 수직적 중복결정(도로)	• 교통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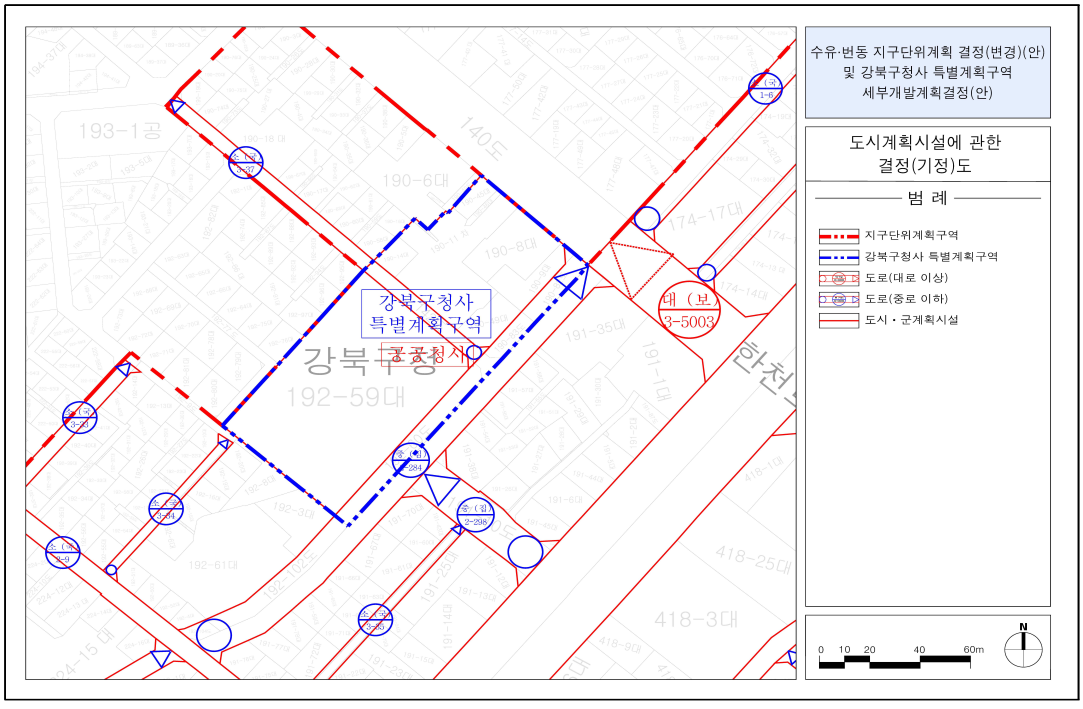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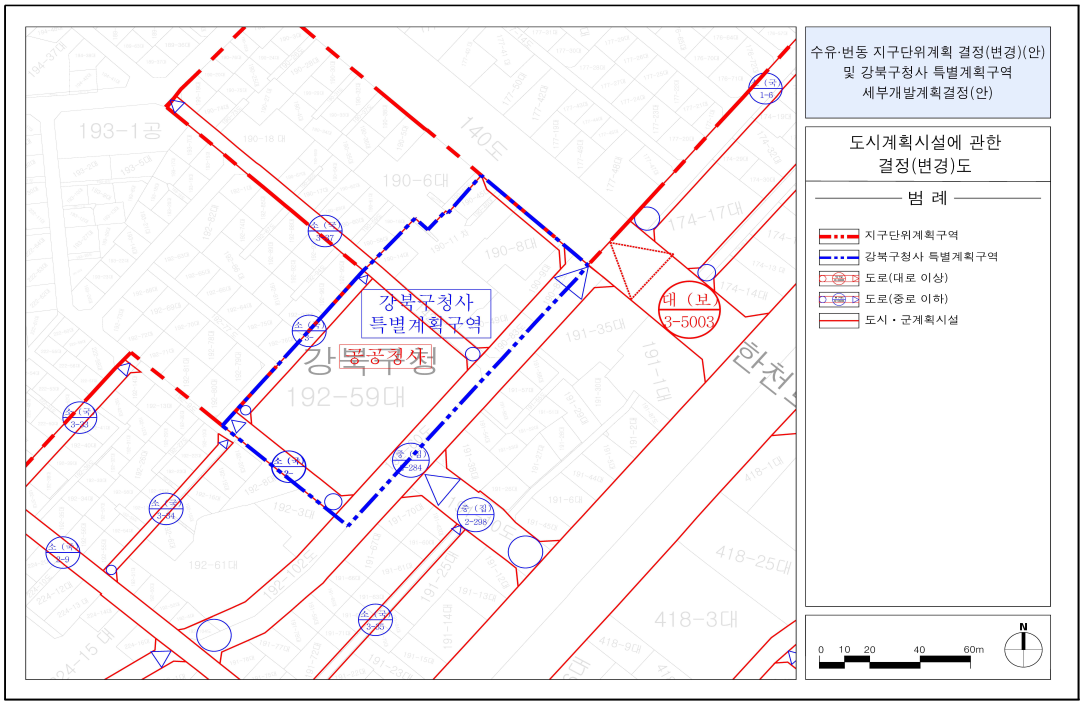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구역명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
구역면적		• 9,485.6㎡ (공공청사 면적 8,443.0㎡)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일반상업지역	-
용도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
	공공용도	• 청년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구민청) 등 | 청사 외 용적률의 50% 이상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계획 건폐율: 58.40%
용적률		• 기준/허용 : 600%/8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新청사 용적률 계획기준」에 따름	• 기준/허용 : 500%/6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新청사 용적률 계획기준」에 따름	계획 용적률: 556.10%
높이		• 100m 이하 ※ 단, 소로 3-0 연접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80m이하로 계획	• 100m 이하 ※ 단, 소로 3-0 연접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80m이하로 계획	계획 높이: 85.0m (소로 연접부 80.0m)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건축한계선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3m, 신설도로변 2m • 벽면한계선 : 한천로139가길변 2m	• 건축한계선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3m, 신설도로변 2m • 벽면한계선 : 한천로139가길변 2m	-
대지 내 공지	대지내 조경 권장구간	• 구청사 이면부 연접지역 폭 11m - 조성시 조경공간 50% 이상 (대지내조경 식재기준 부합)	• 구청사 이면부 연접지역 폭 11m - 조성시 조경공간 50% 이상 (대지내조경 식재기준 부합)	-
	공개공지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 한천로139길 및 한천로변 결절부 공개공지 조성	-
	공중 연결통로	• 도로의 수직적 중복결정 상부 통경구간 계획을 위하여 공중연결통로 구간 설정	• 도로의 수직적 중복결정 상부 통경구간 계획을 위하여 공중연결통로 구간 설정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타	• 폐지되는 주차장 면수(45대)이상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 개발 규모를 고려한 한천로 확폭 및 이면도로 확보 계획수립 • 공공청사 외 용도는 세부개발 계획수립 시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신설 및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중복결정 범위 변경	• 폐지되는 주차장 면수(45대)이상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 개발 규모를 고려한 한천로 확폭 및 이면도로 확보 계획수립 • 공공청사 외 용도는 세부개발 계획수립 시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신설 및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중복결정 범위 변경	-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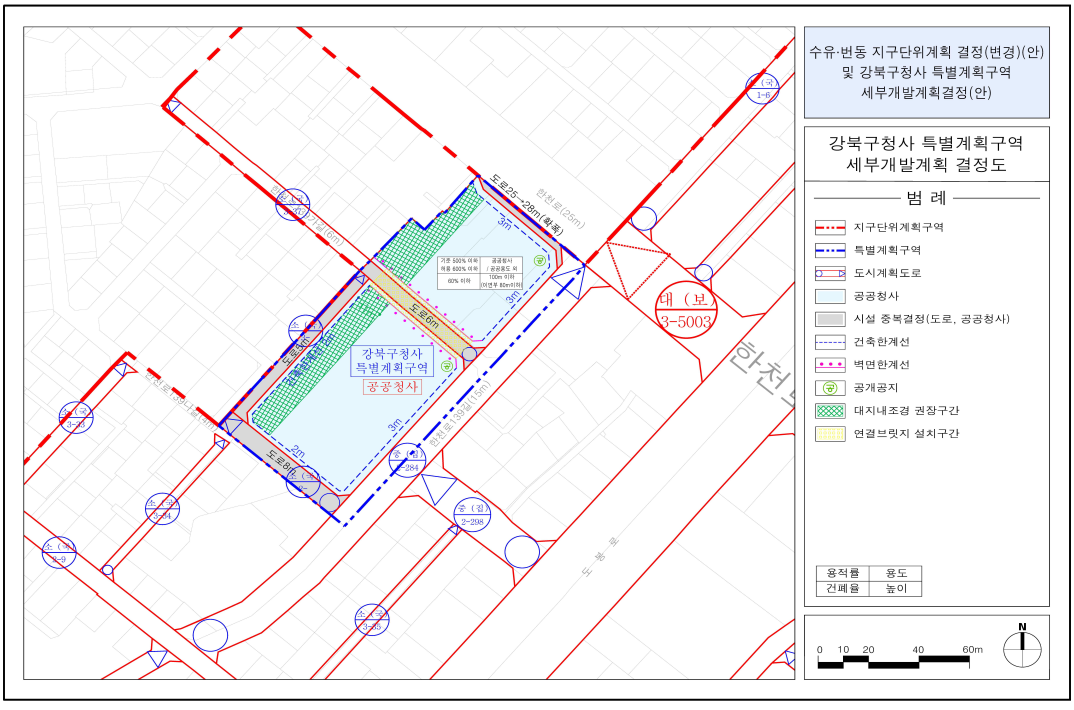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강북소개→강북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25-5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05-4 일대 도시계획시설(대학:한국성서대학교) 부지의 용도지역(변경)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4. 3. ~ 2025. 4. 17.(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4)

다.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618.8	-	18,618.8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775.8	-	5,775.8	31.0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843.0	-	12,843.0	68.9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82.8	200	-
			녹지지역	2,393.0	100	도시계획시설 내 용도지역 경계조정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205-4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93.0	200	도시계획시설 내 용도지역 경계조정
			녹지지역	10,450.0	100	-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열람장소)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 → 주민의견서작성

바.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공고 제2025-479호

도시계획시설(독립근린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2호(1989.5.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제340호(2007.9.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9호(2025.3.2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독립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하고자 같은법 90조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서대문구 푸른도시과, ☎ 02-330-19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일대(독립근린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독립근린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독립의 전당(국가현충시설)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사업의 면적 : 4,784㎡
2) 건축물의 규모
- 건축면적 : 616.92㎡
- 건축연면적 : 2,551.77㎡(1층 466.30㎡, 지하 1층 2,085.47㎡)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독립관	1,250.0	1,250.0	지하1층 지상1층	406.56	554.88	폐지
	독립의 전당	4,784.0	4,784.0	지하1층 지상1층	616.92	2,551.77	신설

3)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사업시행 규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부지면적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23,261.1			21,671.6			감 1,589.5㎡
조경시설	1,085.0			918.0			감 167.0㎡
교양시설	33,949.1	1,317.50	4,308.09	37,483.1	1,527.86	6,304.98	증 3,534.0㎡
편익시설	3,690.9	295.45	295.45	3,345.9	295.45	295.45	감 345.0㎡
녹지 및 기타	49,832.6			48,400.1			감 1,432.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가보훈부장관
2)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6년12월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마포구공고 제2025-5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66호로 결정된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성산동 200-433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다.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마. 시행기간(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8. 31.(기정. 2025.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자. 사업 위치도(변경없음)
차. 열람기간 : 2025. 4. 3. ~ 2025. 4. 17.(14일간)
카.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강서구공고 제2025-24호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2019년)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3호(2001.06.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고시 제2020-43(2020.01.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38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9-53호(2019.5.9.), 제2019-71호(2019.6.13.), 제2019-119호(2019.10.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204-3번지 등 33필지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1) 면 적 : 97,988㎡
  2) 내 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도 첨부
아. 관계도서 : 생략(강서구청 가양동별관 3층 공원녹지과 비치, ☎02-2600-417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1필지		6,224	6,224							
1	강서구 화곡동 산54-4	임야	298	298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강서구 화곡동 산53-2	임야	298	298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강서구 화곡동 산22-15	임야	3,280	3,28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강서구 화곡동 산28-14	임야	298	298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강서구 화곡동 476-31	임야	258	258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강서구 화곡동 476-33	임야	231	231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강서구 화곡동 476-32	임야	284	284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강서구 화곡동 476-17	임야	255	255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	강서구 화곡동 476-16	임야	509	509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강서구 화곡동 476-34	임야	258	258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강서구 화곡동 476-35	임야	255	255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7필지		64,673	64,673							
1	강서구 등촌동 산87-5	임야	5,582	5,582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강서구 등촌동 산87-6	임야	1,921	1,921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강서구 등촌동 산89-6	임야	2,867	2,867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강서구 등촌동 산17-13	임야	1,580	1,580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강서구 등촌동 산24-33	임야	3,417	3,417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강서구 화곡동 산1-2	임야	10,345	10,345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강서구 화곡동 산5-13	임야	974	974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강서구 화곡동 산5-14	임야	992	992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강서구 화곡동 산5-15	임야	6,013	6,013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강서구 화곡동 산22-102	임야	2,874	2,874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강서구 화곡동 산42-15	임야	1,602	1,602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강서구 화곡동 산48-7	임야	900	900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강서구 화곡동 산22-103	임야	3,313	3,313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4	강서구 화곡동 산28-26	임야	3,987	3,987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	강서구 화곡동 산53-4	임야	8,965	8,965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6	강서구 화곡동 산43-22	임야	5,058	5,058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7	강서구 화곡동 산45-3	임야	4,283	4,283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 사업명: 개화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실이용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5필지		27,091	27,091								
1	강서구 화곡동 산54-5	임야	9,282	9,282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2	강서구 화곡동 산204-3	임야	11,701	11,701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3	강서구 화곡동 206-2	임야	3,872	3,872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4	강서구 화곡동 산54-2	임야	595	595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5	강서구 화곡동 산42-13	임야	1,641	1,641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관악구공고 제2025-7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관악구고시 제2020-88호(2020.5.2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 고시 제2020-195호(2020.11.0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7)」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387-6번지 등 22필지(편입토지조서 참조)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7)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
  4) 면　　적 : 9,590㎡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변경내용
  - 기정 : 2020.5.28.~2025.5.27.
  - 변경 : 2020.5.28.~2026.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1)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7)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9,590	9,590							
1	봉천동387-6	전	8	8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254-144	도로	20	20							
3	신림동 254-310	도로	2	2							
4	신림동 255-252	도로	17	17							
5	신림동 255-253	도로	17	17							
6	신림동 255-254	도로	17	17							
7	신림동 255-255	도로	26	26							
8	신림동 255-256	도로	30	30							
9	신림동 255-257	도로	26	26							
10	신림동 317	전	145	145							
11	신림동 317-1	전	317	317							
12	신림동 산61-8	임	2,607	2,607							
13	신림동 산62-2	임	1,774	1,774							
14	신림동 산68-116	임야	328	328							
15	신림동 산71-8	임야	2,678	2,678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신림동 594-43	대지	3	3							
17	신림동 산197-111	임야	2	2							
18	신림동 598-182	대지	496	496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신림동 598-183	대지	179	179							
			주택	연면적 72.37 (지상1층 /지하1층)							
20	신림동 598-268	대지	142	142							
			주택	연면적 77.85 (지상1층 /지하1층)							
21	신림동 598-269	대지	116	116							
			주택	연면적 71.6 (지상1층 /지하1층)							
22	신림동 산108-12	임야	640	640							

◈ 서초구공고 제2025-670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1. 건설부고시 제64호(1978.03.2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1979.08.22.)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74호(2020.05.07.)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05호(2022.05.06.)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한남I.C ~ 양재I.C 만남의 광장간 6.9㎞)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정원여가과(☎02-2155-54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초구청(정원여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잠원동 6-3번지 등 10필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나) 사업의 명칭: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 등
3) 사업의 면적: 2,837.4㎡
   가) 면적의 변경: (기정) 2,519.39㎡ (변경) 2,837.4㎡
   나) 변경사유: 보상필지 측량결과 반영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번지
   [※ 잠원동 6-3, 잠원동 7-1 은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25-95호)에 의거 사업시행자 별도 시행]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7. 5. 6. 까지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 5. 6.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7. 5. 6.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정원여가과(☎02-2155-5471)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합 계			9,987.4	2,837.4						
1	잠원동 6-3	대	130	13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우편발송 X
2	잠원동 7-1	대	1,594	1,59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우편발송 X
3	양재동 산70-4	임	7,832	68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신**	3,575/7,83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신**	3,575/7,83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	682/7,832			우편발송 X
4	양재동 산69-4	임야	35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가길	충*** 주식회사				
5	양재동 192-2	구	23	2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우편발송 X
6	양재동 산71-34	임	10	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우편발송 X
7	서초동 1681-3	대	1.8	1.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양**	21.15/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이**	19.52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백**	11.388/3561.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최**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조**	15.943/3561.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	심**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지**	21.15/3561.2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	김**	15.943/3561.2			
					서울시 용사나구 서빙고동 ***	김**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	김**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20.824/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윤**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삼익** *아파트 재건축 조합	3299.6/356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이**	42.298/356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특별시	19.523/356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강**	65.448/61588.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금**	77.364/61588.8			
					서울 성동구 응봉동 ***	김**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77.364/61588.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김**	77.364/61588.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김**	89.262/6158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	김**	22.48/61588.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김**	44.631/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김**	51.591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22.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22.48/61588.8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77.364/61588.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김**	77.364/61588.8			
					서울 구로구 구로동 ***	라**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맹**	65.448/61588.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박**	32.72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박**	32.724/61588.8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박**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77.364/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박**	65.448/61588.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근저당권설정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박**	65.448/61588.8			
					미합중국 캐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	박**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서**	65.448/61588.8			
					서울 도봉구 창동 ***	석**	65.448/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소**	44.631/61588.8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손**	44.631/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신**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안**	50.58/6158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	우**	44.631/61588.8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윤**	65.448/6158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이**	33.72/61588.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	이**	77.364/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이**	49.568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임**	2.16/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장**	40.8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	101.1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101.16/61588.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조**	65.448/61588.8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조**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조**	101.16/61588.8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최**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한**	50.58/61588.8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	황**	89.262/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특별시	89.262/61588.8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강**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권**	51.575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권**	89.262/61588.8			
					서울 성동구 응봉동 ***	김**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89.262/61588.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김**	77.364/6158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김**	22.48/61588.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김**	44.631/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김**	51.591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22.48/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22.48/61588.8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77.364/61588.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김**	77.364/61588.8			
					서울 구로구 구로동 ***	라**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맹**	65.448/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박**	32.724/615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	박**	32.724/61588.8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박**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77.364/61588.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	박**	65.448/61588.8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케이트시 ***	박**	77.364/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서**	65.448/61588.8			
					서울 도봉구 창동 ***	석**	65.44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신**	77.364/61588.8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안**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안**	50.58/6158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	우**	44.631/61588.8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윤**	65.448/6158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이**	33.72/61588.8			
					서울 강동구 상일동 ***	이**	65.448/61588.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	이**	77.364/61588.8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이**	49.5684/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임**	2.1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장**	40.8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	101.16/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101.16/61588.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조**	65.448/61588.8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조**	77.364/61588.8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조**	101.16/61588.8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정면 창후리	최**	89.262/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한**	50.58/6158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현**	89.262/61588.8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	황**	89.262/61588.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59,566.2456/6158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강**	67451.606928/242558 637.89544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가좌리	고**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고**	213596.755272/24255 8637.89544			
					도쿄도 세타가야쿠 토도로키	고**	4930700.1801696/242 558637.89544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	권**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권**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은평구 갈현동 ***	권**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20089.71379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2425586 37.89544			
					서울 강북구 수유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71198.918424/242558 637.89544			
					서울 종로구 필운동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	김*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김**	256316.1063264/2425 58637.89544	국(구로세무서)		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85438.7021088/24255 8637.89544	국(구로세무서)		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경기 광명시 하안동 ***	김**	106798.377636/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대치동 ***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김**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중랑구 묵동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김**	106913.2146012/2425 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	170877.4042176/242558637.89544			
					서울 관악구 남현동	김**	85438.7021088/24255 8637.89544			
					서울 도봉구 번동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김**	170877.4042176/242558637.89544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부기리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수서동 ***	김**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	김**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김**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김**	56959.134739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	김**	42719.3519544/24255 8637.89544			
					미금시 호평동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도봉구 창동 ***	김**	200897.1379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성동구 광장동 ***	김**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김**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나**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남**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남**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한** 교장로회	854846.3689488/2425 58637.89544			
					광주 북구 문흥동 ***	마**	213596.755272/24255 8637.89544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	문**	213596.755272/24255 8637.89544			
					평택시 합정동 ***	민**	17087.4042176/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민**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도곡동 ***	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박**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일본국 대판시 중앙구 ***	박**	170877.4042176/2425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박**	213596.755272/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213596.755272/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213596.755272/2425 58637.89544			
					서울 동작구 사당동 ***	박**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170877.4042176/242558637.895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박**	213596.755272/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213596.755272/2425 58637.8954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박**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박**	213596.755272/24255 8637.89544			
					경주시 황남동 ***	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배**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배**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아동3가 ***	백**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사회복지법인***	1110473.453484/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서**	213596.755272/12127 93189.4772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서**	1707625.672524/1212 793189.4772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서**	854387.021088/12127 93189.4772			
					대전시 서구 관저동 ***	송**	1707625.672524/1212 793189.47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신**	854387.021088/1212793189477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	1067983.77636/12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신**	1707625.672524/1212793189.4772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신**	640790.265816/12127931894772			
					남양주시 일패동	신**	1067983.77636/12127931894772			
					서울 도봉구 쌍문동 ***	신**	1067983.77636/12127931894772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심**	1067983.77636/12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안**	1707625.672524/1212793189.4772			
					미합중국 11355 뉴욕프루씽 ***	안**	1067983.77636/12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안**	1707625.672524/1212793189.4772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양**	213596.755272/12127931894772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양**	1707625.672524/12793189.4772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염**	1707625.672524/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오**	854387.021088/12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왕**	854387.021088/1212793189.4772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원**	854387.021088/12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유**	1707625.672524/12793189.477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유**	1707625.672524/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유**	1707625.672524/12793189.4772			
					경기 구리시 토평동 ***	유**	1707625.672524/127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유**	854387.021088/1212793189.47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성동구 옥수동 ***	유**	854387.021088/12127 93189.477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유**	1067983.77636/12127 93189.4772			
					서울 강동구 하일동	유**	1707625.672524/1212 793189.4772			
					서울 광진구 중곡동 ***	유**	1067983.77636/12127 93189.47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유**	534566.073006/12127 93189.4772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	유**	1067983.77636/12127 93189.47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1208719.254393/2425 58637.89544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	379727.564928/24255 8637.89544			
					경기도 의황시 내손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	3415251.345048/24255 58637.89544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이**	3415251.345048/24255 58637.8954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이**	3415251.345048/2425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	379727.564928/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	1067983.77636/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대구 북구 칠성동2가 ***	이**	1049117/6021762425 58637.89544			
					서울 송파구 풍납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인천 계양구 효성동 ***	이**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1067983.77636/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853812.836262/24255 8637.89544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이**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1067983.77636/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압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이**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이**	659656.44/242558637 .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울산광역시		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	〃	〃	용인시		압류
								경기도 용인시		압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	1423978.36848/24255 8637.89544			
					제천시 의림동	이**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강남신용지원단)	가압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	379727.564928/24255 8637.89544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임**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임**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임**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임**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임**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장**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장**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장**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장**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장**	1281580.531632/2425 58637.89544			
					서울 도봉구 쌍문동, ***	전**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양천구 신월동***	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초**아파트재건축 조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정**	2135967.55272/24255 8637.89544			
					부산 사상구 주례동	정**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정**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성동구 마장동 ***	정**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정**	2563161.063264/2425 58637.89544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조**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조**	449677.37952/242558 637.89544			
					미합중국 뉴욕주 ***	조**	674516.06928/242558 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조**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미합중국 뉴욕주 ***	조**	112419.34488/242558 637.89544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조**	112419.34488/242558 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동구 명일동***	조**	112419.34488/242558637.89544			
					서울 동작구 상도동	조**	854387.021088/2425586637.89544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조**	3415251.345048/2425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조**	1280719.254393/242558637.8954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조**	2135967.55272/242558637.89544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주**	2135967.55272/242558637.89544	국(부천세무서)		압류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주**	854387.021088/242558637.89544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근저당권설정
					서울 강남구 반포동 ***	주**	1708774.042176/242558637.89544			
					경남 통영시 정량동 ***	지**	2135967.55272/242558637.89544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지**	2135967.55272/24255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원지동	차**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채**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채**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천**	3415251.345/2425586 37.89544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최**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최*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최**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서초중앙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 은평구 녹번동	최**	2135967.55272/24255 8637.89544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최**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최**	427193.510544/24255 8637.89544			
					미국 워싱톤주 98040 미셔아일랜드 ***	최**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한**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마포구 서교동 ***	한*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허**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청담동	허*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강서구 등촌동 ***	허**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	1205382.827664/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현**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홍**	2135967.55272/24255 8637.89544			
					서울 관악구 봉천동 ***	홍**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신용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동대문재기지원단)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홍**	427193.510544/24255 8637.895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홍**	427193.510544/24255 8637.89544			
					경남 창원시 산촌동 ***	홍**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홍**	3415251.345048/2425 58637.895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	홍**	1708774.042176/2425 58637.89544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홍**	854387.021088/24255 8637.89544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	황**	2135967.55272/24255 8637.89544			

◈ 강동구공고 제2025-7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호(1971.04.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05.02.)로『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호(2015.01.22.)『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92호(2023.06.0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공공공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명 칭	세 분 류			
공공공지④	공공공지	강동구 둔촌동 174-1	715.9	서고135호 ('13.05.0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5. 공사완료일: 2025. 3.28.
6.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2) 및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489-02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합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5-8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1969. 1. 1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35호(1992. 10. 24.)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115호(2020. 7. 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77호(2001. 6.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로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113호(2020. 6. 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동구 성내동 14-2호, 14-4호·14-5호(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금회 시행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면적(㎡)	사용형태	위치	
1	소로	2	10	8	집산도로	100	성내동 19-9	광로2-5(성내동 19-1)	5.6	일반도로	성내동 14-2호14-4호14-5호(일부)	'25.3.28 준공인가
2	소로	1	4	8~10	집산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163.2	일반도로		
3	소로	3	45	4	국지도로	114	광로2-5(성내동 13-9)	성내동 12-3	468.9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디에이치프라퍼티원(대표 이택서)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상일동, 강동타워)
5. 사업시행기간: 2020. 6. 25.(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 3. 28.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 02-3425-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5-8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호(2023. 1. 5.)로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120호(2023. 7. 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9호(2025. 2. 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산18-4(천호대로 지하 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공공보도)사업
   나. 명칭: 성내5구역~천호역 공영주차장 간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m)	연장(m)	해수면 기준높이(m)	면적(㎡)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	천호역 공영주차장 ~ 성내동 15번지 지하2층	11.5	8.259 (8.181 ~ 8.416)	10.20~15.48 (지하구조물 깊이 5.28m)	95.2 (69.4)	해수면기준높이 21.4m

※ 면적의 ( )은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되는 면적이며, 시설규모는 외공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광로2-5(천호대로)와 중복결정함(중복결정면적 95.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디에이치프라퍼티원(대표 이택서)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상일동, 강동타워)
5. 사업시행기간: 2023. 7. 27.(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3. 28.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 02-3425-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씨지이앤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906호	서울시계내 한강 (한남대교)	(선박2척) 460.32㎡	신분당선 복선전철 실시설계 지반조사	'25. 03. 26. ~ '25. 04. 11.	'25. 03.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3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일대	육상 6,256.72㎡ 수상 1,352.5㎡ 수상(간접) 1,498㎡	수상 레저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2025.4.1.~ 2026.3.31.	2025. 3.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단법인 대한웨이크 서핑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796 (방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6-1	45.18㎡ (수상레저기구 9척)	수상레저사업 운영 (직장인/학생/단체/동호회 수업 등)	2025. 4. 1. ~ 2025. 12. 31.	2025. 3.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 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봉천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일대	육상 822㎡	수상 레저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2025.4.1.~ 2026.3.31.	2025. 3.31.
			수상 331㎡			
			수상(간접) 200㎡			
			동력 1척		2025.4.1.~ 2025.10.31.	
			무동력 10척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254호(2020.6.29.)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지
   -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2020.6.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착오 결정한 사항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안산도시자연 공원구역	홍제동 산33-44 일대	1,671,570.7	감)3,471	1,668,099.7	

   ○ 공원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안산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구역 면적 변경 (감3,47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2020.6.29.) 결정 내용 중 착오 사항 정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으로 결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7),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153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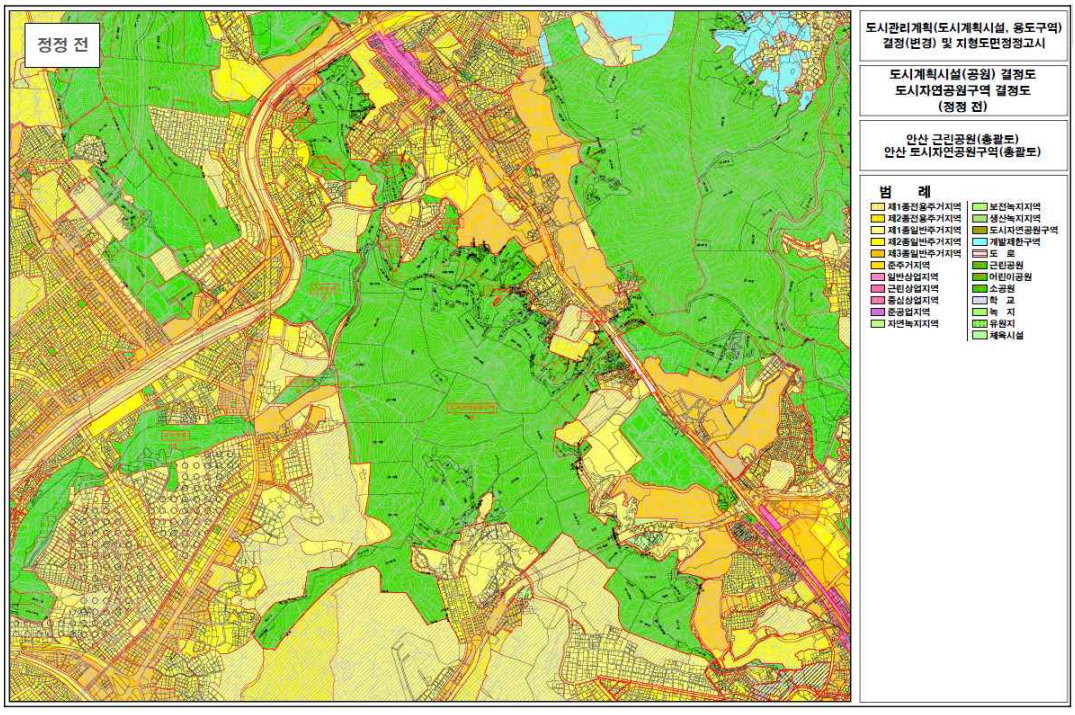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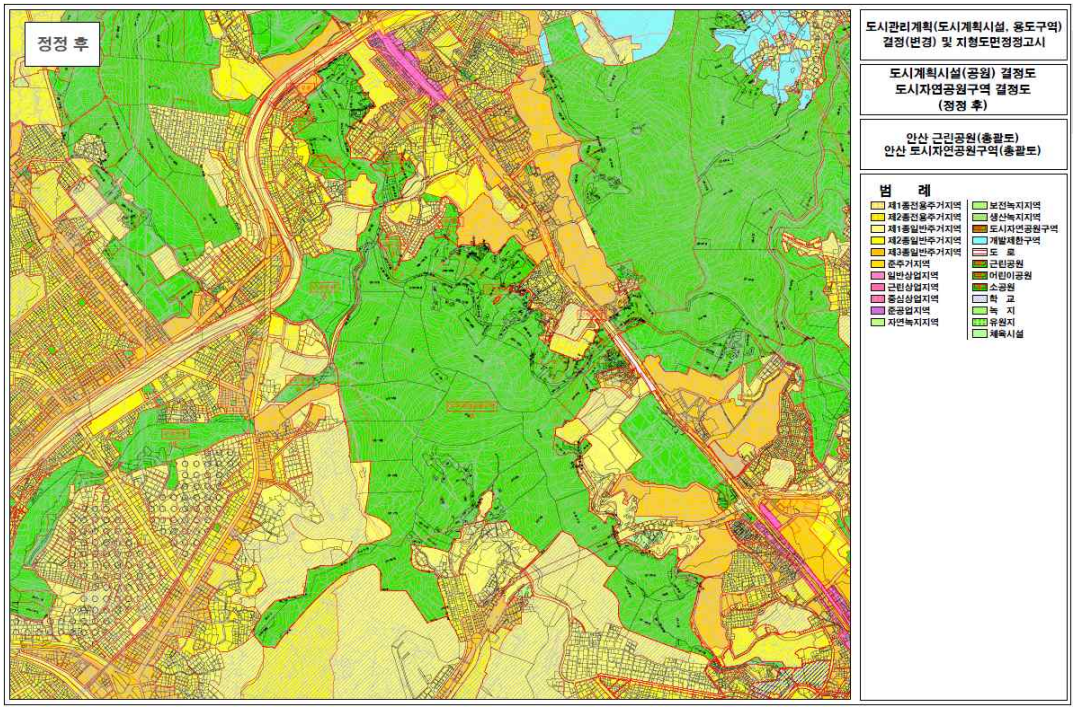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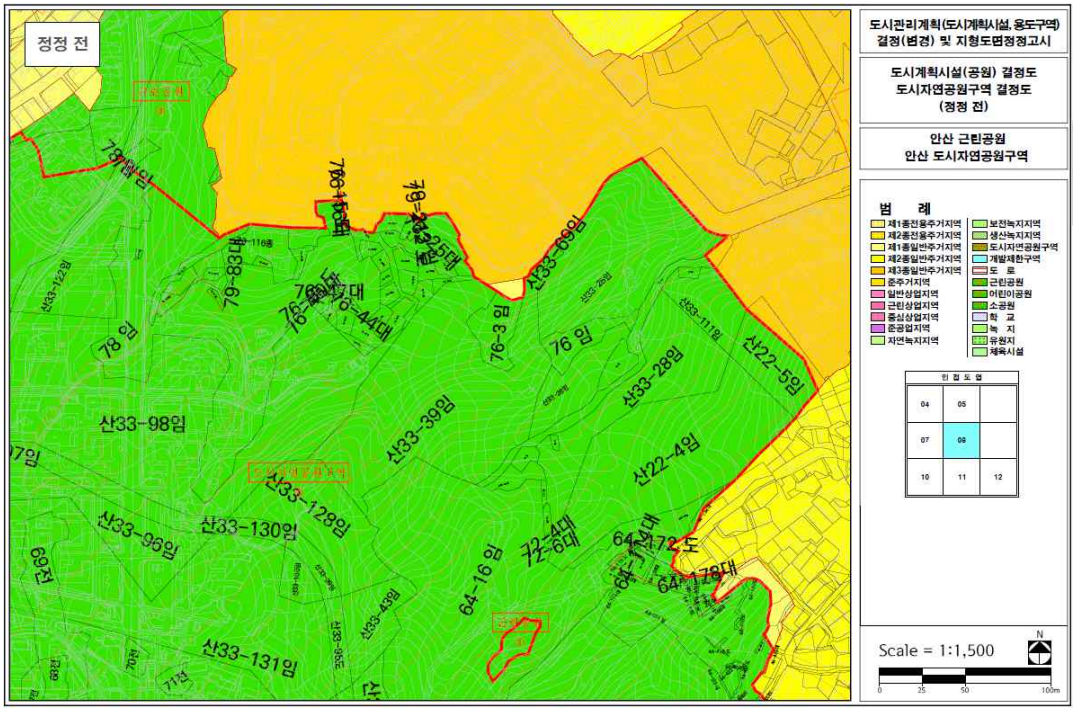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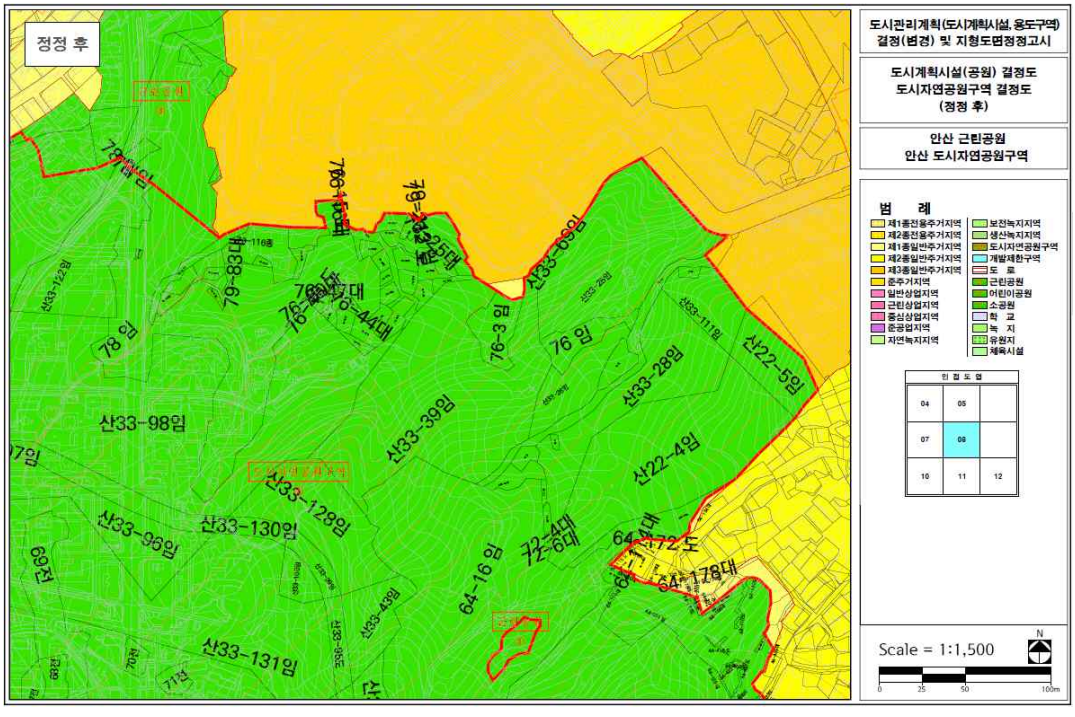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기정)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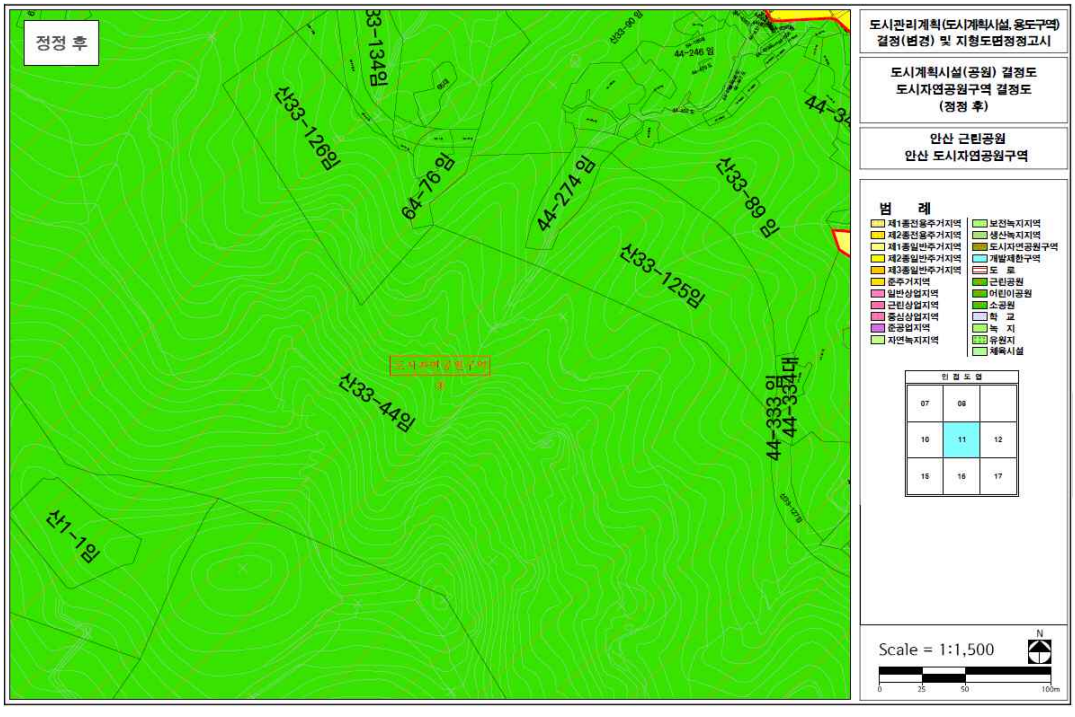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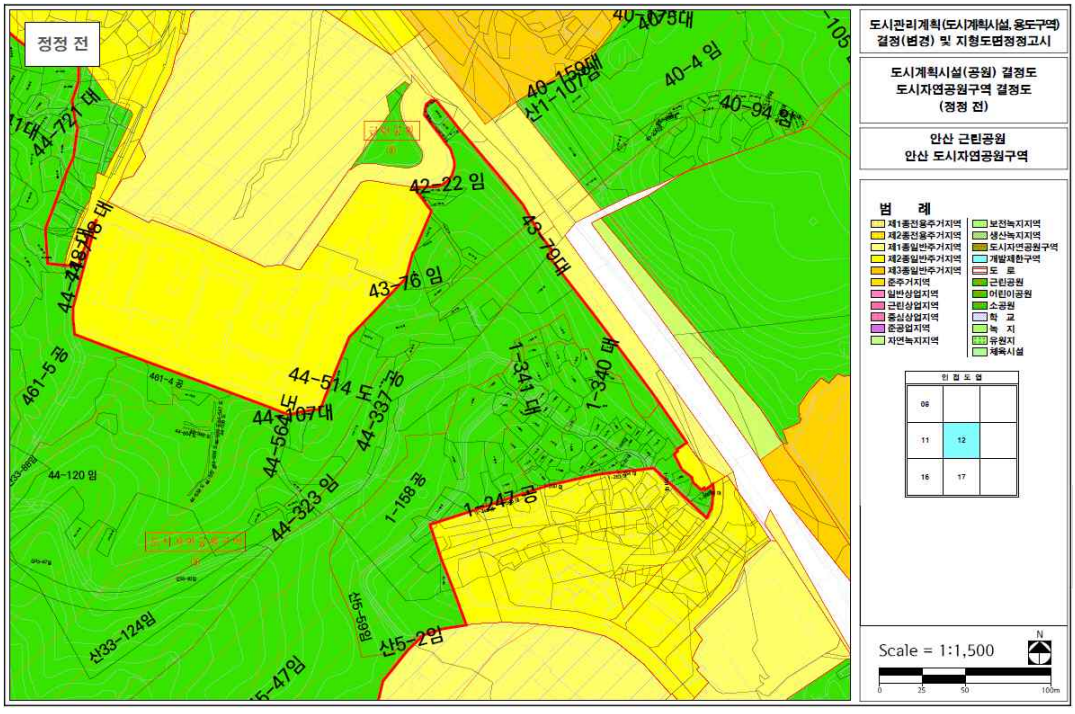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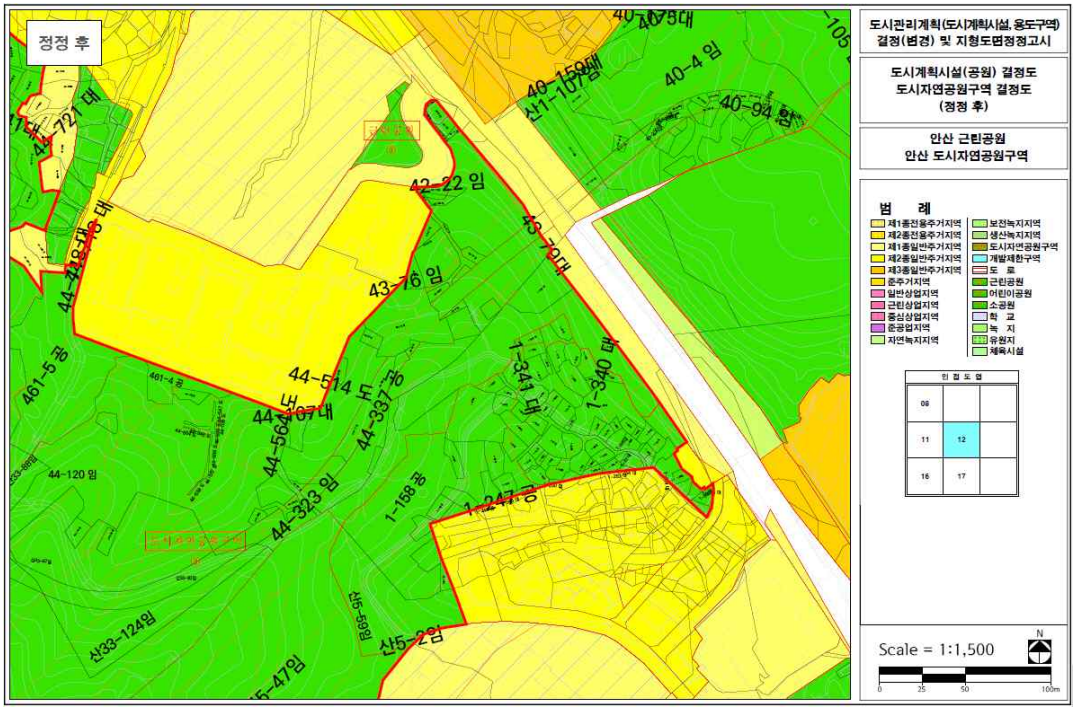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